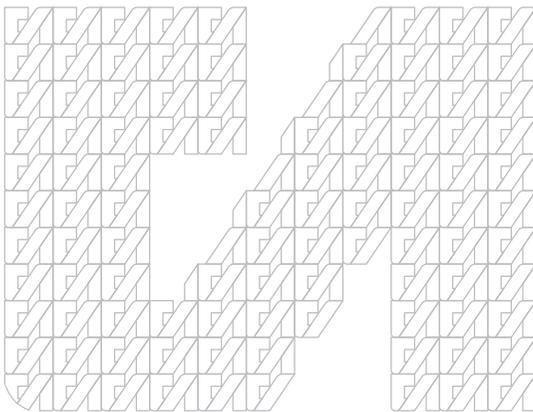


대전광역시 인권지표 개발 연구

박노동



연구책임

• 박노동 /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위원

공동연구

• 박으뜸 / 도시경영연구실 위촉연구원

정책연구 2017- 53

대전광역시 인권지표 개발 연구

발행인 박 재 목

발행일 2017년 11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287-2)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 쇄 청맥기획 TEL 042-487-2589 FAX 042-487-1887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자치특별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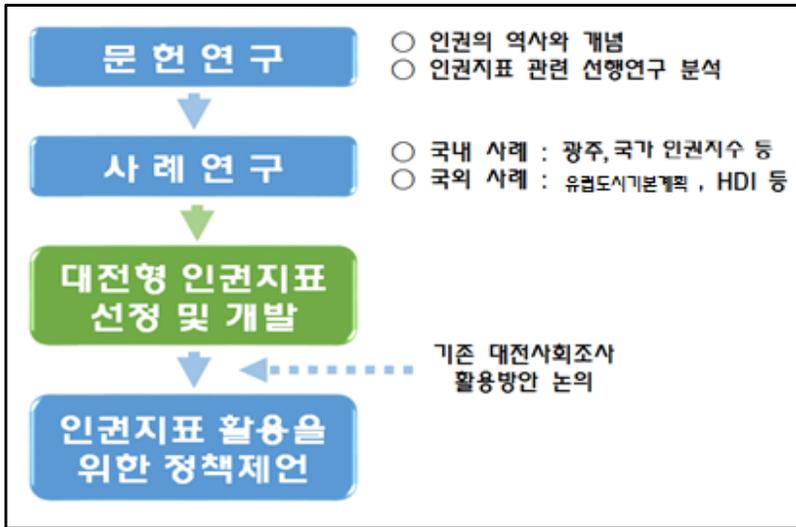
요약 및 정책 건의

■ 연구 배경 및 목적

- 인권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로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임. 오늘날 이러한 인권에 대한 논의 단순히 인권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넘어 한 지역, 나아가서 한 국가의 인권 수준을 측정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인권을 보장받고 살아가는지를 파악하는 것에 대한 논의로 나아감
- 국제사회의 다양한 논의와 함께 국내에서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권의 측정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되기 시작하였음. 특히, 광주시의 경우 전국에서 최초로 도시 수준의 인권 측정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광주 인권지표’를 개발하였음. 이러한 인권에 대한 국내외 논의들 속에서 나타나듯이 오늘날 지역의 인권을 파악하고, 지역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음
- 대전시 또한 2012년 ‘대전광역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17년 9월에는 대전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대전시의 인권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성공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사회의 인권 수준과 시민의 인권 의식 측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의 인권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전형 인권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음. 그리고 이와 같은 탐색적 연구를 바탕으로 대전시 인권의 핵심영역을 설정하고, 120대 인권지표를 제시하였음. 다만 본 연구는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탐색적인 연구로 향후 지표의 개선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연구방법

- 본 연구의 핵심적인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임
 - 문헌연구에서는 인권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기 위해 인권의 역사와 개념을 살펴보았으며, 한국의 인권환경, 인권지표의 기능과 활용 등에 대해 살펴보았음
 - 사례연구에서는 인권지표의 국내사례(대학 인권지표, 국가 인권지수, 광주 인권지표 등)와 국외사례(세계인권가이드, HDI, 유럽도시선언 등)를 살펴보고, 이러한 사례들의 시사점을 살펴보았음



■ 연구 결과

□ 인권 개념 및 환경의 변화에 맞는 지표개발의 필요성

- 오늘날 인권은 정치적·시민적 자유를 넘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나아가 집단권·연대권·환경권 등으로 확장되고 있음. 즉 오늘날의 인권은 더 이상 정치적 영역에서의 문제가 아닌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과 관련된 ‘생활 속 인권’ 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러므로 인권지표의 개발에 있어 이와 같은 생활 속 인권을 어떻게 반영하고 측정할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음

□ 국내·외 사례연구의 시사점

- 국내·외 다양한 사례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의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 번째, 인권이란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갖는 권리임. 그러므로 대전시의 인권지표 개발에 있어서도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인 권리를 인권지표로 구성함과 동시에 대전이라는 도시 상황을 반영한 지표의 구성이 중요함
 - 두 번째, 인권이란 단일한 차원으로 측정되기 보다는 다차원적으로 측정될 때 보다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한 개념임. 그러므로 대전 인권지표 또한 다차원적인 구성이 필요함
 - 세 번째, 국가나 도시 차원의 인권 수준 측정과 함께 개별 개인이나 집단 차원에서의 인권 수준 측정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특히 대전시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청년, 대학생, 연구원 등이 많으므로 이러한 집단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 네 번째, 도시의 명확한 인권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량적 평가 이외에 정성적인 평가도 중요함. 그러므로 대전시 인권지표 또한 정량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주관적 인권의식을 파악할 수 있는 정성적 지표를 인권지표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다섯 번째, 인권지표의 활용을 위한 적절한 활용방안의 개발이 필요함. 인권지표는 단순히 인권수준을 측정하고 보여주는 통계수치로 활용되어서는 안 됨. 인권지표를 바탕으로 도시의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도시 인권수준이 개선되었을 때 인권지표는 더욱 의미가 있을 것임

□ 대전형 인권지표의 개발의 기본 방향

- 대전형 인권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떠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지표를 개발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대전형 인권지표가 지역사회에 인권수준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객관적 수준과 주관적 수준 모두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의 구성이 중요함.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권의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 모두를 지표에 반영하고자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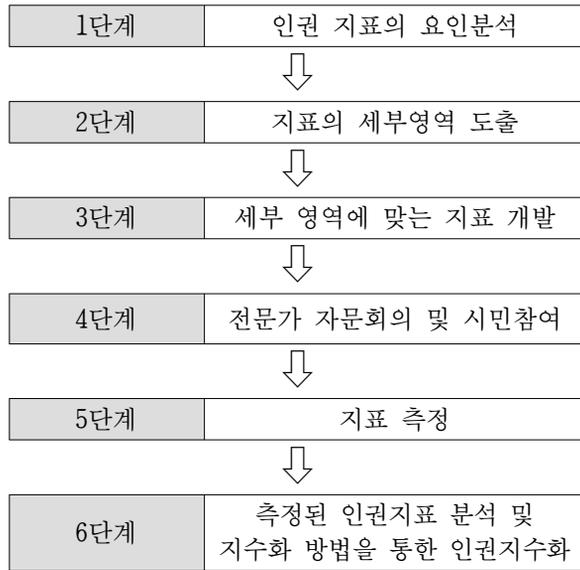
- 대전형 인권지표가 갖는 특징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대전형 인권지표는 인권의 객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측면 모두를 고려하는 지표임
 - 둘째, 대전형 인권지표는 향후 발전하고 변화하는 도시의 미래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었음
 - 셋째, 대전형 인권지표는 시민의 다양한 삶의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경제, 사회, 문화, 보건 의료, 교육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을 지표의 세부영역으로 설정하였음

- 이와 같은 대전형 인권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5대 원칙을 바탕으로 지표를 개발하였음
 - 첫째, 지표의 타당성을 제고
 - 둘째, 지표의 신뢰성을 확보
 - 셋째, 대전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의 선정
 - 넷째, 인권의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 모두를 반영한 지표의 선정
 - 다섯째, 인권의 다양성과 포괄성을 반영하기 위한 세부 영역별 지표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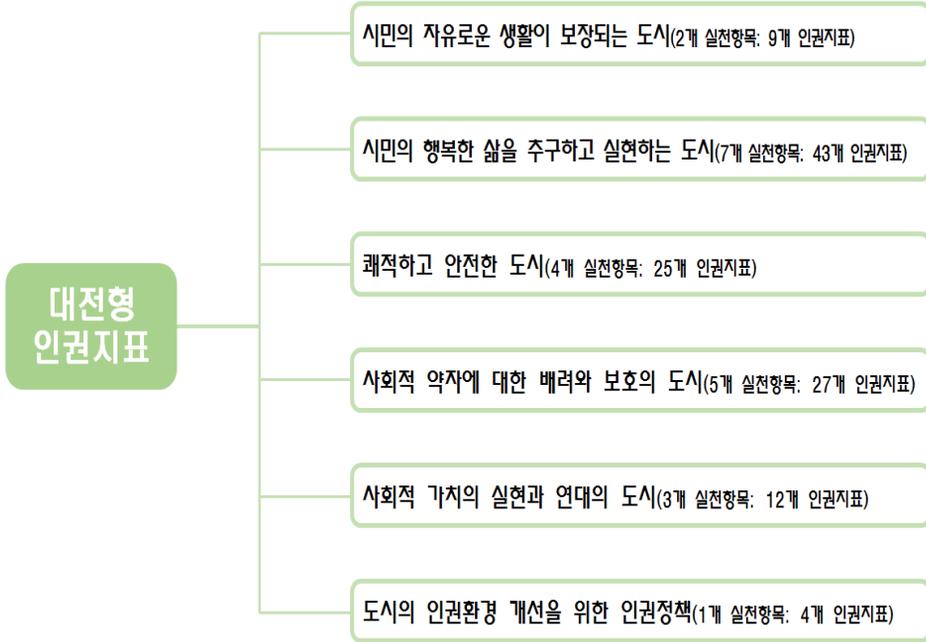
□ 대전형 인권지표의 선정

- 대전형 인권지표의 주요 선정기준은 ① 타당성, ② 이용가능성과 시의성, ③ 안전성과 신뢰성, ④ 이해가능성, ⑤ 반응성, ⑥ 정책적 적절성, ⑦ 대표성임

- 그리고 대전형 인권지표는 다음의 6단계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음



-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개발된 대전형 인권지표는 6대 영역, 22개 실천조항, 120대 세부 인권지표로 구성되었음
- 대전형 인권지표의 6대 영역은 ① 시민적·정치적 권리(2개 실천항목, 9개 세부 인권지표), ② 경제·사회·문화적 권리(7개 실천항목, 43개 세부 인권지표), ③ 환경권(4개 실천항목, 25개 세부 인권지표), ④ 평등권(5개 실천항목, 27개 세부 인권지표), ⑤ 공동체(3개 실천항목, 12개 세부 인권지표), ⑥ 도시의 인권 정책(1개 실천항목, 4개 세부 인권지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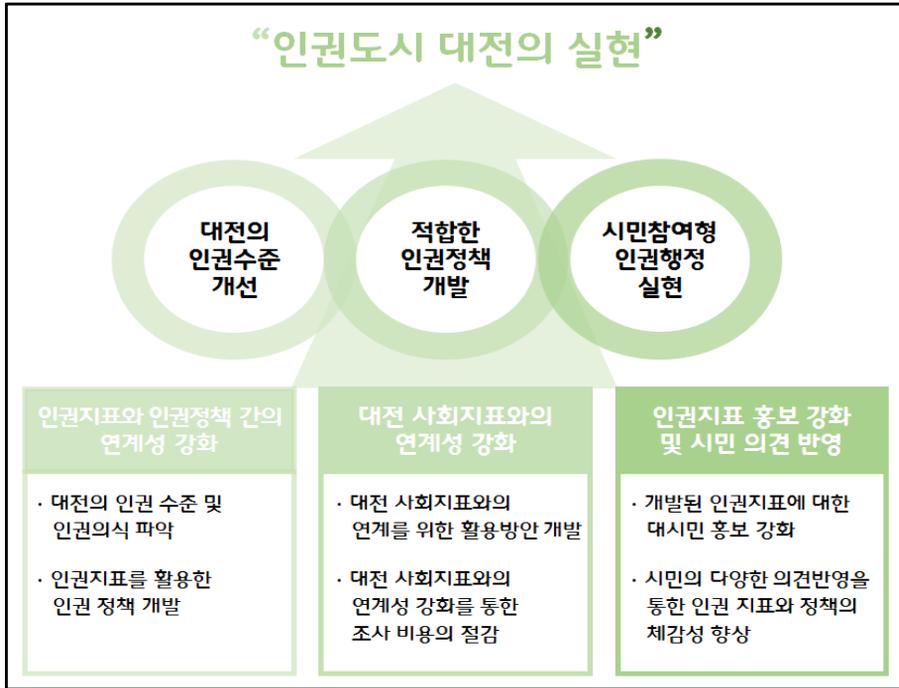
■ 인권지표 활용의 기본방향 및 활용방안

□ 대전형 인권지표 활용의 기본방향

- 행복지표가 대저니 인권정책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음
 - 첫 번째, 시민들의 주관적 인권의식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두 번째, 지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함
 - 세 번째, 대전 인권지표는 대전시 인권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등 정책의 전 과정에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함

- 대전형 인권지표 운용의 기본방향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본연구에서는 ① 대전 인권 정책과의 연계성, ② 대전 사회지표의 활용가능성 및 대전 사회조사를 활용한 자료수집, ③ 인권지표의 홍보, ④ 시민 의견 반영 방안을 중심으로 인권지표 운용의 기본방향을 살펴보았음

-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하는 ‘대전 인권지표 활용의 목적 및 기본방향’은 다음의 그림과 같음



□ 대전형 인권지표 활용방안

- 본 연구에서 살펴본 대전 인권지표의 활용방안은 ① (가칭) 대전형 인권지표집 발간, ② 지표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한 지역 통계 생산기반 구축, ③ 인권지표를 활용한 인권지수 개발, ④ 인권지표 조사 분석 전담 부서 운영임
- 본 연구에서 살펴본 활용방안 이외에도 인권지표는 도시 간 인권수준 비교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역의 미래 비전 수립, 균형 발전계획 등 다양한 영역의 정책 개발에 있어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임. 결국 향후 인권지표 개발 이후에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가진 인권지표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차 례

1장 서론	3
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6
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7
1. 연구의 내용	7
2. 연구 방법	8
2장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이론적 고찰	11
1절 인권 개념의 형성과정과 인권환경의 변화	11
1. 인권개념의 형성과정	11
2. 인권환경의 변화, 개념의 확장	15
2절 한국의 인권환경	17
1. 한국의 인권 역사 및 인권환경의 변화	17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18
3절 인권지표의 기능과 활용	24
1. 지표의 개념과 지표의 기능	24
2. 인권지표의 기능과 활용	25

3장 인권지표의 국내외 사례 동향 31

1절 국외 인권지표 관련 연구 및 사례 31

- 1.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는 인권목록 32
- 2. 휴매너의 ‘세계인권가이드’ 34
- 3. 하스의 ‘인권지표’ 37
- 4.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HDI) 44
- 5. OECD의 Better Life Initiative 45
- 6. ‘유럽도시선언’과 ‘도시권리’ 47

2절 국내 인권지표 관련 연구 및 사례 50

- 1. 한국형 인권지표의 모색 51
- 2. 대학 인권지표 52
- 3. 국가 인권지수 55
- 4. 광주 인권지표 개발 및 활용 60
- 5. 대전형 행복지수 68

3절 시사점 71

4장 대전형 인권지표의 개발 75

1절 대전형 인권지표 개발의 기본 방향 75

- 1. 대전형 인권지표 개발 시 고려할 요소 75
- 2. 대전형 인권지표 개발의 기본방향 78

2절 대전형 인권지표 개발의 절차 79

- 1. 대전형 인권지표 선택 기준 79
- 2. 대전형 인권지표의 작성과정 80

3절 대전형 인권지표의 선정 82

- 1. 대전형 인권지표 선정의 개념적 틀 82
- 2. 대전형 인권지표의 영역 설정 85
- 3. 대전형 인권지표의 영역별 세부지표 선정 87

5장 대전형 인권지표의 활용방안	115
1절 기본방향	115
1. 인권지표의 활용원리	115
2. 인권지표 설정 목적 및 핵심 이슈	116
3. 인권지표 운용의 기본방향	117
2절 인권지표의 활용방안	124
1. (가칭) 대전 인권지표집 발간	124
2. 지표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해 지역통계생산 기반 구축	125
3. 인권 지표를 활용한 인권 지수 개발	126
4. 인권지표 조사 분석 전담 부서 운영	128
참고 문헌	133

표 차례

[표 2-1] 세계인권선언의 권리항목의 세부적인 내용	12
[표 2-2] 세계 주요 인권 연표	14
[표 2-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목표	19
[표 2-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각 항목별 추진과제	20
[표 3-1] 국제인권법상 인정되는 인권목록	32
[표 3-2] 휴매너의‘세계인권가이드’세부내용	35
[표 3-3] 하스의 인권 범주 간 관계의 다섯 가지 유형	37
[표 3-4] 하스의 인권지표의 구성	38
[표 3-5]‘더 나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의 구성 및 세부지표	46
[표 3-6] 유럽도시 선언에서 나타난 도시 권리	47
[표 3-7] 정근식 외(2004)의 한국형 인권지표	51
[표 3-8] 대학 인권지표의 지표항목	53
[표 3-9] 국가 인권지수(주관적): 내부자 평가의 영역과 지표	55
[표 3-10] 국가 인권지수(주관적): 외부방문자 평가의 영역과 지표	57
[표 3-11] 국가 인권지수(객관적): 국가기관별 인권지표	58
[표 3-12] 광주인권지표:‘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세부지표	62
[표 3-13] 광주인권지표:‘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세부지표	63
[표 3-14] 광주인권지표:‘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세부지표	64
[표 3-15] 광주인권지표:‘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세부지표	66
[표 3-16] 광주인권지표:‘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세부지표	67
[표 3-17] 대전 행복지수의 영역과 세부분야	69
[표 3-18] 대전형 행복지표(안)	69
[표 4-1] 인권지표의 주요 선택기준	79
[표 4-2] 대전형 인권지표 선정을 위한 국내외 인권관련 논의검토	83

[표 4-3] 대전의 시정방향 및 미래지향	84
[표 4-4] 대전형 인권지표의 6대 영역과 세부 권리 분야	85
[표 4-5] 대전형 인권지표 세부지표 선정을 위한 실천적인 지표영역	87
[표 4-6] 사상, 집회 및 결사, 표현의 자유보장 영역의 인권지표	89
[표 4-7] 시민자치 실현을 위한 정보의 공유와 시민참여 영역의 인권지표 ..	90
[표 4-8] 자유로운 노동의 참여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의 인권지표	91
[표 4-9] 행복한 삶을 위한 시민의 경제적 권리 보장	92
[표 4-10]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보장	93
[표 4-11] 적절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보장	94
[표 4-12] 폭력, 학대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사회 실현	95
[표 4-13] 자유롭고 평등하게 학습 받을 권리 보장	96
[표 4-14] 자유롭게 문화예술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	97
[표 4-15] 오염과 공해로부터 자유로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98
[표 4-16] 자유로운 여가시설의 이용과 여가생활을 누릴 권리	99
[표 4-17] 장벽 없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	100
[표 4-18] 유해환경, 범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101
[표 4-19]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 생활의 보장	102
[표 4-20] 여성의 권리 보장과 성 평등 실현	103
[표 4-21] 아동, 청소년, 노인이 적절한 수준의 돌봄을 받을 권리 보장 ..	104
[표 4-22]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권리 보장	105
[표 4-23]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106
[표 4-24] 민주시민으로서의 사회참여	107
[표 4-25]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 신뢰	108
[표 4-26]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	109
[표 4-27] 인권문화 실현과 인권환경 개선을 위한 인권행정	110
[표 4-28] 대전형 인권지표(120개)	111
[표 5-1] 광주 인권지표의 지수화 방안	127

그림 차례

[그림 2-1] 인권개념의 확장	16
[그림 2-2] 인권지표의 기능과 활용	28
[그림 3-1] 휴매너의 세계인권가이드	34
[그림 3-2] 인간개발지수(HDI)	45
[그림 4-1] 인권지표의 초점: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	76
[그림 4-2] 지표작성의 10단계 과정	80
[그림 4-3] 대전형 인권지표의 개발과정	81
[그림 4-4] 대전형 인권지표의 체계	88
[그림 5-1] 대전 인권지표 활용의 목적 및 기본 방향	117
[그림 5-2] 대전 인권지표와 인권 정책 간의 연계성 강화	119
[그림 5-3] 대전 사회지표를 활용한 인권지표 자료의 수집	121
[그림 5-4]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전 인권지표에 대한 홍보	122
[그림 5-5] 광주 인권평화협력관실의 조직도	128

1장

서론

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장 서론

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인권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¹⁾으로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인권의 중요성은 국제적으로는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헌법, 도시인권선언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권을 단순히 법에 명시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닌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 더 나아가 한 국가의 인권을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

앞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인권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릴 권리로 그 권리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의 측정은 단순히 하나의 지표로 측정될 수 없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찰스 휴매너(Charles Humana)가 작성한 인권지표가 있다. 휴매너가 세계인권가이드(World Human Right Guide)로 명명한 인권지표는 자유권, 평등권 등과 같은 인간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 측정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 하스(Hass)의 인권지표가 있으며, 국제사회 내 인권관련 지수로는 인간개발지수(HDI), Better Life Initiative Index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인권 관련 지표와 지수를 통한 인권 수준의 측정은 국제 사회의 인권 수준이 어떻

1) 네이버 지식백과, “인권”, 검색일(2017. 06. 1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36851&cid=46634&categoryId=46634>”

게 변화되고 있는지 시계열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해줌과 동시에 한 국가의 인권 수준이 국제사회 내에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비교 연구를 가능하게 해준다.

한국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 ‘한국형 인권지표’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나타났다(정근식, 서승, 정용화, 이정은, 2004; 강수택, 김중섭, 백재홍, 2009; 구정우, 공석기, 박병진, 2011). 그리고 이러한 국가 차원의 인권지표가 아닌 한 도시의 인권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인권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가 광주에서 실시되었다.

광주시는 ‘인권도시 광주’라는 구호 아래 2011년부터 도시의 인권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인권지표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2012년 5월 광주 인권헌장과 함께 인권지표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광주시는 선정된 100대 인권지표를 매년 측정하여, 광주시의 인권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도시의 인권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함과 동시에 향후 도시의 인권수준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고 있다. 또한 광주시는 개발된 인권지표를 활용하여 ‘인권도시 광주’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광주시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국가 차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인권지표 개발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차원에서의 인권 수준의 측정은 전국 데이터를 쉽게 파악하고, 시도 간 비교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 지역의 특수성과 구체적인 인권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의 인권 지표가 지속적으로 측정되어야 지역의 인권 변화 수준을 파악하고, 나아가 지역의 인권 지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전시 또한 대전의 현황과 특성을 반영한 ‘대전형 인권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전시는 2012년 11월 ‘대전광역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16년 12월에 보다 적합한 인권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9월에는 대전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대전 인권센터는 인권교육, 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권 강사 양성, 인권 민간단체 협력 및 지원, 인권 침해 행위 상담 등 대전 시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대전시는 인권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전시의 긍정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전시는 지역의 인권 수준을 측정할 만한 마땅한 지표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대전의 전반적인 사회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사회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대전 사회조사에는 공동체, 사회복지, 문화여가, 안전 등 인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대전시의 부분적인 인권수준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인권수준을 측정하고 분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대전시 인권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전형 인권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권은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적인 가치이며, 삶의 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증가와 함께 ‘사람답게 살 권리’인 인권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대전시도 ‘사람은 사람답게, 인권보호’하기 위해서는 현 대전시의 인권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대전형 인권지표’의 개발은 향후 대전에 적합한 인권정책을 발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 축적된 인권지표를 활용하여 대전시 인권 현황의 변화 양상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목적

대전형 인권지표의 개발을 위해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 째, 대전시의 특성과 현황을 반영하는 ‘대전형 인권지표’를 개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인권관련 지표들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특히 광주시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방식으로 지역의 인권지표를 선정하였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기존의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는 대전시에 적합한 인권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 기존 대전 사회조사를 인권지표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대전 사회조사에 인권 관련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대전 사회조사는 매년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인권지표로 활용되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²⁾ 그러므로 인권지표를 새롭게 개발하기 보다는 기존 사회조사를 최대한 활용하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지표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개발된 인권지표가 대전시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인권지표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인권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광주시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광주의 사례를 바탕으로 대전시에서 향후 개발될 인권지표가 인권정책 발굴, 대전시 인권목표 설정 등 다양한 영역에 있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2) 광주시의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인권지표는 매년 측정되어,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성된 인권지표를 바탕으로 지역의 인권 목표를 설정하고, 측정함으로써 인권 상황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인권상황의 변화양상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지역의 미래 인권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서론부분에 해당하는 1장은 연구 배경과 연구목적, 연구방법을 서술하였다. 2장에서는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논의하였다. 이론적 배경은 크게 인권의 역사와 개념, 인권 지표의 기능과 활용으로 구성되었다. 인권의 역사와 개념에서는 오늘날 인권의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지면의 관계상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인권지표의 기능과 활용에서는 인권지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기존의 국내외 다양한 논의들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인권지표의 국내외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3장 1절에서는 국외 연구 및 활용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2절에서는 국내 연구 및 활용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연구 및 활용 동향이 주는 시사점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4장은 본 연구의 핵심적인 장으로 대전형 인권지표의 개발 방향과 절차, 지표 선정 등을 논의할 것이다. 인권지표의 보편성, 지역성, 활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대전 지역사회에 적합하고 시민의 다양한 인권 현황을 반영할 수 있는 인권지표 개발 방향과 절차를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권 지표를 구성하고, 추가적으로 대전시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들을 추가하여 대전형 인권지표를 구성할 것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구성된 인권지표 중 기존 대전 사회조사를 활용할 수 있는 지표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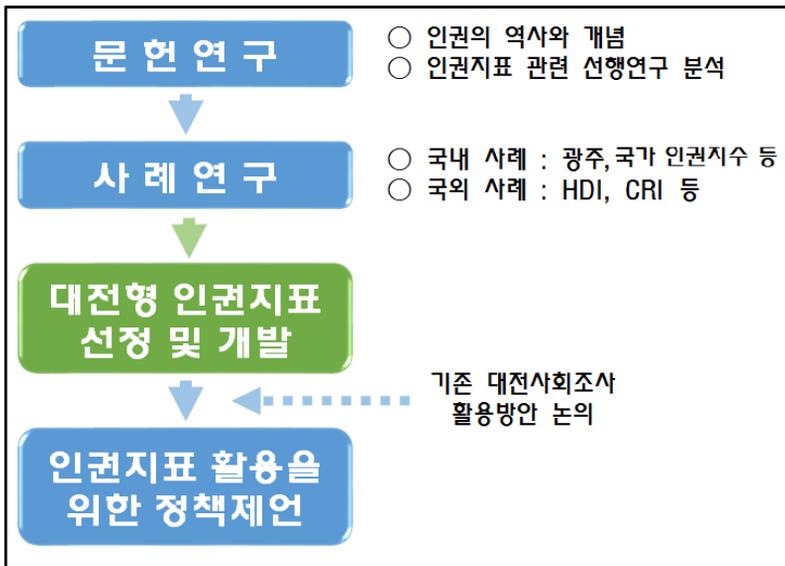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론 부분인 5장에서는 인권 지표의 기본방향과 함께 활용방안에 관해 논의 할 것이다.

2. 연구 방법

기존의 인권지표 연구 및 활용 동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본 연구의 특징상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와 사례연구이다. 문헌조사에서는 인권의 역사와 개념, 그리고 인권지표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사례연구에서는 대전형 인권지표의 구성을 위해 그동안 국내외 다양한 인권지표 사례를 정리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헌조사 이외에 대전시 인권지표 구성을 위해 현재 대전 사회조사의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어떠한 지표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대전 사회조사의 경우 새로운 지표가 추가되거나 기존에 있던 지표가 제외되기도 하므로, 인권을 나타내는 지표를 중심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대전 사회조사를 연도별로 분석해 볼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연구 진행 방향을 연구 체계도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1-1] 연구체계도

2장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이론적 고찰

1절 인권 개념의 형성과정과 인권환경의 변화

2절 한국의 인권환경

3절 인권지표의 기능과 활용

2장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이론적 고찰

1절 인권 개념의 형성과정과 인권환경의 변화

1. 인권개념의 형성과정³⁾

인권개념은 역사적으로 발전한 역사의 소산이자 문명의 산물로 한 시대의 인간관과 철학을 반영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권 개념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근대 인간권리보장의 토대가 된 문서는 영국의 ‘마그나카르타(Magna Carta, 대헌장)’로 1215년 국왕 존의 폭정을 견디지 못한 귀족들이 시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왕에게서 쟁취한 귀족조항을 기초해 작성되고, 승인된 칙허장이다. 대헌장에는 부당한 벌금이나 자유민에 대한 비합법적 체포금지, 귀족들의 봉건적 특권존중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왕 또한 법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대헌장이후 인권개념의 체계적인 정립은 계몽주의적 자연법이 등장한 17·18세기 개인주의 사상, 인간이성에 대한 낙관론, 평등사상 등에 영향을 받아 나타났다. 그리고 이 시기에 나타나 미국의 독립선언(1776년), 프랑스대혁명(1789)에서는 인권의 불가침성과 함께 자유권 중심의 인권보장을 규정하였다.

17·18세기 시민혁명을 지나 인권에 대한 논의는 이제 산업혁명 이후 나타난 저임금·장시간 노동, 열악한 작업환경과 주거환경, 아동노동, 환경오염으로 인한 평균 수명 저하 등과 같은 비인간적 생활 상태를 해결로 나

3) 류은숙(2009), 김재철 외(2011), 박노동(2014)을 참고하여 작성함

아갔다. 결국 이러한 인권에 대한 논의 속에서 19세기 후반 복지국가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헌법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차원에서 보장하도록 명시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노동, 생활에 있어서의 인권 이외에 평등권의 확대, 여성의 권리 신장 운동⁴⁾ 등이 나타났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인권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한 국가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국제노동인권문제를 논의하는 국제노동기구(ILO)가 1919년 설립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1945년 국제연합(UN)이 결성되었다. 그리고 UN에서는 국제사회 내 인권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국가, 정치, 이데올로기를 떠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을 담아내고자 ‘세계인권선언’을 194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은 보편적 국제기구에서 나온 포괄적인 인권문서로 본문은 총 30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날 인권 개념, 정책, 지표 등의 토대가 되었다.

오늘날 국제사회 인권정책의 토대 및 최소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만큼 세계인권선언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인권을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는 천부적인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1조).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의 권리항목은 크게 안전권, 적정절차의 원리, 인간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 평등권, 경제적·사회적 영역에서의 권리, 정치적 참여권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세계인권선언의 권리항목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1] 세계인권선언의 권리항목의 세부적인 내용

권리항목	내용
안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 자유, 안전에 관한 권리 (제3조) · 잔인한 형벌과 고문의 금지 (제5조)

4) 사실 여성의 인권에 대한 논의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여성 인권에 대한 논의는 1791년 올랭프 드 구조의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으로 여성의 완전한 정치적 평등을 주장하였다(류은숙, 2009). 그러나 이 시기의 여성 운동은 실제 결과로 나타나지는 못하였으며, 여성의 참정권에 대한 인정은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권리항목	내용
인간으로 누릴 기본적인 자유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예제 혹은 예속적 상태의 금지 (제4조) · 타인의 사생활, 가정, 통신에 대한 자의적 간섭금지 (제12조) · 거주 이전의 자유 (제13조) · 입출국의 자유 (제13조) · 박해를 피해 다른 국가로 망명할 자유 (제14조) · 개인의 전적인 자유로운 동의 없는 결혼 금지 (제16조 2항) · 개인 혹은 집단으로 재산을 소유할 자유 (제17조 1항)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제18조) · 표현의 자유 (제19조) ·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제20조) ·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 (제23조 4항) · 자식을 위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부모의 자유 (제26조) · 문화적활동의 참여 및 문화향유의 자유 (제27조)
평등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인종, 종교 등에 관련 없는 근본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평등 (제2조) · 법 앞에서 자연인으로 인정받을 권리 (6조) · 법 앞에서의 평등 (제7조) · 혼인/이혼과 가족에서의 평등 (제16조) · 동일 노동 동일임금 (제22조) · 혼외출산 아동의 평등한 사회적 보호 (제25조 2항)
경제적 · 사회적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을 요구할 권리 (제22조) · 정당하고 적합한 임금을 받을 권리 (제23조 3항) · 노동에 있어 휴식과 여가의 권리 (제24조) · 건강과 복지에 있어 적절한 기준을 요구할 권리 (제25조) · 모성과 아동에 관한 특별한 보호 (제25조 2항) · 교육 받을 권리 (제26조)
정치적 참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으로 혹은 자유롭게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제21조 1항) · 성별, 인종에 관계없이 공직에 평등하게 접근할 권리 (제21조 2항) · 선거에 자유롭게 투표할 기회 및 권리 (제21조 3항)
적정절차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권리 침해에 있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8조) · 자의적인 혹은 강제적 체포, 구금, 추방의 금지 (제9조) · 형사사건에 있어 재판 받을 권리 (제10조) · 무죄추정의 원리 (제11조) · 소급형법 혹은 소급처벌 금지 (제11조) · 강제적 국적 박탈 금지 (제15조) 및 재산몰수의 금지(제17조 2항) · 과학, 문화, 예술적 창조에서 나오는 개인의 저작에 관한 이익 보호 (제27조 2항) · 사회적 · 국제적 질서에 관한 권리 (제28조)

자료: 세계인권선언(1948. 12. 10)

세계인권선언이 보편적 가치로서 포괄적인 인권개념을 담아낸 이후, 20세기 후반부터는 인종, 여성, 아동,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나타났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이 1965년 체결되었으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반대하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1979년 체결되었다. 그리고 아동의 권리를 담은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이 1989년 체결되었으며,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이주노동자권리 협약이 1990년 체결 되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이후 보다 확장된 인권개념을 포괄하고, 인권보장 실천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비엔나 선언이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 결의 되었다. 비엔나 선언에서는 인권이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고, 불가분하며, 서로 의존하고 관련되어 있다. 국제사회는 인권을 전 세계적으로 공정하며 동등한 양식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국가적 지역적 특수성과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그들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체계와 관계없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 임을 명확히 밝혔다(박노동, 2014).

지금까지 살펴 본 세계 인권역사를 간략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2] 세계 주요 인권 연표

년도	인권관련내용	년도	인권관련내용
1215	영국 마그나 카르타	1966	경제·사회 권리에 관한 규약
1679	영국 인신보호령	1969	인종차별철폐협약
1776	미국 독립선언	1975	헬싱키 협정
1789	프랑스혁명 인권선언	1979	여성차별철폐협약
1791	미국 권리장전	1981	아프리카인권헌장
1919	국제노동기구(ILO) 창설	1984	고문방지협약
1945	유엔 헌장	1989	아동권리협약
1945~47	뉘른베르크도쿄 전범재판	1990	이주노동자권리협약
1948	세계인권선언	1998	국제형사재판소 로마협약
1951	난민협약	2002	국제형사재판소 창설
1965	인종차별철폐협약	2006	강제실종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자료: 박노동(2014), “대전인권증진의 비전과 발전방안 연구”

이처럼 인권이란 오랜 역사를 거쳐 형성된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인간이 선천적이고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로 보장받지 못하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그 모든 권리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권은 국가, 종교, 이데올로기, 계급에 관계없이 개인에 부여된 일련의 권리로 정치, 경제, 사회 전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김재철 외, 2011).

2. 인권환경의 변화, 개념의 확장⁵⁾

1) 인권환경의 변화

앞서 인권의 역사에서 보았듯이 인권개념은 18세기 등장한 자연권 사상에 근거하고 있지만, 오늘날 현대의 인권개념은 자연권보다 훨씬 구체적인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인권의 적용범위 또한 국가, 종교, 인종에 관계없이 국제적 수준으로 적용되며,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근대적인 개인의 권리를 강조한 인권의 개념에서 보다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로의 현대적 인권개념으로의 변화는 1948년 나타난 세계인권선언과 관련 있다. 평화적 세계질서 수립과 국가나 인종을 떠나 국제사회 내 보편적인 인권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국가가 따라야 할 최소한의 행동 규범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냉전시대가 종식되고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과 동시에 복지국가가 쇠퇴하고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인권문제에 관한 논의는 국가권력의 시민적·정치적 자유의 억압과 박탈에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차별 및 불평등에 의한 인권침해로 확대 전환되어가고 있다(김재철 외, 2011). 이러한 전환은 결국 인권이 단순히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떠나 이제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삶 전 영역에 대한 통합적 인권으로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변화되는 인권환경 속에서 점차 인권의 보장이외에 시민들의 인권 의식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인권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UN에서는 국가 수준에서의 인권 교육을 위한 인권 프로그램 개발 및 구체적 시행 지침 마련을 위해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을 1995년에서 1996년에 걸쳐

5) 정근식 외(2004), 김재철 외(2011), 광주광역시(2012)를 참고하여 작성함

수립하였다. 그 결과 UN은 인권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World Program for Human Right Education을 2005년부터 제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 문화, 경제, 환경 등 인간 전 영역으로의 인권개념의 확장과 인권인식 증진을 위한 인권 교육 등이 중요해지면서,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의 인권정책 수립보다는 지역이나 도시 차원에서의 인권정책 수립과 실천이 중요해지고 있다. 즉, 오늘날 인권의 개념은 ‘생활 속 인권’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활에 가장 밀접해 있고 관련 있는 지역 차원에서의 인권 실천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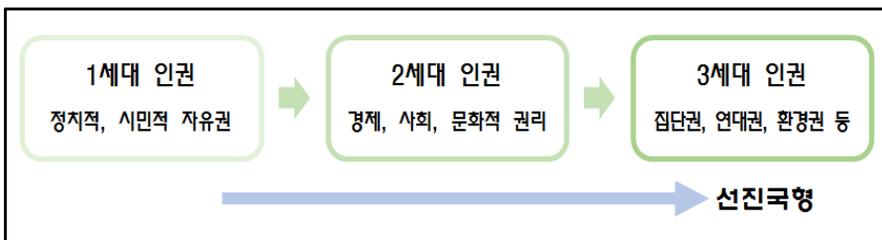
2) 인권개념의 확장

인권 개념은 크게 1세대 인권,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광주광역시, 2012). 우선 1세대 인권은 정치적·시민적 자유권을 의미한다. 이는 시민들이 얼마나 국가의 억압과 박해로부터 정치적으로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의미하며, 근대적인 인권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2세대 인권은 시민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의미한다. 2세대 인권은 세계인권선언 이후 등장한 현대적 인권개념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단순히 정치적인 자유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와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3세대 인권은 집단권, 연대권, 환경권, 안전권과 관련된 인권을 의미한다. 3세대 인권은 인간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의 나타나는 ‘생활 속 인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인권의 개념은 점차 국가차원의 인권에서 지역 차원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정치적 자유에서 생활 속의 인권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1] 인권개념의 확장

자료: 광주광역시(2012), 『광주인권지표』

2절 한국의 인권환경

1. 한국의 인권 역사 및 인권환경의 변화

한국의 인권 역사는 해방 이후, 제정된 헌법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대한민국헌법』 「전문」에서는 “정치·경제·사회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는 자유권, 평등권 등의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⁶⁾ 그러나 이러한 헌법의 제정 이후, 독재정권의 등장으로 국민의 인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이었다.

그러다가 1987년 군부독재가 종식됨에 따라 한국에서는 진정한 국민주권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동안 독재정권 속에서 억압받던 인권환경 또한 변화되었다. 그리고 90년대 들어 세계의 냉전체제가 종식됨과 함께 한국에서는 남북한 화해 및 대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사상적인 측면에서의 억압에서 자유로워졌다.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올라갔으며, 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한국의 인권환경은 1987년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하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 영역에서는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가 신장되었으며, 사회적 영역에서는 인권침해 법이 폐지 및 개정되고 인권증진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열악한 노동환경도 많이 개선됨과 동시에 노동자의 권리도 향상되었으며, 시민들의 생활 영역에서의 인권환경도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권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의 인권환경에는 다양한 위험 요인과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위험요인을

6)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검색일 2017. 07.04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

살펴보면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인해 사회 양극화, 정보격차 등의 인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 영역이외에 사회적, 환경적 영역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인권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두 번째로 변화되는 오늘날의 인권환경을 살펴보면 NGO, 노동조합 등과 같은 시민사회의 운동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생활정치’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권환경 조성이 필요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변화되는 한국의 인권환경에 맞춘 인권정책의 수립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치적 영역에서는 생활정치의 실현과 시민참여가 중요한 과제이며, 사회적 영역에서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인권문제 해결, 장애인, 노인, 빈곤층, 성소수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주거, 교통과 같은 생활환경 또한 오늘날 중요한 인권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권과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향후 우리나라 인권정책의 기본적 가이드라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부적인 내용 파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⁷⁾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배경과 목표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배경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NAP)는 인권관련 법이나 제도, 관행 등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이다. 이러한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유로는 국제사회의 인권환경 변화와 관련 있다.

7) 대한민국 정부에서 2014년 12월에 발간한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정판)』을 참고하여 작성함

1993년 실시된 세계인권회의에서는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이 채택되었으며,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에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각 국의 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UN 내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1993년 호주에서 최초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로 2011년까지 약 30여개의 국가에서 인권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2001년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권고 이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논의들이 나타나고 있다.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목표와 기대 효과

정부는 다음과 같이 9개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목표를 설정하였다.

[표 2-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목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확인 ② 국가인권정책 방향의 국내외 천명 ③ 인권을 기준으로 한 다양한 정부정책의 연계 및 종합 ④ 국제인권기준 및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를 고려한 인권정책 개발 ⑤ 시민적·정치적 영역에서의 개인의 자유 확대 및 보호 ⑥ 양극화 시대의 사회안전망 확보 ⑦ 사회전반적인 삶의 질 확산 ⑧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철폐와 다양성 존중을 통한 사회통합 ⑨ 인권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제고 |
|--|

자료: 대한민국정부(2014).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러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로는 ① 국가정책 간 연계성 강화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 ② 인권에 관한 사회적 이해 폭 확대, ③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생활 문화 정착, ④ 인권 선도국으로의 도약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내용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①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②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③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④ 인권교육,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국제인권규범의 이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은 8가지 항목(생명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권익 피해의 구제를 위한 권리)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은 8가지 항목(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 3권,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보건 및 환경권, 문화·예술 등에 관한 권리, 가족생활 등에 관한 권리)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은 11가지 항목(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범죄피해자, 외국인·이주민, 재외동포, 난민, 병력자성 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북한인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인권 교육,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국제 인권 규범의 이행은 3가지 항목(인권 교육,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국제 인권 규범의 이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각 항목들의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각 항목별 추진과제

1.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 생명권 - 사형제도 개선, 생명윤리·안전강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강화 등
○ 신체의 자유 - 인신매매, 아동매매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인신보호제도의 활성화, 수용자 과밀 수용 해결을 위한 조치 등
○ 거주이전의 자유 -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관찰제도 운영 개선, 개인 정보보호기능 강화, CCTV와 같은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방침 수립 등 ○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안법의 남용 방지, 입영 및 징총거부자 대체복무제도 편입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저보의 디지털화 추진 및 민간제공 확대, 장애인 방송 확대 시행, 장애인·노인 등의 웹 접근성 제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합리적 운용 등 ○ 참정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약자의 선출직 공무담임권 보장 강화, 공직 내 여성대표성 제고, 장애인 공직진출 확대 추진,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지원 확대 등 ○ 권익 피해의 구제를 위한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 사건 예방 및 신속한 조사·구제,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 활성화, 사회적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
<p>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을 받을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교육의 단계적 확대, 성취평가제 도입,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장애인의 교육보장,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평생교육 등 ○ 근로의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 종합대책, 장애인고용지원제도 개선,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고용상 차별 모니터링,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직업능력 개발 지원 등 ○ 근로 3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대학교원의 단결권 보장 방안 마련 ○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약자의 지적 재산권 보호,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단속, 소비자단체 소송 범위 확대 등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저소득 여성 기초생활보장, 취약가구 도우미 지원, 취약계층 생활환경(가스, 수도) 조성, 안전한 수도물 수질기준 설정, 임대주택 공급, 장애인·고령자와 같은 주거약자 지원 등 ○ 건강·보건 및 환경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저소득층 의료급여의 보장성 강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성 확보, 흡연·음주 예방 교육 강화, 환경오염인구 최소화, 주요 오염원에 대한 배출 저감대책 추진, 생활소음에 대한 대책 마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등에 관한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진흥체계 구축,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청소년 문화존 사업 확대, 노인을 위한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예술인 창작기반 강화 등 ○ 가족생활 등에 관한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 지원 사업,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사업,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결혼이주민 여성 지원 등
<h3>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 예방, 가정 폭력·성폭력 방지, 성희롱 예방,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등 ○ 아동·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참여기구 등 청소년 참여 기반 확대, 창의적 체험 활동 활성화, 드림스타트 사업 확산, Wee 프로젝트 기능 강화, 학교폭력 예방,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위한 치료 재활 체계 구축 등 ○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여성장애인의 모성 보호,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확대 및 급여 내실화 등 ○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학대 예방 및 상대 프로그램 개발,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 보호, 고령친화사업 기반 조성, 기초연금제도 도입 등 ○ 범죄 피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 지원,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보장, 신변보호 등 ○ 외국인·이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언어 및 상담지원, 이주민 문화지원, 결혼이민자 보호를 위한 체계 마련 등 ○ 재외동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취업 동포에 대한 취업 지원·관리 등 ○ 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확충 등 ○ 병력자 및 성적소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센인 정착농원의 생활환경 조사 및 개선, HIV 감염인 인권 보호 방안 등 ○ 북한 이탈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지원 강화,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정착 지원,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적응력 강화 등 ○ 북한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 지원, 통일에 대비한 인권정책 수립 등

4. 교육,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국제 인권 규범의 이행

○ 인권교육

- 인권교육 일반체계 조성, 학교 인권교육 실시, 공무원 및 인권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기업 인권교육, 국민 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

○ 인권관련 국내·외 협력

- 인권 관련 국제논의에 기여, 공적개발원조, 경영활동에서의 인권 존중, 사회적 책임 권장 등

○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 및 비준, 인권관련 국제조약의 유보 철회,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을 위한 조치 등

자료: 대한민국정부(2014).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앞서 이야기 했듯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향후 우리나라 인권정책의 기본적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인권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중요한 토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인권 목표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를 참고하여, 대전시의 인권지표 설정의 기본 방향과 지표 선정할 필요가 있다.

3절 인권지표의 기능과 활용⁸⁾

1. 지표의 개념과 지표의 기능

1) 지표의 개념

지표란 “추상적인 현상이나 개념을 일정한 속성을 가진 변수로 변환하고, 다시 측정·평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환되어진 통계량”을 의미한다(김재철 외, 2011). 지표는 추상적인 현상들 예를 들어 자살, 행복과 같은 직접 관찰되지 않은 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는 우리의 현재 상태를 확인시켜주고,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에 있어 도움을 준다. 그리고 지표는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축적된 지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지표와 혼동하기 쉬운 개념으로는 지수가 있다. 지수는 “개별 변수의 측정치를 종합하여 개별 변수의 상대적 위치를 측정하는 측정치로 지표보다 상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재철 외, 2011). 즉, 지수는 일정한 시점을 기점으로 종합된 수치를 바탕으로 사회 변동의 정보를 알려준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지수는 축적된 지표를 특정 기준점을 바탕으로 지수화하여 구하기도 하며, 이를 통해 사회 변동의 정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전시의 인권지표 또한 단순히 인권의 다양한 현상을 측정하는 지표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수화를 통해 특정한 시점과 비교를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이유는 대전 인권지수는 대전의 변화되는 인권상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줄 것이며, 나아가 대전의 인권발전 목표 달성 및 정책 수립에 있어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8) 김재철 외(2011), 광주광역시(2012)를 참고하여 작성함

2) 지표의 기능

지표는 한 사회가 놓여 있는 상황을 파악하게 해주고, 이에 맞는 사회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축적된 지표를 바탕으로 사회 변동의 상태를 유추할 수 있으며, 나아가 축적된 지표를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지수화 함으로써 특정시점으로부터 사회가 얼마나 변화하였는지 비교를 할 수 있다. 또한 지표는 추상적이거나 복잡한 현상을 측정하여 보다 간결하고 유용한 정보로 압축하여 제공해준다.

결국 지표는 사회정책이나 공공정책의 수립과정부터 시행, 평가과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준다고 볼 수 있다. 정책 수립과정에서는 측정된 지표를 바탕으로 현재의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시행과정에 있어서는 지표를 활용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 있으며, 평가과정에서는 변화된 지표를 바탕으로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었는지 평가할 수 있다.

2. 인권지표의 기능과 활용

인권지표는 도시의 인권 수준을 파악하고, 인권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인권지표의 기능과 활용방안은 크게 ①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행정 촉진, ② 도시의 인권 현황 파악, ③ 도시 인권정책의 가이드라인과 지침, ④ 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 실천항목 설정, ⑤ 과학적 시스템으로 행정에 기여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광주광역시, 2012).

1)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행정 촉진

인권지표의 조사는 단순히 시차원에서 실시되는 조사가 아닌,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조사이다. 인권지

표는 시민들의 주관적 인권의식과 자신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인권이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민들의 다양한 인권에 대한 의식이 담겨져 있는 인권지표를 바탕으로 시는 단순히 시차원의 정책 수요 조사를 위한 지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지표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지표로 나아감에 따라 ‘시민이 중심이 되는’ 인권행정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인권지표는 단순히 인권현황을 파악하는 통계가 아닌, 다양한 시민들의 인권관련 욕구를 반영하고 나아가 시민을 행복하게 하고 보살피는 시민 중심의 지표라고 볼 수 있다.

2) 도시의 인권현황 파악

인권지표는 크게 도시의 인권현황을 구체적인 통계치로 파악하는 정량 평가와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인권현황과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정성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수치와 주관적 의식을 복합적으로 알아봄으로써 인권지표는 보다 정확하고 생생한 지역의 인권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인권현황에 관한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인권의 다양한 영역 중 어떤 영역에 있어 가장 큰 욕구를 갖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권지표를 통한 도시의 인권현황 파악은 도시의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으며, 나아가 미래의 도시 인권 현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3) 도시 인권정책의 가이드라인과 지침

인권지표를 통해 도시의 인권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도시의 다양한 인권현황들 중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시민들의 주된 인권 욕구는 무엇인지, 자치구별 차이가 얼마나 나타나는 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도시의 전반적인 인권현황과 시민들의 주관적인 인권욕구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적합한 도시 인권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인권정책을 제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지표는 시의 인권행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목표를 설정해줌과 동시에 인권행정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4) 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 실천항목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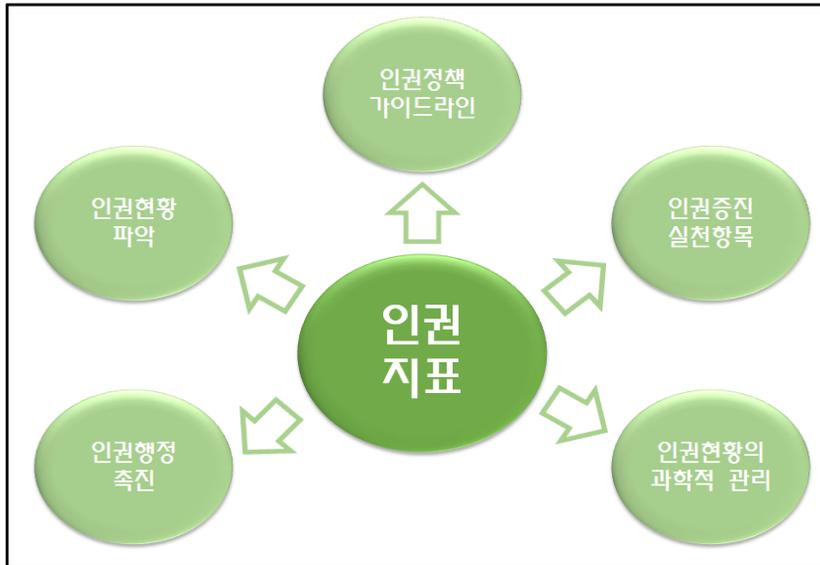
도시의 구체적인 인권현황을 나타내는 인권지표를 바탕으로 도시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인권증진 실천항목’을 설정할 수 있다. 인권증진 실천항목의 설정은 단순히 도시의 인권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권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민관의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 실천항목은 시민이 원하는 인권증진 정책 발굴 및 추진, 향후 도시의 인권 목표 설정과 이를 이룩하기 위한 정책 발굴 및 추진, 다양한 인권 분야 중 취약한 도시 인권 분야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추진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5) 과학적 시스템으로 행정에 기여

인권지표를 통해 도시의 인권상황을 수치화하여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상황의 수치화는 도시의 인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다.

인권지표를 바탕으로 도시 인권목표 설정, 정책평가, 모니터링 등 선순환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결국 인권지표를 통해 보다 인권관리의 보다 과학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 하며, 이는 도시의 인권행정 발전에 있어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2] 인권지표의 기능과 활용

3장

인권지표의 국내외 사례 동향

- 1절 국외 인권지표 관련 연구 및 사례
- 2절 국내 인권지표 관련 연구 및 사례
- 3절 시사점

3장 인권지표의 국내외 사례 동향

1절 국외 인권지표 관련 연구 및 사례

1948년 UN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이후 국제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국제사회의 인권상황을 어떻게 측정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인권 측정의 관심 속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대표적인 연구로는 랜드맨(landman, 2006)의 연구가 있다. 랜드맨(2006)은 국제사회에 체결된 다양한 협약을 바탕으로 국제인권법상 인정되는 인권 목록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랜드맨의 연구이외에 국제사회의 인권현황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개발도 나타났는데, 대표적으로 휴매너(Humana, 1992)의 ‘세계인권가이드(World Human Right Guide)’와 하스(Hass, 1994)의 인권지표가 있다.

또한 국제사회 내 인권상황의 현황과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인권지수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와 OECD에서 개발한 Better Life Initiative Index 등이 있다.

이외에도 국가차원의 인권지표가 아닌 도시차원에서의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도시 인권관련 주요 움직임으로는 1992년 채택된 ‘유럽도시선언’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외의 인권에 관한 다양한 연구 및 동향들 가운데 랜드맨, 휴매너, 하스의 연구와 함께 HDI, Better Life Initiative Index, 유럽 도시권리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1.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는 인권목록

국제인권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대표적인 연구로는 랜드맨(2004, 2006)의 연구가 있다. 랜드맨(2004)은 인권 측정을 크게 ① 실현해야 할 인권의 원칙은 무엇인가, ② 인권 원칙을 실현을 위한 인권 실천 또는 관행은 무엇인가, ③ 인권 정책이 갖고 오는 결과나 효과는 무엇인가와 같은 3가지 차원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러한 랜드맨(2004)의 인권 측정에 대한 접근 방법은 인권이 갖고 있는 기능에 초점을 맞춘 기능주의적 접근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랜드맨(2006)은 인권 교육과 인권 측정을 위해 인권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에 체결된 다양한 인권협약들을 바탕으로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는 인권 목록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랜드맨(2006)의 연구에서 정리한 국제인권법의 인권목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1] 국제인권법상 인정되는 인권목록

구분	내용	구분	내용
1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권리
3	생명권	4	자유권
5	노동에 있어 자유로운 휴식, 여가	6	평등하고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
7	노예제와 예속상태 금지	8	자기결정권
9	문화를 향유할 권리	10	고문 금지
11	법적 인격의 인정	12	법에서의 평등
13	법을 통한 심판과 구제	14	불편부당하며 독립적인 재판
15	자의적 체포나 구금, 추방 금지	16	무죄추정의 원칙
17	법의 소급적용 금지	18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
19	굶주림과 기아로부터의 자유	20	보건·의료의 권리
21	위급상황 시 피난처를 구할 권리	22	의무교육

구분	내용	구분	내용
23	소유권	24	자유 박탈 시 인도적 처우
25	개인, 가정, 통신의 자유	26	자유로운 거주이전
27	결혼과 가족구성의 자유와 평등	28	개인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한 결혼
29	가족의 보호와 지원	30	결혼생활 내 남녀의 평등
31	빛이나 채무를 근거로 한 구금금지	32	사적 의무 위배를 근거로 구금 금지
33	법에 의해서만 외국인 추방	34	소수의 문화 보호
35	전쟁 및 차별선동 금지	36	자유롭고 평등한 공공서비스 접근권
37	민주주의의 실현	38	사상, 양심, 종교 선택의 자유
39	생각과 의사표현의 자유	40	언론의 자유
41	집회의 자유	42	결사의 자유
43	강압적 통치에서의 자유	44	문화 및 학술활동에 참여
45	지적 소유권에 대한 보호	46	경제적 자기결정권
47	정치적 자기결정권	48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보장권
49	여성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 권리	50	자유롭게 노동할 권리
51	강제적인 노동의 금지	52	공정하고 쾌적한 노동조건
53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	54	장애인의 권리 보장
55	국적 보유권	56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57	성적 지향의 자유	58	인종차별적인 정책의 금지
59	사형제도의 금지	60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적·사회적 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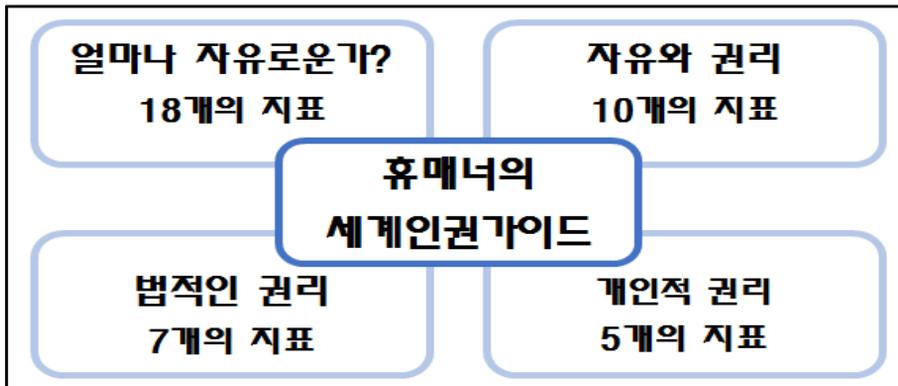
자료: Landman, Todd(2006). 『Studying Human Right』; 김제철 외(2011).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에서 재인용.

이처럼 랜드맨(2006)은 60개의 항목으로 국제인권법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앞서도 이야기 했듯이 인권은 ‘보편성’을 갖는 권리로 국가나 정치, 사상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랜드맨의 연구에서 제시된 국제인권법의 인권목록을 대전의 인권지표 선정에 있어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2. 휴매너의 ‘세계인권가이드’ 9)

휴매너는 인권을 “폭압적이고 억압적인 정부로부터 일반사람들, 소수민족, 소수집단과 인종을 보호하기 위해 수세기에 걸쳐 나타난 법과 관습, 실천들” 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그는 1984년에 유엔의 주요 조약들, 국제 앰네스터 보고서를 참고하여, 인권을 측정하기 위한 40개의 척도를 구성하였다. 휴매너는 자신이 개발한 척도를 ‘세계인권가이드’ 라 명명하였으며, 자신이 개발한 ‘세계인권가이드’ 를 바탕으로 측정한 조사 결과를 1983년, 1986년, 1992년 세 차례 발표하였다.

휴매너의 인권지표는 4개의 범주와 40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권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그의 인권지표의 4개 범주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3-1] 휴매너의 세계인권가이드

세계인권가이드의 각 범주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유로운 정도에서는 자유로운 국내외 여행의 권리, 평화롭게 연합하고 모일 권리, 인권 폭력 감시의 권리, 불법 사형이나 실종, 책임없는 구류 등이 존재한다. 즉 자유로운 정도는 한 국가의 자유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상황과 관련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9) Humana(1992), 정근식 외(2004)를 참고하여 작성함

두 번째로 자유와 권리를 살펴보면, 평화적인 정치적 반대, 여성에 대한 평등, 독립적 신문의 창간 및 발간, 법의 독립성 등이 있다. 즉 자유와 권리는 한 국가에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에 관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법적 권리는 국적박탈, 무죄추정, 법적도움의 자유로움, 수색 영장없이 개인의 집 수색 금지, 개인 재산의 임의적 탈취 등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즉 법적 권리는 한 국가가 법치국가로써 얼마나 법에 의한 민주적인 통치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권리는 결혼의 자유, 결혼 및 이혼에서의 성적 평등, 종교에서의 자유, 피임기구의 사용, 사적인 일에 관한 국가의 방해 금지 등이 있다. 즉 개인적 권리는 말 그대로 한 사회에서 개인이 얼마나 자유롭게 자신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계인권가이드의 범주별 세부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3-2] 휴매너의 ‘세계인권가이드’ 세부내용

1. 자유로운 정도
1) 자국 내에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가?
2) 자국 밖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가?
3) 평화롭게 연합하고 모일 수 있는가?
4) 제약이나 강제 없이 사상을 가르치고, 정보를 받을 수 있는가?
5) 인권 폭력을 감시하는가?
6) 자기 종족의 언어로 된 책이 출판되고, 교육을 하는가?
7) 노예제, 강제노동, 아동노동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8) 불법적인 살인이나 “실종”에서 자유로운가?
9) 국가에 의해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고문이나 구속, 형벌에서 자유로운가?
10) 강제 노역, 강제 징집에서 자유로운가?
11) 국가에 의한 사형이 나타나는가?
12) 체형(육체적 형벌)이 법정형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13) 법적 근거 없이 또는 불명확한 감금이 나타나는가?
14) 국가기구나 정당에 강제적으로 가입되는가?
15) 학교에서 특정 종교 및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가?
16) 예술작품을 통제하기 위한 국가 정책들이 존재하는가?
17) 출판에 대한 정치적 검열제도가 있는가?
18) 우편물의 검열, 전화도청 등이 나타나고 있는가?

2. 자유와 권리

- 19) 평화적으로 정치적 반대여사의 표명이 가능한가?
- 20) 보통선거, 비밀투표에 의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1) 여성이 정치적 법적으로 평등한가?
- 22) 여성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평등한가?
- 23) 국가 권력이나 자본에 있어 신문이 독립적인가?
- 24) 책 출판이 독립적인 환경에서 이뤄지고 있는가?
- 25) 국가 권력이나 자본에 있어 라디오나 텔레비전 매체가 독립적인가?
- 26) 법과 법정의 독립성이 지켜지고 있는가?
- 27) 노동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독립적인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가?
- 28) 소수민족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평등이 이뤄지고 있는가?

3. 법적 권리

- 29) 개인은 강압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가?
- 30)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가?
- 31) 개인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법률고문을 이용할 수 있는가?
- 32) 비밀이 지켜지는 상황 속에서 민간인에 대한 재판이 나타나는가?
- 33) 불필요한 제재나 구금 없이 판사나 법정에 신속하게 데려가는가?
- 34) 수색 영장 없는 가택수사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 35) 개인이나 집단의 재산을 임의적으로 몰수하는 것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4. 개인적 권리

- 36) 인종·종교와 관계 없이 시민으로서 자유로운 결혼이 가능한가?
- 37) 결혼 생활 및 이혼에 있어 남녀 간 평등이 지켜지는가?
- 38) 종교의 선택 및 신앙생활에 있어 강제나 억압이 나타나지 않는가?
- 39) 개인은 자유롭게 필요에 따라 피임약이나 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가?
- 40) 사적인 일(사생활, 동성애 등)이 국가에 의해 방해 받지 않는가?

자료: 정근식 외(2004). 『한국형 인권지표의 모색』을 참고하여 재작성

이러한 휴매너의 세계인권가이드는 총 두 단계에 걸쳐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을 측정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40개의 인권지표를 바탕으로 한 나라에 대한 인권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수집된 정보를 Yes/yes/no/No¹⁰⁾ 4개의 수준으로서 등급을 매긴다.

10) Yes는 자유, 인권, 각 조항이나 질문지의 척도에 대해 무조건적인 존중을 나타내며, yes는 자유, 권리, 각 조항이나 질문지의 척도에 대한 존중이 가끔 위반됨에도 만족할 만한 수준임을 나타내고, no는 자유, 권리와 같은 각 조항이나 질문지의 척도에 대한 폭력이 자주 행사됨을 의미하며, NO는 자유, 권리와 같은 각 조항이나 척도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폭력이 행사됨을 의미한다(정근식 외, 2004).

등급을 매긴 후 Yes는 3점, yes는 2점, no는 1점, No는 0점으로 해서 종합적인 점수를 계산한다. 전체 지표가 40개이기 때문에 만점은 120점이며, 120점은 100%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일괄적으로 점수를 매기지 않고, 각 문항에 가중치를 부과하여 한 나라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휴매너의 인권지표는 한 국가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국가 간 인권 수준의 비교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그가 개발한 인권지표는 국가 수준의 인권에 치중되어 있으며, 다양한 인권 중 정치적 권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한계가 나타난다(정근식 외, 2004).

3. 하스의 ‘인권지표’ 11)

하스(1994)는 마샬, 벤스, 도넬리와 하워드 등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나타난 인권의 정의 및 범주를 정리하고, 각 범주들 간에 어떠한 관계가 갖는지 살펴보았다. 하스는 인권범주들 간의 관계가 ① 단일차원성, ② 다차원성, ③ 위계, ④ 배타적 관계, ⑤ 곡선경향의 다섯 가지 유형 중 하나라는 가설을 세웠다. 각 유형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3] 하스의 인권 범주 간 관계의 다섯 가지 유형

구분	내용
단일차원성	- 시민·정치적 권리가 다른 경제·사회적 권리에 영향을 준다면 인권은 단일차원성으로 구성됨 - 다른 권리의 향상은 다른 권리 향상의 추진력이 될 수 있음
다차원성	- 시민·정치적 권리의 진척이 다른 권리에 효과가 없으면 인권은 다차원성으로 구성됨 - 다차원적 인권의 실현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개선이 필요
위계	- 몇몇 권리는 다른 권리보다 상위에 있음 - 상위 권리의 보장은 다른 하위 권리의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
배타적관계	- 증가된 부에 대한 평등한 부의 배분과 같이 몇 가지 권리의 개선은 다른 권리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
곡선경향	- 인권은 하나의 점근선상의 불확정한 조건아래서 발전함

자료: Hass(1994). 『Impoving Human Rights』; 정근식 외(2004). 『한국형 인권지표의 모색』에서 재인용

11) Hass(1994), 정근식 외(2004)을 참고하여 작성함

하스는 개별적 인권 간의 상호연관성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인권 개선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권 유형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인권 항목간의 차원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스는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인권지표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① 시민정치적 권리, ② 경제사회적 권리, ③ 경제적 발전과 평등, ④ 실질적 정치발전, ⑤ 냉전 ⑥ 문화적 변수들 총 6가지 범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각 변수들을 살펴보면 시민 정치적 권리는 1800년대 이후 독립기간, 경제적 자유, 출판의 독립 등 총 50개의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경제 사회적 권리는 경제적 자유, 1인당 등록 상표, 유아사망률, 출산율 등 총 91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경제적 발전과 평등은 1인당 GNP, 1인당 소유 라디오, 도시에서 사는 인구 비율 등 총 2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질적 정치의 발전은 국회의 정당 수, 내부 안전을 위한 예산 비율 등 총 21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냉전은 무기수출국가, 해외에 있는 부대 비율 등 총 7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적 변수들은 신교도 인구비율, 무슬림 인구비율, 암 사망률 등 총 9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하스의 인권지표의 항목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4] 하스의 인권지표의 구성

I. 시민·정치적 권리 (50개 지표)	
1. 1800년 이후 국가의 독립 기간	2. 민족주의자와 분리주의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3. 분리주의자의 운동 수	4. 임의적인 개인재산 몰수로부터의 자유
5. 경제적인 자유	6. 여성의 정치적·법적 평등
7. 기본권 침해 가능한 긴급헌법의 정치	8. 정치적인 목적의 사형집행 수
9.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살인 또는 실종에 관한 보고 수	10. 국가에 의해 나타나는 사형집행에서의 자유
11. 신체적 차별에 관한 법정 선고로부터의 자유	12. 폭압적인 국가에 의한 고문 또는 강압에서의 자유

13. 국적 박탈에서의 자유	14. 노예, 아동노동 금지
15. 의무적인 노동허가 혹은 노동력 강제 징집의 금지	16. 의무적 군대 복무로부터의 자유
17. 무고한 사람에 대한 자의적인 혹은 강압적 구금에서의 자유	18. 국내를 여행할 자유
19. 국외를 여행할 자유	20. 금지된 해외여행 국가의 수
21. 시민적·공공적 재판을 받을 권리	22. 정부나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법원
23. 무죄추정의 원리	24. 신속한 공소 및 재판 받을 권리
25. 필요시 법적인 조언 및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변호인 선택할 권리	26. 영장 없는 가택수사에서의 자유
27. 우편물 검열에서의 자유	28. 동의한 성인들 사이에서 자유로운 동성애 권리
29. 수용된 정치범 수	30. 종교 선택에서의 자유
31. 학교에서 종교, 국가 이데올로기를 강제나 강요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32. 사상을 가르치고 정보를 획득하는 것의 자유
33. 정치적 언론 검열로부터의 자유	34. 출판의 독립성
35. 라디오와 텔레비전, 통신의 독립성	36. 신문의 독립성
37. 인권 침해를 감시할 자유	38. 국가의 계획적이고 강압적인 예술 통제에서의 자유
39. 평화로운 목적의 결사와 회합의 자유	40. 독립적인 노조 결성 및 가입할 자유
41. 국가기구나 정당에 강제적으로 가입하지 않을 자유	42. 서로 다른 인종과 종교 사이의 결혼, 신고 결혼할 자유
43. 결혼과 이혼 과정에 있어서의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권리	44. 복수 정당, 비밀·보통 선거의 실현
45. 적법한 사유 없이 개인의 투표권 제한 금지	46. 최근의 총선 실시 수 및 경과 일
47. 평화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반대 의사를 말 할 권리	48. 소수자에 대한 정치적 차별의 금지
49. 정치에서의 여성의 중요성	50. 소수 언어로의 출판 및 교육할 권리 보장

II. 경제적·사회적 권리 (91개 지표)

1. 경제적 자유	2. 1인당 등록된 상표의 수
3. 무역에서 있어서의 향상된 권리	4. 수출품 구매력 향상을 위한 보장
5. 경제적 차별로 고통 겪는 인구 비율	6. 소수자에 관한 가혹한 경제적 차별 금지
7. 소수자에 관한 사회적·경제적 영역에서의 차별 금지	8. 여성에 관한 사회적·경제적 영역에서의 차별 금지
9. 농노, 노예, 아동노동의 금지	10. 의무적인 노동허가 혹은 노동력 강제 징집의 금지
11. 실업률	12. 평균적인 비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주급 비율
13. 1인당 소비자의 지출액	14.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 비율
15.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실직 노동자 비율	16. 업무상 재해로 치명적 부상을 당한 노동자 비율
17. 비 농업영역 종사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	18. 보장된 공휴일의 수
19. 독립적인 노조 결성 및 가입 자유	20.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의 비율
21. 노조 간 연대할 수 있는 권리	22. 노조 운영에 있어서의 자유
23. 고용인력 대비 노동쟁의(파업) 비율	24. 고용인력 대비 노동쟁의(파업) 참가자 비율
25. 파업으로 발생한 업무 손실일 비율	26. 가족 수당 계획이 보장하고 있는 범위
27. 유족연금과 노인연금의 범위	28. 환자 및 임산부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
29. 실업보험의 보장 범위	30. 산업재해 프로그램의 범위
31. 사회 안전 및 복지를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비율	32. 1~4세 남아(영유아) 사망률
33. 1~4세 남아 대비 여아 사망률	34.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에 면역된 유아 비율
35. 서로 다른 인종과 종교 사이에 자유로운 결혼 신고 및 결혼할 권리	36. 1인당 칼로리 섭취량
37. 1인당 단백질 섭취량	38. 1인당 면직물 생산량
39. 1인당 비 고무 재질의 신발류 생산량	40.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가구 비율

41.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의 비율	42. 주택에 투입된 국내 총생산량 비율
43. 주택 분야의 중앙정부 예산 비율	44. 농업 분야의 중앙정부 예산 비율
45. GDP 중 공적개발원조(ODA) 수원액 비중	46. 정상출산(만기) 태아 사망률
47. 영아(1~4세) 사망률	48. 남아 사망률 대비 여아 사망률
49. 전염성 질병으로 발생한 사망률(남성)	50. 보건 분야의 중앙정부 예산 비율
51. 1인당 의사 수	52. 1인당 병상 수
53. 출산 시 적절한 보살핌을 받는 비율	54. 출생 후 사망까지의 기대수명
55. 보건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의 비율	56. 의무 교육 기간(전체)
57. 학령기에 도달한 아동이 초등학교에 등록한 비율	58. 학령기에 도달한 여아가 초등학교에 등록한 비율
59. 학령기에 도달한 학생이 중·고등학교에 등록한 비율	60. 직업학교에 대한 중앙정부의 교육 예산 비율
61. 고등교육에서 이공계를 전공한 학생 비율	62. 대학에 입학한 성인 비율
63. 대학에 입학한 여성 비율	64.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중앙정부 교육 예산 비율
65. 교사 급여 지출을 위한 중앙정부 교육 예산 비율	66. 교사 대비 학령기 인구
67. 문해율	68. 여성 문해율
69. 교육 분야에서 중앙정부의 예산 비율	70. 1인당 영화관의 객석 수
71. 1인당 영화관람을 하는 회수	72. 1인당 박물관을 관람하는 회수
73. GNP 대비 국립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장서 수	74. 전체 인구 중 공립도서관 이용자로 등록한 비율
75. 1인당 책 출판량	76. 출판된 책 중 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율
77. 학교, 대학 등의 등록학생을 위해 출판된 교과서의 비율	78. 출판된 책 중 번역서가 차지하는 비율
79. 1인당 번역서 수	80. 1인당 장편 영화가 제작되는 편수

81. 1인당 수입 영화의 편수	82. 제작 장편 영화의 제작 대비 수입 장편영화의 비율
83. 1인당 신청한 산업 디자인의 수	84. 1인당 신청되어진 특허의 수
85. 임신 초기에 낙태할 수 있는 권리	86. 자유롭게 피임할 수 있는 권리
87. GNP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88.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중앙정부 예산의 지출 비율
89.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정부정책으로 인한 예술 활동 통제 금지	90. 국내 대학생 중 해외 유학생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91. 전체 GDP에 대비 진행되고 있는 해외 경제원조의 규모	

III. 경제적 발전과 평등(20개 지표)

1. 1인당 GNP	2. 1인당 성장률에 대한 GNP
3.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력 비율	4. 1인당 에너지 소비
5. 도시에서 사는 인구비율	6. 1인당 신문배포 부수
7. 1인당 소유 라디오	8. 1인당 소유전화
9. 1인당 소유 텔레비전	10. GDP 중 투자
11. GNP에서 수출과 수입의 달러가치	12. 최대 수출대상국과의 무역비율
13. 최대 수입대상국과의 무역 비율	14. 식량 수입 의존도
15. 수입 불평등	16. 1인당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소비지출
17. 1인당 보건에 대한 중앙정부의 소비지출	18. 1인당 복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소비지출
19. 직접세 비율	20. 물가상승비율

IV. 실질적 정치발전 (20개 지표)

1. 투표에 등록된 성인들/투표자 추정치	2. 국회의 정당수
3. 집권당과 집권연합이 점유하는 좌석 비율	4. GNP에서 정부 세입
5. 190년이래 쿠데타/독립기간	6. 군부지배 정부
7. 1960년이래 군부 통제기간/독립기간	8. 시민에 대한 공식적 탄압
9. 1960년이래 내란기간/독립기간	10. 국내 탄압에 의한 사망률

11. 1960년이래 국제전 기간/독립기간	12. 국외 분쟁으로 인한 사망률
13. 무장군인의 인구 비율	14. GNP 중 국방비
15. GNP 중 무기 수입	16. 소수 정치적 불만의 정도
17. 소수 경제적 불만의 정도	18. 소수 사회적 불만의 정도
19. 테러사건 횟수	20. 내부안전을 위한 예산 비율

V. 냉전 (7개 지표)	
1. 무기 수출 국가(예/아니오)	2. 서구무기 수입/모든 무기 수입
3. GNP에서 미국 민간 원조	4. GNP에서 미국 군사원조
5. 해외에 있는 부대 비율	6. 국내의 군부대 중 외국 군부대의 비율
7. 국내 전체군부대 중 서방군부대 비율	

VI. 문화적 변수들 (9개 지표)	
1. 과거 영국 식민지	2. 신교도 인구 비율
3. 로마카톨릭 인구 비율	4. 무슬림 인구 비율
5. 민족 언어적 이질성 지수	6. 암 사망률(남자)
7. 심장 질환 사망률 (남자)	8. 자살율 (남자)
9. 의회에서의 진보 정당의 비율	

자료: Hass(1994). 『Improving Human Rights』; 정근식 외(2004). 『한국형 인권지표의 모색』에서 재인용

이러한 하스의 인권지표는 인권지표가 단순히 단일한 차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인권은 상호관계성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권 지표 간 관계 파악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앞서 살펴본 휴매너의 인권지표가 사회·정치적 인권에 치중이 되어 있던 것에 반해 하스의 인권지표는 정치적인 측면 이외에 문화적인 영역과 생활, 보건·복지 분야의 영역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스의 인권지표 또한 앞서 살펴본 휴매너의 인권지표와 마찬가지로 객관적 지표로만 이루어 졌기 때문에 주관적 인권의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4.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HDI)¹²⁾

유엔개발계획에서는 한 국가의 개발 수준을 측정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개발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 설정을 위한 논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결과 1994년부터 UNDP에서는 개별 나라의 인간개발지수(HDI)를 공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개발지수의 철학적 토대는 바로 인간의 ‘역량(capability)’에 있다. 여기서 역량이란 자신의 추구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인지하는 상태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인간개발지수는 인간 행복에 있어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인간 개발지수는 단순히 어떠한 것의 소유를 떠나, 인간이 어떠한 것을 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지가 인간의 행복한 삶과 인간 개발에 있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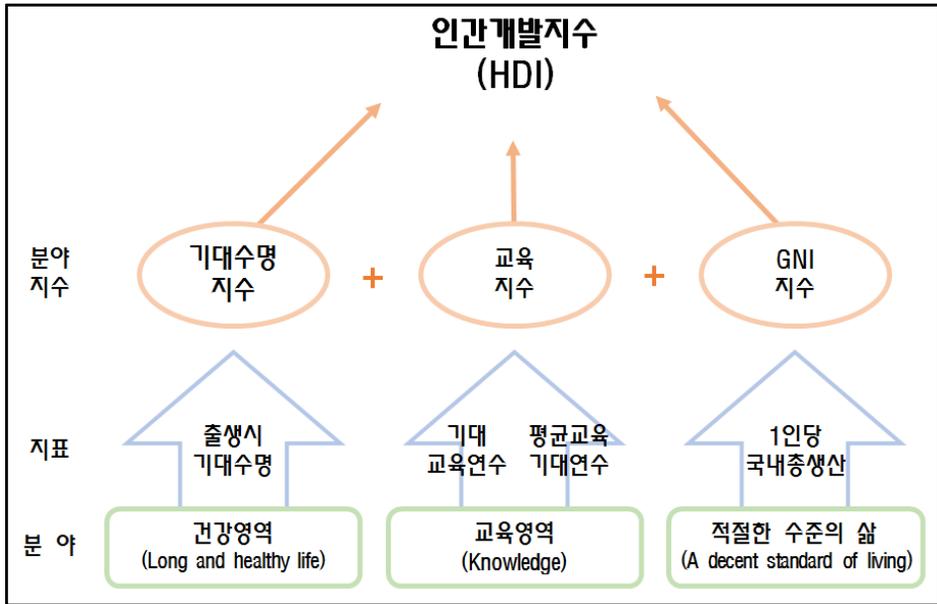
인간개발지수는 크게 ① 건강영역(Long and healthy life), ② 교육영역(Knowledge), ③ 적절한 수준의 삶의 영역(A decent standard of living)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3가지 영역에는 각각의 하위 지표가 존재하는데, 우선 건강영역은 ‘출생 시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을 통해 측정한다. 또한 교육영역은 ‘기대 교육연수(Expected years of schooling)’ 과 ‘평균 교육 기대년수(Mean years of Shooling)’으로 구성되며, 적절한 수준의 삶의 영역은 1인당 국내 총생산(GNI)로 측정된다.

이렇게 측정된 인간개발지수가 갖는 특징 중 하나는 측정된 수치들은 단순히 개별 지표의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적인 가공을 거쳐 HDI라는 종합지수로 구축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인간개발지수는 경제적 영역 이외에 교육과 보건과 같은 경제 외적인 영역이 포함되어 있어 한 국가의 종합적 발전 수준을 측정하는데 용이하며, 나아가 국제사회 전반의 발전수준을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만 인간개발지수에서는 주거, 환경 등과 같은 다양한 지표들이 누락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12) Human Development Report 2016, HDI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함

지금까지 살펴본 인간개발지수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3-2] 인간개발지수(HDI)

5. OECD의 Better Life Initiative¹³⁾

OECD는 2011년에 창립 50주년을 맞아 경제적 지표(GDP)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사회·문화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의 측정을 어떻게 할지에 관한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인간적 가치 측정을 위해 OECD에서는 ‘OECD Better Life Initiative’ 를 시작하였으며, 2년 마다 국제사회 각 국가의 삶의 수준을 파악한 ‘더 나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 의 내용이 담긴 ‘How’ s Life’ 를 발간하였다.

앞서 살펴본 국제사회 지표들이 주로 객관적인 자료만을 활용한 것에 반해, ‘더 나은 삶의 지수’ 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

13) 주오이시티대포부 홈페이지, OECD(2105)을 참고하여 작성함

여 자신들이 생각 하는 ‘더 나은 삶’ 에 응답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객관적 지표와 함께 시민들의 견해를 담을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은 삶의 지수’ 의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물질적인 삶의 조건과 삶의 질 2개의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질적 삶의 조건의 경우 소득, 고용, 주거의 하위 영역이 존재하며, 각각의 하위영역은 다시 몇 가지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그리고 삶의 질은 일과 삶의 균형, 건강상태, 교육, 공동체, 시민참여, 환경, 안전, 삶의 만족도 총 8개의 영역이 존재하며, 각각의 하위영역은 앞서 살펴본 물질적인 삶과 비슷하게 몇 가지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더 나은 삶의 지수’ 의 보다 자세한 구성 및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5] ‘더 나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 의 구성 및 세부지표

I. 물질적 삶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가계 금융자산, 가계 순 가처분 소득 ○ 고용: 개인소득, 고용률, 직업안정성, 실업률(장기) ○ 주거: 1인당 방 개수, 기본 위생설비 가구, 주거 관련 지출금액
II. 삶의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상태: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건강상태, 기대수명 ○ 일과 삶의 균형: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사용한 시간, 장시간 근로자 비율 ○ 교육: 기대되는 교육 기간, 학생들의 역량(PISA 점수), 교육성취 ○ 시민참여: 투표율, 규칙 제정에의 참여 ○ 공동체: 지각하고 있는 사회체계망의 질 ○ 안전: 야간 보행시 안전한 정도, 살인률(10만명 당) ○ 삶의 만족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0~10점) ○ 환경: 미세 먼지 농도와 같은 대기 오염, 수질 안전성

자료: OECD(2016), 『2015 How's Life?』 ; 박노동(2016), 『대전형 행복지수 구축 방안』 에서 재인용

6. ‘유럽도시선언’ 과 ‘도시권리’ 14)

유럽에서는 1980년부터 1982년까지 도시의 르네상스를 위한 일련의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르네상스를 위한 유럽캠페인을 근거로 하여, 유럽도시헌장이 나타났다. ‘유럽도시헌장’ 은 ① 물질적인 도시 환경의 개선, ② 거주공간의 재활 ③ 도시에서의 사회 및 문화적 기회 창출, ④ 공동체의 발달과 대중 참여라는 영역에 집중하여, ‘도시에서 더 나은 삶(A better life in towns)’ 의 목적을 이룩하고자 하였다(유럽도시헌장, 1986).

이와 같은 유럽도시헌장을 기반으로 하여 1992년 유럽상임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유럽도시 선언’ 이 채택되었다. 유럽도시선언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도시의 기본적 권리를 20개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리고 도시의 기본적 권리란 유럽 일반 시민들이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임을 명시하였다.

유럽도시 선언에서 명시한 도시 권리의 20개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6] 유럽도시 선언에서 나타난 도시 권리

항목	내용
1. 안전	-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안전하고 안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며, 범죄로부터 자유로워야 함
2.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 생활환경에 있어 대기오염, 소음공해, 식수지하수의 오염과 같은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유롭고 보호된 자연과 자원에의 접근이 가능해야 함
3. 고용	- 평등한 노동환경의 조성과 함께 적절한 고용의 가능해야 하며, 성취의 결과물은 개인적 결정권에 따라 배분
4. 주거	-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수요에 맞게 적절한 공급이 가능해야 하며, 건강한 거주 환경, 사생활의 보호가 보장되어야 함

14) 민주인권포털. “유럽도시헌장”, “유럽도시선언”, “도시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유럽헌장”. 검색일 2017.08.17. “<http://www.gjhr.go.kr/sub/sub.php?subKey=0510110000>”

항목	내용
5. 이동성	- 도시를 이동하는 데 있어 신체적, 물질적 조건으로 인해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되며, 대중교통,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 등의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6. 건강	-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에 있어 언제라도 자유롭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의 조성
7. 여가생활	- 물질적, 신체적 제약 없이 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과 여가시설을 갖춰야 함
8. 문화	- 다양한 문화적 창조활동과 문화적 향유를 위한 환경의 조성
9. 다문화	- 인종, 종교 등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도시공동체 속에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10. 역사적 건축물과 자연환경	- 오랜 역사와 고품격의 건축물을 복원·유지시켜 나아가고, 도시민들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어야 함
11. 기능 간 조화	- 도시의 경제·문화·사회 등 다양한 기능 간 조화가 유지되며, 노동과 여가, 사회적 활동이 밀접하게 연관
12. 참여	- 시민들은 도시정책, 시민활동, 선거 등 다양한 민주적인 활동에 있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함
13. 경제적 발전	- 도시는 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위한 책임이 있음
14. 지속적인 발전	- 도시는 단순히 경제성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계획해야 함
15. 서비스 및 재화	- 지방정부, 사적영역에서는 시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영역에 있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16. 천연자원	-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시는 보다 효율적이고 평등한 방법으로 도시의 천연 자원을 활용하고 배분함
17. 개인적 성취	- 개인이 자유롭게 능력개발 및 성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하고, 도시는 개인이 사회·문화정신과 같은 전 영역에 있어서 조화로운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보장
18. 지방도시 간 연대 및 협력	- 지방도시 간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연대와 협력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19. 재정적 지원 및 구조	- 지방정부는 도시권리의 행사 및 실현을 위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재정자원을 마련해야함
20. 평등	- 성별, 연령, 출신, 종교, 신념 등에 관계없이 개인은 도시생활의 전 영역에 있어 평등해야 하며, 모든 도시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함

자료: 유럽도시선언(1992. 3. 18)

그동안 국제사회의 인권협약들이 한 국가 수준의 권리를 이야기 한 것에 반해, 유럽도시선언에서 나타난 도시권리는 도시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유럽도시선언의 경우 개별 도시차원에서의 도시권리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도시 차원을 넘어선 다양한 도시들의 도시권을 공동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여러 도시들의 도시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포적인 움직임으로는 1998년에 발의 되고, 2000년에 최종 확정된 ‘도시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유럽헌장’이 있다. 도시 인권보호를 위한 유럽헌장은 ① 도시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 ② 도시에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③ 민주적 지방 행정과 관련 권리, ④ 도시에서 인권의 실행을 위한 기제 등이 명시되어 있다(도시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유럽헌장, 2000. 5. 18).

2절 국내 인권지표 관련 연구 및 사례

우리나라의 인권지표와 관련된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87년 국부독재의 이후 인권 상황의 지속적 개선과 관심의 증가로 인해 2000년대 들어와서는 ‘한국형 인권지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나타났다.

한국형 인권지표 구성을 위한 탐색적 연구는 정근식 외(2004)의 연구가 있다. 정근식 외(2004)는 그동안 국제 사회에서 나타난 인권지표 관련 연구를 정리하고, 한국형 인권지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방향성을 위한 탐색적 연구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인권항목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정근식 외(2004)의 탐색적 연구가 나타난 이후로는 한국 사회의 구체적인 인권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개발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소득보장, 건강, 주거, 노동, 교육 등 5개의 영역을 통해 ‘사회권’을 살펴본 문진영 외(2008)의 연구, 대학 내 인권을 측정하기 위해 ‘대학인권지표’를 구성한 강수택 외(2009)의 연구가 있다.

2010년에 들어서면서는 국가차원에서의 인권지표 개발과 지역차원에서의 인권지표 개발이 함께 나타났다. 국가차원에서의 인권지표 개발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1년 진행된 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가 있다(구정우 외, 2011). 그리고 지역차원에서의 인권지표 개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광주 인권지표 연구가 있다(김재철 외, 2011).

이러한 인권지표에 관한 연구이외에도 유사 연구로는 시민들의 행복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행복지수 구성에 관한 연구가 있다(남주하 외, 2013; 김승권 외, 2008 ; 박노동 외, 2016).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권관련 연구 및 유사 연구들 중 정근식 외(2004), 강수택 외(2009), 구정우 외(2011), 김재철 외(2011), 박노동 외(2016)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1. 한국형 인권지표의 모색¹⁵⁾

정근식 외(2004)는 인권을 “어떤 천부적인 것이나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역사의 소산으로서 역사의 진전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대, 한 사회의 인권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의 구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정근식 외(2004)은 국제사회 내 인권환경의 변화와 함께 인권지표 구성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형 인권지표는 어떻게 구성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정근식 외(2004)의 연구에서는 인권은 단순히 어느 한 차원으로 환원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지표는 담론의 차원, 의식의 차원, 행위의 차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정근식 외(2004)는 이러한 세차원의 종합적인 구성을 위해서는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제시한 ‘불평등의 시각’, ‘결핍의 시각’, ‘평균의 시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로 정근식 외(2004)는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① 시민적, 정치적 권리, ② 경제적 사회적 권리, ③ 문화적 권리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인권지표는 이러한 구체적인 인권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가 인권지표에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본 지표들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7] 정근식 외(2004)의 한국형 인권지표

I. 시민적·정치적 권리
1. 생명권, 2. 고문금지, 3. 노예금지, 4. 인간의 자유와 안전, 5. 재판받을 권리, 6. 거주이전의 자유와 자의적으로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 7. 정치적 자유
8. 결혼, 가족생활, 아이, 사생활을 가질 권리, 9. 평등권
10. 기타 인간의 사회 생활 및 정치적 활동을 위한 모든 권리

15) 정근식 외(2004)를 참고하여 작성함

II. 경제적 사회적 권리

1. 적절한 생활수준(식량, 주거, 보호 등)을 향유 할 권리, 2. 사회적 안전권,
3. 일과 그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4. 건강권, 5. 발전권

III. 문화적 권리

1. 문화적 정체성의 권리, 2.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3. 교육 받을 권리,
4. 창조성에 대한 권리, 5. 과학적·문화적·예술적 생산에 관한 저작권,
6. 고학의 발전과 적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향유할 권리,
7. 문화적 유산을 향유할 권리, 8. 국제적인 문화적 협력의 권리,
9.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

자료: 정근식 외(2004), 『한국형 인권지표의 모색』의 내용을 정리하여 재작성.

이러한 정근식 외(2004)의 연구는 구체적인 한국형 인권지표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한국형 인권지표를 구성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정근식 외(2004)가 주장했던 것처럼 오늘날 한 사회의 인권지표는 그 사회의 인권 환경과 수준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해야만 한다.

2. 대학 인권지표¹⁶⁾

국가인권위에서는 오늘날 한국 대학의 인권수준을 파악하고, 나아가 대학의 인권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대학 인권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대학 인권지표는 크게 ① 대학 구성원의 인권(학생, 교수, 직원 및 조교), ② 대학 제도 및 운영과 인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총 3 단계에 걸쳐 인권지표의 선정이 나타났는데, 1단계에서는 대학 인권지표 항목으로 총 311개의 지표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2단계와 3단계를 거쳐 인권

16) 강수택 외(2009)를 참고하여 작성함

영역별로 대표성, 중요성, 시급성,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30개의 지표항목이 구성되었다(강수택 외, 2009).

이렇게 최종적으로 구성된 대학 인권지표의 30개 지표항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8] 대학 인권지표의 지표항목

I. 대학의 제도 및 운영과 관련된 지표항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 내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한 독립 규정 및 지침의 존재 여부 2. 대학 내 인권 하위기구(인권부서, 인권위원회 등)의 설치 여부 3. 대학 내 공식적인 인권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의 설치 여부 4. 대학 차원의 인권증진을 위한 계획(안) 존재 여부 5. 교직원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의 대학 내 설치 여부 6. 인권분야를 전공한 교수의 수
II. 학생의 인권에 관련된 지표항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선발 및 학생활동 규정에 있어 차별 금지에 관한 다양한 내용(인종, 국적, 지역, 연령, 신체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 2. 학교생활 내 학생이 폭력/성폭력을 경험할 경우, 이를 신고할 기구와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갖춰져 있는지 여부 3. 학교 내 CCTV의 설치 대수 4. 학생 입학/졸업 요건에 특정한 종교 가입이나 활동 정도가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5. 학교 규정에 의해 강압적으로 학생들의 정당가입과 같은 정치단체 참여나 활동이 제한/금지되어 있는지 여부 6. 학교 규정에 의해 학생의 동아리 설립 및 활동이 제한/금지되어 있는지 여부 7. 대학평의회(혹은 이에 상응하는 대학기구)의 전체 구성원 중 학생의 비율 8. 학생 징계 시 절차상 피의자 소명 및 재심 요청의 기회가 존재하는지 여부 9. 인권 및 다문화에 관한 강좌의 개설 여부 10. 근로학생의 임금지급에 있어 학교가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하거나, 근로 임금을 지체하여 지급하는지 여부

Ⅲ. 교수 인권에 관련된 지표항목

1. 전체 교수 중에서 여교수가 차지하는 비율
2. 비판적 혹은 진보적 성향의 교수, 특정한 지역이나 학교 출신의 교수, 특정성별 또는 인종의 교수, 장애인 교수에 대한 언어/신체 폭력을 가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
3. 교수가 대학당국 또는 재단을 대상으로 비판적 발언과 집단행동을 했을 때, 승진누락, 중징계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은 사례 여부
4. 교수의 징계절차에 있어 이의신청 또는 구제 제도의 존재 여부
5. 교수 업적평가의 총 배점 중 연구, 교육, 학생지도와 같은 업무 관련 내용이 아닌 다른 항목의 배점이 차지하는 비율
6. 시간강사에게 시간당 지불하는 강의료 수준
7. 시간강사에 대한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의 보장 여부

Ⅳ. 일반직원 및 조교 인권에 관련된 지표항목

1. 일반직원과 조교의 채용, 직무배치, 보수, 승진, 근무기간 등에 있어서 성별, 출신지역, 국적에 따라 차별이 존재하는 지 여부
2. 일반직원과 조교가 학교관계자(동료, 재단사람, 교수), 또는 학생과의 사이에서 언어/신체적 폭력에 의해 문제를 경험한적 있었는지 여부
3. 일반직원과 조교에게 억압된 특정한 사상의 강조, 특정한 종교로의 개종 또는 특정한 종교 활동에의 참여 강요 등이 있었는지 여부
4. 대학평의회(또는 이에 상응한 대학기구)에 직원 및 조교가 제도적으로 참여 가능 여부
5. 일반직원과 전업조교가 노동조합 결성이나 참여가 가능한 여부
6. 일반직원과 조교의 업무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직업훈련 등을 담당하는 조직의 개설 여부
7. 일반직원과 조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 대상자가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변호할 기회가 존재하고, 징계 및 처벌 결과에 있어 징계대상자가 이의신청 또는 구제 제도가 있는지 여부

자료: 강수택 외(2009). 『대학 인권지표 개발 연구』

이처럼 대학 인권지표는 대학 내 다양한 인권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단순히 행정적인 기준에 의한 대학 평가만이 아니라 대학 내 인권 수준을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 인권 수준의 평가를 통해 대학 내 인권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질 높은 대학 교육을 실현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학 인권지표는 대전의 인권지표 설정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대전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대학 및 대학생의 수가 많은 편이다.¹⁷⁾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인권은 도시 인권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강수택 외(2009)가 개발한 대학 인권지표를 활용하여, 대전 지역대학의 인권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3. 국가 인권지수¹⁸⁾

국가인권위에서는 국가의 인권수준을 파악하고, 나아가 국가의 인권문화 증진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 인권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국가 인권지수는 주관적 인권지수와 객관적 인권지수로 구성되어 있다. 주관적 인권지수의 경우 조직 내부자의 평가 영역과 지표와 조직 외부자의 평가 영역과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객관적 지수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각 국가 기관에서 관리하는 인권지표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내부자 평가의 영역과 지표는 인권의식 4문항, 조직의 인권보호 4문항, 인권차별 10문항, 인권침해 16문항, 인권침해 시 해결 기제 3문항, 인권 교육 5문항, 리더십 3문항, 인권 친화적 서비스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9] 국가 인권지수(주관적): 내부자 평가의 영역과 지표

I. 인권의식(4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의식과 인지(4문항) - 인권인지(국내), 인권인지(국외), 국내의 인권존중, 인권침해 인지

17) 대전에는 총 21개의 대학교(전문대학, 일반대학, 대학원 대학, 사이버대학 포함)가 설립되어 있으며, 이는 전국 광역시도 중 부산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수치이다(대학 알리미 홈페이지, 검색일 2017. 08.17).

18) 구정우 외(2011)를 참고하여 작성함

II. 조직의 인권보호(4문항)

- 조직의 인권보호(2문항)
 - 조직구성원 인권보호, 타조직과의 비교
- 조직 내 인권침해(2문항)
 - 조직 내 인권침해유무, 조직 내 인권침해 발생 관계

III. 인권차별(10문항)

- 평등권(10문항)
 - 출신학교에 따라, 성별, 근무고과에서, 공무원 노조 여부, 임용유형에 따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입직 기수에 따라, 외모에 따라, 연령에 따라, 지역에 따라

IV. 인권침해(16문항)

- 자유권(7문항)
 - 의사표현 무시, 상사의 의견묵살, 문화활동 제한,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제한,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통신(서신왕래)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침해
- 사생활보호권(3문항)
 - CCTV를 통한 감시 유무, CCTV를 통한 감시 평가, 개인정보 유출
- 평등, 인격, 노동, 안정 등 사회적 권리(6개 문항)
 - 진급승진의 차별, 상사로부터의 언어폭력, 상사로부터의 부당한 요구, 억울한(불공정한) 처벌, 성희롱 피해, 휴일의 미보장

V. 인권침해 시 구제제도(3문항)

- 법적 방어권(3문항)
 - 구제제도 및 절차 유무, 구제제도의 공정성, 인권부서의 주체

VI. 인권교육(5문항)

- 교육권(5문항)
 - 인권교육의 필요성, 인권교육 유무, 인권교육의 유용성, 인권교육의 충실성, 인권교육과 인권의식의 관련성

VII. 리더십(3문항)

- 리더십(3문항)
 - 부서장의 인권신장 동기부여, 부서장의 제도개선 노력, 부서장 인권신장 노력 평가

VIII. 인권 배태적 서비스(3문항)
○ 서비스의 배태성(2문항) - 인권친화적 서비스, 국민필요정보제공의 적극성
○ 소수자의 인권(1문항)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자료: 구정우 외(2011). 『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두 번째로 외부방문자 평가의 영역과 지표는 인권의식 4문항, 조직의 인권보호 4문항, 인권차별 10문항, 인권침해 12문항, 리더십 3문항, 인권친화적 서비스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10] 국가 인권지수(주관적): 외부방문자 평가의 영역과 지표

I. 인권의식(4문항)
○ 인권의식과 인지(4문항) - 인권인지(국내), 인권인지(국외), 국내의 인권존중, 인권침해 인지
II. 조직의 인권보호(4문항)
○ 조직의 인권보호(4문항) - 방문조직 공무원의 인권신장 노력, 방문조직의 인권문제의 심각성, 1년 전 상황과 비교, 다른 조직과 비교
III. 공무원으로부터의 차별(9문항)
○ 조직의 인권보호(9문항) - 직위나 직급에 따라, 성별에 따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노조원 여부에 따라, 외모에 따라, 연령으로 인하여, 외국인이기에, 특정단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특정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IV. 인권침해 경험(12문항)
○ 사생활 보호권(3문항) - CCTV를 통한 감시 유무, CCTV를 통한 감시 평가, 업무관련 개인정보 공개
○ 평등권(9문항) - 방문조건이 까다로움, 공무원에게 의견전달 목살, 업무처리의 지연, 업무처리의 불투명성, 업무처리의 불공정함, 공무원으로부터 불친절한 대우, 공무원의 강압적 태도, 공무원으로부터의 과도한 요구, 해당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처우

V. 리더십(3문항)
○ 리더십(3문항) - 부서장의 인권신장 동기부여, 부서장의 제도개선 노력, 부서장 인권신장 노력 평가

VI. 인권 배태적 서비스(3문항)
○ 서비스의 배태성(2문항) - 인권친화적 서비스, 국민필요정보제공의 적극성
○ 소수자의 인권(1문항)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자료: 구정우 외(2011). 『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마지막으로 객관적 인권지수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7개 국가기관의 인권 업무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각 국가기관별 객관적 인권지표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11] 국가 인권지수(객관적): 국가기관별 인권지표

1. 기획재정부
- 소득분배 개선, 취업 취약계층 지원 강화, 인권직접 기관에 인권관련 예산 배분, 해외 인권, 개발 원조 제공, 적절한 생활기준 확보
2. 지식경제부
- 중앙·지방간 경제격차 완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고양,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국민기초 생활보장, 해외 인권
3. 농림수산식품부
- 농업 부분 안정화, 농어업인 생존권 보장, 식량권 보장
4. 문화체육관광부
- 예능·예술인인권보호, 일반시민 문화권 보장, 소외계층 문화 복지 확대, 저작권 보호
5. 국토해양부
- 지역균형발전 촉진, 주거권 보장(취약계층 포함),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6. 교육과학기술부
- 학생인권 보장, 학습권 보장, 인권교육

7.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대, 건강권 보장, 보육정책 개선, 소수자 복지 확대

8. 고용노동부

- 일할 권리 보장, 취약계층 고용평등 달성, 근로기준의 인권친화성, 노사 관계의 인권친화성, 산업재해 방지

9. 여성가족부

- 양성평등 촉진, 성폭력 및 가정폭력 완화, 가족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 추진

10. 행정안전부

- 공무원 인권 보장, 경찰 및 전·의경 인권 보장, 시민적 자유 보장, 복지 공무원 확대, 개인정보보호 및 격차해소, 정보권 보장

11. 외교통상부

- 재외국민 생존권 보장, 북한 인권 보호, 국제 인권 보호, UN 인권기구 참여 확대, 인권에 기반 한 개발

12.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납북자 및 국군포로 인권보호, 남한 장기수 인권 보호, 남북 긴장 완화, 인도적 대북지원 확대, 남북 간 이동권 보장, 이전의 자유 보장

13. 국방부

- 군대 내 인권보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 보장, 해외인권신장

14. 법무부

- 피의자 인권보호,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보호, 국가보안법 선별 적용, 인권교육 강화, 법률구조, 외국인인권보호

15. 환경부

- 환경지표 개선, 환경보전 (대기, 소음, 수질 등),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 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지구환경 보전, 환경관련 교육

16. 방송통신위원회

- 표현의 자유 보장, 공영 방송 강화, 통신자료 보호, 방송통신 접근권 확대, 소외계층 및 장애인 방송 접근권 확대

17.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 국민의 참정권 보장, 투표 참여율 제고, 부정선거 예방

자료: 규정우 외(2011). 『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국가인권지수는 국가의 인권현황 및 수준을 보다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해주며, 국가의 인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인권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전시도 대전 인권지표 설정에 있어 이러한 국가 인권지수의 내용을 참고하여, 대전시의 인권수준을 어떻게 측정할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4. 광주 인권지표 개발 및 활용¹⁹⁾

광주시는 ‘인권도시 광주’ 라는 슬로건 아래 도시의 인권수준을 측정하고, 체계적인 도시 인권관리, 도시에 적합한 인권정책 수립하기 위해 ‘광주 인권지표’ 를 개발하였다.

광주시의 인권지표 개발 사례는 지역 차원에서 인권지표를 어떻게 구성하고, 구성된 지표를 어떻게 수집하고 측정할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나아가 단순히 지표의 수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집된 자료를 도시 인권 정책에 있어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준다.

이러한 광주인권지표 개발 및 활용 사례는 대전형 인권지표 개발에 있어 광주의 사례는 다양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광주 인권지표의 개발 및 활용 사례를 보다 자세하게 분석할 것이다.

1) ‘인권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광주 인권지표

광주시는 ‘인권도시 광주’ 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지표를 개발하였다. 그러므로 광주 인권지표의 보다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권지표가 어떠한 배경에서 개발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광주 인권도시 계획은 크게 기본계획 수립, 광주시 인권현황 파악, 인권도시 비전과 전략 수립, 인권도시 추진 5대 전략과제 도출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9) 김재철 외(2011)를 참고하여 작성함

우선 기본계획 수립 시기를 살펴보면, 광주시는 도시의 인권 가치 실현과 종합적 인권실천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구상하였다. 기본계획에서는 광주시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조건들을 살펴보았으며, 향후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사례 및 현황 파악, TF팀 구성, 공청회 등의 세부 일정을 계획하였다.

이러한 기본계획과 수립이 완료된 후에는 구체적인 사례 연구 및 광주 인권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와 조사가 진행하였다. 사례 연구에서는 인권의 개념, 국제사회의 인권환경, 인권도시 정책 및 사례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광주 인권현황에 관한 조사에서는 광주시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현황 및 도시의 인권 정책을 살펴보았다.

조사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인권도시 광주’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였다. 수립된 비전과 전략을 살펴보면, 광주시는 ‘공감과 창조의 인권도시 광주’라는 비전 아래, 시민 삶의 질의 개선과 시민 역량을 발전시키는 ‘인권의 실질화’, 광주의 역사적 가치와 품위를 드높이는 ‘인권도시의 국제화’라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는 인권도시 ‘참여공동체’, 시민이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돌봄공동체’, 차별 없고 모두가 화합하는 인권도시 ‘연대공동체’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전과 비전을 기반으로 ① 인권지표/지수의 개발, 실천계획에 활용, ② 인권 교육/학습체계 구축, ③ 국제교류협력 인권 네트워크 구축, ④ 인권도시 광주로의 브랜드화 전략 수립, ⑤ 인권제도화를 위한 장치 마련이라는 5대 전략과제를 도출하였다.

이처럼 광주 인권지표는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5대 전략 과제 중 하나로 개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 인권지표는 인권이 갖는 보편성과 함께 인권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2) ‘광주 인권지표’ 의 구성체계

광주시는 지역사회의 인권현황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광주가 지향하는 인권도시의 정책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인권지표를 개발하였다. 광주 인권지표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다양한 연구에서 나타난 인권의 보편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광주라는 지역이 갖고 역사와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인권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광주 인권지표는 ①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②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③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 ④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⑤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라는 5대 영역을 설정하였다(김재철 외, 2011).

(1)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광주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를 실천하기 위한 과제로 ① 사상 및 의사 표현의 자유와 소통의 기회 보장, ② 참여와 정보 공유를 통한 시민 자치 실현, ③ 인권 문화와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설정하였다(김재철 외, 2011).

[표 3-12] 광주인권지표: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세부지표

I.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1. 사상 및 의사표현의 자유와 소통의 기회 보장
1) 이념, 종교, 사상의 자유: 이념, 종교, 사상의 자유(정성)
2)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집회신고건수 대비 허가 건수, 집회 및 결사의 자유(정성)
3) 표현의 자유: 표현(언론, 출판, 사이버, 집회)의 자유(정성)
2. 참여와 정보공유를 통한 시민자치 실현
1) 시민의 행정 참여도: 시 위원회 전체 위원수 대비 시민위원 수, 시 행정에 시민참여의 만족도(정성)
2) 행정정보 공개율: 행정정보공개 청구건수 대비 공개건수, 행정정보 접근 및 공개에 대한 시민만족도(정성)
3) 참여자치 및 인권관련 제도 도입수: 관련 조례 및 제도 도입 건수
4) 시민사회단체 조직률: 인구 만 명당 시민사회단체 수
5) 단체장의 민주적 리더십: 시민과 대화 및 소통의 빈도수, 대화 및 소통에 대한 시민만족도(정성)
6) 인권행정 만족도: 인권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정성)

<p>3. 인권문화와 민주시민의식 함양</p> <p>1) 시민 인권의식: 시민의 민주, 인권, 봉사, 배려 의식 정도(정성)</p> <p>2) 자원봉사 참여율: 전체 인구수 대비 자원봉사자 수</p> <p>3) 사회복지 기부 참여율: 전체 인구수 대비 사회복지 공동모금 기부 참여자 수</p> <p>4) 헌혈 참여율: 전체 인구수 대비 헌혈 참여자 수</p> <p>5) 인권교육 참여율: 전체 인구수 대비 인권교육 참여자 수, 전체 공무원 수 대비 인권교육 이수자수, 초·중·고 인권교육 실시 학교 수 비율</p>

자료: 김재철 외(2011).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2)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광주시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를 위한 실천과제로 ① 노동을 통한 자기실현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 ② 적절한 주거와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 ③ 질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건강한 생활 보장, ④ 학대와 폭력 방임이 없는 가정, 학교 직장 실현을 설정하였다(김재철 외, 2011).

[표 3-13] 광주인권지표: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세부지표

II.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p>1. 노동을 통한 자기실현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p> <p>1) 고용률: 15세 이상 인구수 대비 취업자 수</p> <p>2)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수 대비 실업자 수</p> <p>3) 비정규직 비율: 전체 취업자 수 대비 비정규직 수</p> <p>4) 부당노동행위 발생 수: 임금노동자 1,000명당 발생건수</p> <p>5) 노동조합 조직률: 전체 대상 사업장 수 대비 노동조합 결성 사업장 수</p> <p>6) 산업재해 발생 수: 임금노동자 1,000명당 산업재해 발생건수</p> <p>7) 체불임금 발생 및 구제: 임금노동자 1,000명당 체불임금 피해자수, 전체 체불임금 피해자수 대비 구제 건수</p>
<p>2. 질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건강한 생활 보장</p> <p>1) 법정감염병 감염자 수: 인구 10만명당 감염자 수</p> <p>2) 자살 발생 수: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p> <p>3) 5대 질환 사망자 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p> <p>4) 스트레스 인지도: 시민이 받는 스트레스 정도(정성)</p> <p>5) 공공의료서비스 만족도: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정성)</p> <p>6) 취약계층 건강검진 수검률: 전체 대상자 수 대비 수검자 수</p> <p>7) 노인치매 조기검진 수검률: 60세이상 인구수 대비 수검자 수</p> <p>8) 소아예방 접종률: 12세이하 어린이 수 대비 접종자 수</p> <p>9) 경제적 사유로 인한 미치료율: 전체 인구수 대비 1회이상 경제적 사유로 인한 미치료자 수</p>

<p>3. 적절한 주거와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p> <p>1) 주거환경 최저수준 미달 주택수: 전체 주택수 대비 최저기준 미달 주택 수, 전체 주택수 대비 재개발/재건축지구 주택 수</p> <p>2) 노숙자 인구수: 인구 만명당 노숙자수</p> <p>3) 도시개발에 의한 이주자 주거권 보호: 이주 가구수 대비 주거 확보 가구수</p> <p>4)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입주율: 공공임대아파트 신청자 수 대비 입주자 수</p>
<p>4. 학대와 폭력, 방임이 없는 가정, 학교 직장 실현</p> <p>1) 시민 사생활보호: 시민의 사생활보호 만족도(정성),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기준 준수 지수</p> <p>2) 성폭력 발생 및 구제: 여성인구 만명당 성폭력 피해자(신고/상담)수, 피해자수 대비 지원연계실적(구제) 건수</p> <p>3) 여성,노인,아동 등 가정폭력 발생 및 구제: 천 세대당 가정폭력 피해자(신고/상담)수, 피해자수 대비 구제 건수</p> <p>4) 장애인 학대 및 폭력 발생 및 구제: 장애인 천명당 학대 및 폭력 피해자(신고/상담)수, 피해자수 대비 구제 건수</p> <p>5) 생활복지시설 인권만족도: 생활복지시설 생활인 인권침해(정성)</p> <p>6) 학교내 폭력 발생 및 구제: 학생 천명당 폭력 피해자(신고/상담) 수, 피해자수 대비 구제건수</p>

자료: 김재철 외(2011).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3)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

광주시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 를 위한 실천과제로 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저생활 보장, ② 차별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 권리보장, ③ 아동, 청소년, 노인이 적절한 돌봄을 받을 권리 보장, ④ 소수자의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이 존중되는 도시 실현, ⑤ 성평등 및 여성의 권리 보장을 설정하였다(김재철 외, 2011).

[표 3-14] 광주인권지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 세부지표

Ⅲ.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
<p>1.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저생활 보장</p> <p>1) 빈곤율: 전체 인구수 대비 최저생계비 이하 인구 수</p> <p>2) 기초생활보장률: 최저생계비 이하 인구수 대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p> <p>3) 결식아동수 비율: 18세미만 인구 수 대비 결식아동 수</p> <p>4) 사회복지예산 비율: 시 전체 예산 대비 복지예산</p> <p>5) 사회적 일자리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포함) 일자리 수</p> <p>6) 국민연금 납입자율: 국민연금 대상자 수 대비 납입자 수</p>

<p>2.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 권리 보장</p> <p>1) 장애인 채용률: 장애인 공무원 채용률,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p> <p>2) 장애인 특수/통합학교(학급) 설치율: 전체 유치원, 초·중·고등 학교수 대비 설치 학교 수</p> <p>3)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시간: 중증장애인 1인당 장애인 활동보조시간</p> <p>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 3급이하 장애인수 대비 직업재활시설정원수</p> <p>5) 장애인 평생학습(정보교육포함) 접근도: 장애인 전용 평생학습운영 기관 수</p> <p>6) 일반여성 대비 장애 여성 출산율: 전체 출산율 대비 장애여성 출산율</p>
<p>3. 아동, 청소년, 노인이 적절한 돌봄을 받을 권리 보장</p> <p>1) 아동 생활시설 종사자 1인당 아동수: 시설 종사자 1인당 아동 수</p> <p>2) 지역아동센터 이용률: 18세이하 전체 아동 수 대비 이용자 수</p> <p>3) 특수보육시설 지정비율: 전체 보육시설수 대비 특수보육 지정 수</p> <p>4)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 전체 위기청소년 수 대비 지원서비스 수혜자 수</p> <p>5) 홀로 소년소녀 아동 지원율: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포함) 및 조손가정 아동수 대비 지원수혜자 수</p> <p>6)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 9~24세 청소년 수 대비 인터넷 중독자 수</p> <p>7) 노인 취업률: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대비 취업자수</p> <p>8) 노인 요양의료 수혜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수 대비 재가시설, 급여 수혜자수</p> <p>9) 무의탁 독거노인 비율: 65세이상 노인수 대비 무의탁독거 노인수</p>
<p>4.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이 존중되는 도시 실현</p> <p>1) 소수자에 대한 문화적 포용과 관용도: 외국인 및 소수자에 대한 관용도(정성)</p> <p>2) 외국인의 차별경험: 외국인의 차별경험 인식도(정성)</p> <p>3)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 참여율: 전체 다문화가족수 대비 지원프로그램 참여자수</p> <p>4) 외국인 언어 소통권: 다국어 표기 공공시설 수, 언어통역서비스 실시 공공 시설 수</p>
<p>5. 성 평등 및 여성의 권리 보장</p> <p>1) 선출직 여성정치인 비율: 전체 선출직(구,시의원 및 단체장)수 대비 여성 수</p> <p>2)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수 대비 5급 여성공무원 수</p> <p>3) 시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전체 위원수 대비 여성위원 수</p> <p>4) 대졸남성 대비 대졸여성 노동조건 격차: 남성 대졸자 취업률 대비 여성 대졸자 취업률, 남성 평균임금 대비 여성 평균임금</p> <p>5)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 용이도: 휴가, 휴직 이용 용이성에 대한 만족도(정성)</p> <p>6) 아동보육시설 설치율: 0~5세 아동 100명당 보육시설 수, 직장내 아동보육시설 설치수</p>

자료: 김재철 외(2011).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4)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광주시는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를 위한 실천과제로 ① 쾌적한 환경과 여가시설을 공유할 권리 보장, ② 시민 모두에게 장벽 없는 편리한 도시 조성, ③ 범죄, 교통사고, 재해, 화재, 유해 식품·약품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설정하였다(김재철 외, 2011).

[표 3-15] 광주인권지표: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세부지표

IV.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1. 쾌적한 환경과 여가 시설을 공유할 권리 보장 1) 대기오염도: 통합 대기환경지수, 1일 대기오염 발생량 2) 환경 피해민원 발생 및 구제: 인구 천명당 피해민원 발생 수, 피해민원 건수 대비 구제건수 3)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1인당 공원조성 면적 4)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준수율: 측정 대상수 대비 공기질 유지건수 5)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1일 1인 폐기물 발생량
2. 시민 모두에게 장벽 없는 편리한 도시 조성 1)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 도입률: 전체 시내버스 면허대수 대비 저상버스 수, 전체 택시 면허대수 대비 전용택시 수 2)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율: 법적 기준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3) 시각장애인 보행시설 설치율: 음향신호기 설치대상 대비 설치율, 점자보도블럭 설치대상 연장 대비 설치 연장 4) 장벽 없는 도시환경 조성: BF 인증 시설 수
3. 범죄, 교통사고, 재해, 화재, 유해 식품·약품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1) 치안 안전도: 인구 만명당 범죄발생 건수, 범죄 검거율 2) 교통 안전도: 자동차 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3) 화재 및 자연재해 취약가구 해소율: 취약지역 소방시설 보급률, 자연재해 취약가구 해소율 4)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율: 부적합 식품 검사율

자료: 김재철 외(2011).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5)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

광주시는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를 위한 실천과제로 ① 교육의 다양성 추구 및 자유롭고 창의적인 학습권 실현, ②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누릴 자유로운 권리 보장, ③ 국내외 인권 증진에 노력하고 기여하는 도시를 설정하였다(김재철 외, 2011).

[표 3-16] 광주인권지표: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세부지표

V.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
1. 교육의 다양성 추구 및 자유롭고 창의적인 학습권 실현 1) 교원 1인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 2) 과중한 학습스트레스: 학습시간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정성) 3) 중·고등학교 학업 중단율: 중고 전체 학생수 대비 학업중단자 수 4) 평생학습 참여 용이성: 인구 천명당 평생교육기관수 5) 창의학습 기회 제공: 학교별 창의체험학습 평균 프로그램운영 수 6)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초·중 전체 학생수 대비 무상급식 수혜자수 7) 지자체 교육예산 보조: 학생1인당 교육예산 보조금액
2.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누릴 자유로운 권리 보장 1) 공공 문화시설 접근도: 인구 천명당 문화시설 수 2) 공공도서관 접근도: 인구 5만명당 도서관 수 3) 문화예술활동 참여시간: 시민 1인당 주당 문화활동 시간 4) 소외계층 문화활동 수혜율: 소외계층 인구수 대비 문화바우처 수혜자 수 5) 시민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인, 단체, 동아리 등 총 지원액
3. 국내외 인권 증진에 노력하고 기여하는 도시 1) 공공기관 해외 인권교류협력 건수: 공공기관 해외 인권교류 협력건수 2) 인권경영 유엔글로벌 콤팩트 가입수: 유엔 글로벌 콤팩트 가입건수 3) 국내 민·관 인권협약 체결건수: 인권협약 체결건수 4) 민간분야 인권관련 활동지원: 활동지원 건수, 총 지원액

자료: 김재철 외(2011).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3) 광주시의 '광주인권지표' 의 활용

광주시는 보다 체계적인 광주인권지표의 관리를 위해 세부 인권지표 별 담당 부서를 지정하였다. 지정된 담당부서에서는 각 지표의 통계 및 현황을 관리하고, 도시의 인권수준의 향상을 위한 세부 실천 방안을 추진하고, 성과를 평가한다.

그리고 광주시는 각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개별 지표를 시 차원에서 종합하여 매년 『광주 인권지표 통계보고서』를 발간한다. 시 차원의 통계 보고서는 도시의 인권 수준의 변화 측정, 도시 인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인권증진 목표 달성 상대 파악, 향후 도시의 인권 환경 변화 예측 등 도시의 전반적인 인권관리에 있어 폭넓게 활용된다.

또한 광주시는 광주 인권지표를 바탕으로 ‘광주 인권지수’를 산출하여, 수집된 자료를 단순히 지표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수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의 지수로의 환산을 통해 광주시는 도시의 인권수준이 국내·외 다양한 도시들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광주시는 인권지표를 개발하여 시민 중심의 인권행정을 실현하고 있으며, 도시의 인권현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는 도시의 미래 인권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인권지표를 통해 구체적 인권증진 실천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전시 또한 광주시의 인권지표 사례를 바탕으로 도시의 인권수준을 측정하고, 도시 인권정책의 기본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인권지표를 개발해야한다.

5. 대전형 행복지수²⁰⁾

인권이 인간이 삶에 있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나타내는 개념이라면, 행복은 인간의 ‘주관적 평안과 만족의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적 차이에도 인권의 많은 부분은 행복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인간 개인이 누려야 할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 때 인간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인권지표의 유관지수로 행복지수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대전 인권지표 개발 연구 이전에 진행되었던 대전 행복지수 개발 연구는 많은 부분에 있어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대전시는 도시의 객관적 행복 여건과 삶의 질, 시민의 주관적 행복도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행복지수’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행복 관련 사회 통계 및 지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의 표와 같은 대전 행복지수의 영역과 세부분야를 설정하였다.

20) 박노동 외(2016)를 참고하여 작성함

[표 3-17] 대전 행복지수의 영역과 세부분야

영역	세부 분야
경제적 안정	소득, 일자리
건강과 주거	건강, 주거
문화와 여가	문화, 여가, 인터넷 활용
공동체 활력	가족 유대, 사회적 관계, 기부 및 신뢰
주관적 웰빙	전반적 삶의 만족도, 긍정경험, 부정경험, 가치부여
도시 기반	안전, 환경, 교통

자료: 박노동 외(2016). 『대전형 행복지수 구축방안』.

이러한 대전형 행복지수의 영역 및 세부 분야를 설정한 이후,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표를 선정하였다. 지표의 선정에 있어 영역별로 중복되는 지표는 제외하고, 기존 선행 연구 사례를 참고하여 지표를 작성하였다. 또한 향후 보다 용이한 지표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일관된 자료 수집이 가능한 지표들을 바탕으로 지표를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바탕으로 최종 6대 영역에 총 34의 지표가 선정되었다. 대전형 행복지표의 구성안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18] 대전형 행복지표(안)

구분	영역	지표	
		객관지표	주관지표
기본 지표	경제적 안정	가처분소득 고용률	소득만족도 일자리만족도
	건강과 주거	기대여명 주거비	주관적 건강만족도 스트레스인식도 주거환경만족도
	문화와 여가	문화여가시간 문화여가지출비율	문화여가활동만족도
	공동체 활력	가족관계접촉빈도 사회단체참여율 자원봉사참여율	가족관계만족도 사회적 유대정도 지역사회소속감 기부정도 사회적 신뢰도

기본 지표	주관적 웰빙	-	전반적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경험 부정적 정서경험
	삶의 질의 도시기반 (안전, 환경, 교통)	범죄율 교통사고발생율 미세먼지농도 온실가스배출량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교통시설이용편리성 수질만족도 체감환경만족도
특성 지표	아동기	아동학대피해경험률 학교폭력발생률 학업성취도	교우관계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성인기	사교육비지출비율 평생교육접근성	
	노년기	연금수급률 장기요양보호율	

자료: 박노동 외(2016). 『대전형 행복지수 구축방안』을 참고하여 재작성.

대전형 행복지수의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지표가 인권지표와 같이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대전 인권지표 개발에 있어 기존의 대전형 행복지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지표선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앞서 이야기 했듯이 인권의 개념이 행복의 개념보다 인간 삶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이므로 단순히 행복지표만을 활용하여 인권지표를 구성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형 행복지수 연구 이외에 앞서 살펴본 다양한 연구 및 사례들을 참고하여 대전 인권지표를 구성해야한다.

3절 시사점

지금까지 다양한 국내외 인권지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각 선행 사례를 종합하여 살펴보았을 때 대전형 인권지표 개발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우선 인권이란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갖는 권리이다. 인권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로 자유, 평등 등의 권리는 국가나 사회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이다. 하지만 정근식 외(2004)의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인권은 역사의 진전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하는 성격 또한 갖고 있다. 그러므로 대전의 인권지표 개발에 있어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 권리를 지표로 구성하는 한편, 대전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특수성과 사회의 변화 양상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함께 구성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인권이란 단일한 차원으로 측정되기 보다는 다차원적으로 측정될 때 보다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하다. 인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문화적 권리, 환경적 권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기본적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단순히 시민적·정치적 권리로만 보고 측정한다면, 인권이 갖는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전의 인권지표 설정에 있어서도 대전 인권 수준의 포괄적인 측정을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인권 구성이 필요하다.

세 번째 국가, 도시 차원의 인권 수준 측정과 함께 개별 개인이나 집단 차원에서의 인권 수준 측정도 중요하다. 대학인권지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개인이나 집단의 인권수준 측정도 오늘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전시의 인권지표 또한 다양한 개인과 집단을 포괄할 수 있는 인권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청년, 대학생, 연구원 등이 많으므로 이러한 집단을 반영할 수 있는 인권지표 구성이 필요하다.

네 번째 도시의 보다 명확한 인권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량적 평가 이외에 정성적 평가도 중요하다. 그동안 많은 국제사회의 인권지표는 측정 가능한 객관적인 지표만을 활용하여 인권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활용한 측정은 한 국가나 사회의 객관적인 인권수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곳을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오늘날 OECD의 ‘더 나은 삶의 지수’ 나 ‘광주 인권지표’ 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인권 수준의 측정에 있어 사람들의 만족도나 인식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정성적 측정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대전시 또한 정성적 측정 지표를 포함한 인권지표를 구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전 인권 지표 활용을 위한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광주 인권지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인권지표의 구성과정에 있어 구성된 인권지표의 향후 관리와 활용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전시 또한 수집된 인권지표를 단순한 인권 측정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인권정책 수립, 인권 환경 변화 예측 등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대전 인권지표의 인권지수로의 환산 방법을 논의하여, 대전 인권지표가 ‘대전 인권지수’ 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야 한다.

4장

대전형 인권지표의 개발

1절 대전형 인권지표 개발의 기본방향

2절 대전형 인권지표 개발의 절차

3절 대전형 인권지표의 선정

4장 대전형 인권지표의 개발

1절 대전형 인권지표 개발의 기본 방향²¹⁾

1. 대전형 인권지표 개발 시 고려할 요소

1) 대전형 인권지표의 초점

대전형 인권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권지표가 어떠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정해야 한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이야기 했듯이 인권이란 그 성격의 다양성으로 하나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만큼 이를 측정하는 것 작업 또한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 개념의 다양성과 포괄성으로 인권의 모든 부분을 측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형 인권지표의 구성에 있어 어떠한 부분에 초점을 맞출지 정하는 것이 대전형 인권지표의 성공적인 구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인권지표는 크게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으로 나뉘어서 살펴볼 수 있다. 객관적인 측면이 객관적인 통계치(예를 들어 의식주관련 통계나 보건의료 관련 통계들)를 바탕으로 도시의 전반적인 인권수준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면, 주관적인 측면은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 행복감 등을 통해 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주관적인 인권 의식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지표는 통계치를 바탕으로 성과지표로 활용하거나 각 도시의 인권수준을 비교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면, 주관적인 지표는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도시 인권을 어떻게 체감하는지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1) 박노동 외(2016)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그러므로 대전형 인권지표의 구성에 있어 우선적으로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의 어떠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1] 인권지표의 초점: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

2) 인권지표의 구조

대전형 인권지표의 구조는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 등과 같은 영역별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세부지표는 객관적-주관적 지표로 이뤄져 있다.

인권은 그 성격상 보편적인 권리로 시민 모두가 얼마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로써 인권을 누리고 있는지 측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보다 도시의 인권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측면 이외에 개인의 특성(성별, 신체적·정신적 장애 유무, 연령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특성에 따라 느끼고 있는 인권의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전형 인권지표의 구조는 영역별 세부지표/객관적-주관적 지표라는 기본적인 구조를 따르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세부지표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3) 대전형 인권지표의 특성

지역의 인권수준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대전시민들의 인권 의식과 인권 관련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대전형 인권지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대전형 인권지표는 인권의 객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측면 모두를 고려할 것이다. 인권 관련 객관적인 지표는 통계치를 통해 도시 인권 수준과 변화 양상을 명확하게 보여주므로 향후 도시 인권 계획의 수립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전형 인권지표의 구성에 있어 대전시의 객관적 인권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의식주, 경제활동, 보건의료 관련 통계치들은 주요한 구성요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인권의식과 인권 정책관련 욕구를 조사하기 위해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주관적 지표를 구성할 것이다. 주관적인 지표는 신뢰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민들의 인권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지표에 구성에 있어 타당성을 갖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향후 발전하고 변화하는 도시의 미래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구성할 것이다. 미래 대전 시민 모두가 인권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공유, 소통과 같은 미래가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전형 인권지표의 구성에 있어 이러한 미래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표의 구성은 나아가 대전의 미래 비전 및 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다양한 삶의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경제, 사회, 문화, 보건의료, 교육 등 다양한 세부 영역을 설정할 것이다. 이러한 세부 영역의 설정은 인권이 갖는 다양성과 포괄성을 반영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세부 영역 인권 수준의 비교를 통해 현 대전시의 인권 수준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부 영역 중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파악함으로써 향후 대전시의 효율적인 인권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2. 대전형 인권지표 개발의 기본방향

대전형 인권지표 개발의 기본방향을 다음의 5섯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표의 타당성을 제고해야한다. 이를 위해 지표선정 과정에 있어 인권수준과의 관계를 고려해 선정할 필요가 있다. 즉, 지표의 증감이 인권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화하고 객관화하여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의 구성이 중요하다.

둘째, 지표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인권지표는 향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계열적인 분석과 함께 미래 인권 수준을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 수준을 측정하는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지표의 구성이 중요하다.

셋째, 지표선정에 있어 대전이 갖고 있는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대전형 인권지표로서 대전시의 인권수준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전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 도시 대전의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대전 미래 비전인 2030 그랜드플랜을 참고하여 지표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표선정에 있어 객관적 부분과 주관적 부분 모두를 반영하여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인권개념은 객관적인 조건 외에 주관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인권개념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표를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권의 다양성과 포괄성을 반영하기 위해 세부 영역별 지표 구성해야 한다. 인권개념이 갖는 다양성과 포괄성으로 몇 개의 문항만으로 한 지역의 인권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광주시의 경우 5대 영역 100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도시의 인권지표를 측정하였다. 그러므로 대전시 또한 도시 인권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세부 영역을 선정한 후 각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2절 대전형 인권지표 개발의 절차

1. 대전형 인권지표 선택 기준²²⁾

대전형 인권지표의 개발에 있어 어떠한 지표를 선택할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를 필요가 있다. 우선 인권지표는 도시의 인권수준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타당성(validity)’ 을 갖춰야 한다.

두 번째로 매년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높은 이용성(availability)과 시의성(timeliness)’ 을 가진 자료를 지표로 선정해야 한다. 도시의 인권수준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지라도 자료의 축적이 어려워 매년 축적되기 어려울 경우 인권 지표로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세 번째로 자료가 공정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매년 이와 같은 환경을 기대할 수 있을 경우 지표로 선정해야 한다. 즉 ‘안정성(stability)’ 과 ‘신뢰성(reliability)’ 이 높은 자료를 지표로 선정해야 한다. 이는 지표의 신뢰성과 연결되는 부분이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자료가 매년 다른 환경에서 수집된다면, 이는 자료의 신뢰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지표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이해가능성(understandability)’ , ‘반응성(responsiveness)’ , ‘정책적 적절성(policy relevance)’ , ‘대표성(representativeness)’ 등이 지표 선택에 있어 중요한 선택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택기준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1] 인권지표의 주요 선택기준

구분	내용
타당성	- 도시의 인권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자료의 선정
이용성과 시의성	- 자료는 연간 단위로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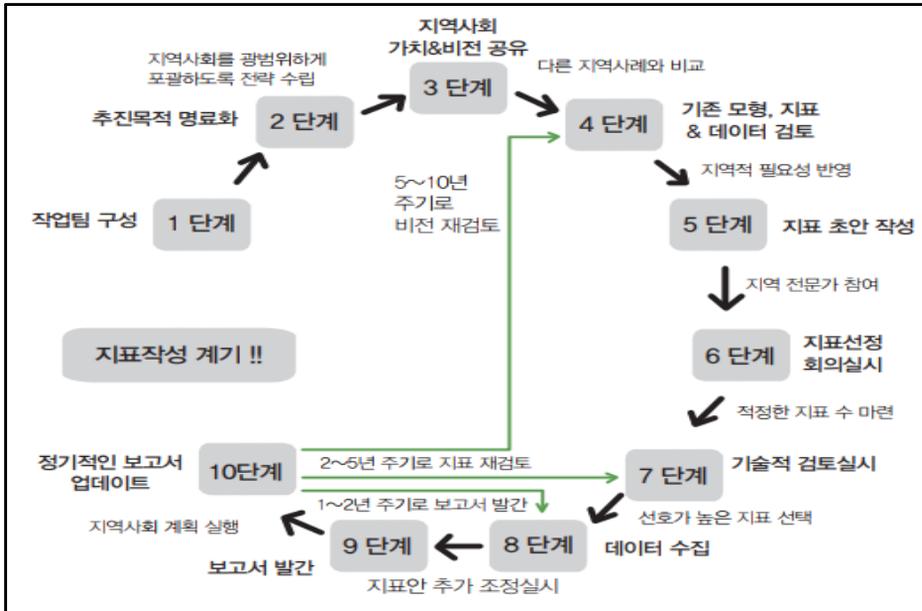
22) 통계청(2013)을 참고하여 작성함

구분	내용
안전성과 신뢰성	- 체계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바탕으로 자료가 수집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 수집이 매년 동일하게 기대될 수 있어야 함
이해가능성	-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함
반응성	- 자료는 현실의 변화에 반응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함
정책적 적절성	- 정책의 수립과 결정에 있어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지표로 선정해야 함
대표성	- 인권 세부 영역의 중요한 부분을 반영하는 자료를 지표로 선정해야 함

자료: 통계청(2013). 『지역사회지표 작성 매뉴얼』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작성.

2. 대전형 인권지표의 작성과정

통계청(2013)에서는 지역사회의 지표작성에 있어 기본적인 작성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10단계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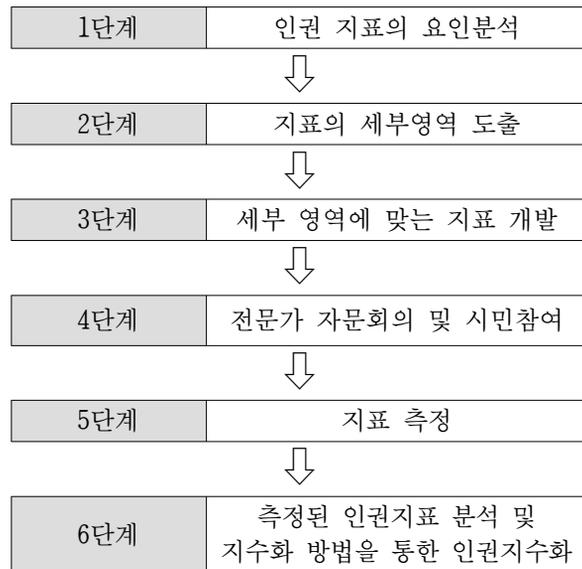


[그림 4-2] 지표작성의 10단계 과정

자료: 통계청(2013). 『지역사회지표 작성 매뉴얼』.

이와 같은 같은 지표작성 과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대전형 인권지표의 지표 작성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할 수 있다.

1단계에서는 인권지표를 구성하는 영역별 지표선정을 위해 인권지표에 대한 선행연구와 국내외사례 분석해야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권지표의 각 요인을 분석하고, 인권개념의 공통요인을 도출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인권지표에 관한 개념적 틀을 바탕으로 세부 영역을 도출한다. 3단계에서는 각 영역에 맞는 세부 지표를 개발한다. 4단계에서는 인권 지표의 영역과 구성된 세부지표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와 시민참여 등을 통해 지표를 검증한다. 검증 절차를 바탕으로 지표를 선정한다. 5단계에서는 4단계에서 선정된 지표를 바탕으로 예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측정한다. 이와 같은 측정을 통해 지표선정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인권지표의 인권 지수화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 그리고 예비 설문조사가 끝난 후 본 설문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6단계에서는 측정결과를 중심으로 대전의 인권수준과 현황을 분석한다. 그리고 측정된 인권지표를 인권지수로 활용하기 위해 가중치 부여와 같은 지수화 방법을 적용해 대전형 인권지수를 산출한다.



[그림 4-3] 대전형 인권지표의 개발과정

3절 대전형 인권지표의 선정

1. 대전형 인권지표 선정의 개념적 틀

1) 대전형 인권지표 선정을 위한 국내외 인권관련 논의 검토

대전형 인권지표는 국제적 인권담론에서 나타난 보편성과 일관성을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전형 인권지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나타난 인권 관련 논의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나타난 인권관련 가장 기본적 논의는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법’을 살펴볼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인권항목은 안전권, 자유권, 평등권, 경제적·사회적 권리, 참정권, 적정절차 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인권법의 경우 세계인권선언에서 나타난 인권항목과 더불어 문화, 소수자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본적 논의들 이외에 ‘유럽도시선언’, ‘HDI’, ‘Better Life index’도 인권관련 국제적 수준의 논의 성과들로 참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 수준의 논의 성과들을 분석하여 대전형 인권지표에 반영함으로써 대전형 인권지표의 현실성을 높이고, 국제사회 기준에 맞는 인권지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전형 인권지표가 국내의 인권현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이뤄진 논의이외에 국내에서 이뤄진 인권관련 논의를 검토하여 반영해야 한다. 국내의 인권관련 대표적인 논의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광주 인권지표’가 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인권항목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교육, 인권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국제인권 규범의 이행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광주 인권지표는 자유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환경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등이 인권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국내의 논의들은 검토함으로써 대전형 인권지표에 국내 인권 상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광주 인권지표의 사례는 지방 자치단체 수준에서 인권지표를 어떻게 개발하고,

도시의 인권 수준 측정 및 관리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전형 인권지표의 개발에 있어 광주시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볼 수 있다.

[표 4-2] 대전형 인권지표 선정을 위한 국내외 인권관련 논의검토

구분		인권항목
국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①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②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③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④ 교육, ⑤ 인권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국제 인권 규범의 이행 등
	광주 인권지표	① 자유권, ② 행복추구권, ③ 평등권, ④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⑤ 환경권, ⑥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등
국외	세계인권선언	① 안전권, ② 자유권, ③ 평등권, ④ 경제적·사회적 권리, ⑤ 참정권, ⑥ 적정절차 원리 등
	국제인권법	세계인권선언의 인권항목 + 문화적 권리, 소수자에 대한 권리, 국제적·사회적 질서 등
	유럽도시선언	① 안전, ②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③ 경제적·사회적 권리, ④ 문화 및 여가생활, ⑤ 다문화, ⑥ 도시의 역사성, ⑦ 도시 기능 간 조화, ⑧ 자유, 평등, 참정권, ⑨ 개인적 성취, ⑩ 지방도시간 협력 등
	HDI	① 건강영역(출생시 기대수명) ② 교육영역(기대 교육연수, 평균교육 기대연수), ③ 적절한 수준의 삶(1인당 국내 총생산)
	Better Life index	① 물질적 삶의 조건(소득, 고용, 주거) ② 삶의 질(건강상태, 일과 삶의 균형, 교육, 시민참여 등)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외 인권관련 논의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먼저 인권 항목의 경우 인권이 갖는 보편성과 일관성이라는 성격 때문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많다. 예를 들어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경제적·사회적 권리 등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도시의 인권관련 환경과 인권교육 인프라, 국제사회와의 연계, 리더쉽 등도 인권관련 주요 지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대전형 인권지표 선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국내외 논의를 참고하여 영역을 설정해야 한다.

2) 대전의 시정방향 및 미래 지향을 고려한 인권지표 선정

대전형 인권지표는 향후 대전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활용될 수 있어야 하므로, 인권지표 선정에 있어 시정방향 및 미래지향을 고려해야 한다. 대전시의 시정방향 및 미래지향은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과 ‘2030 대전 그랜드 플랜’ 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030년 대전도시기본 계획에서는 미래 대전의 시정 방향을 ‘주변도시와 상생발전하는 중부권 중심도시’, ‘경쟁력 있는 과학도시’, ‘즐길거리가 풍부한 매력적인 문화도시’, ‘활력이 넘치는 도시’, ‘대중교통 중심도시’, ‘건강한 환경도시’ 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2030년 대전 그랜드 플랜에서는 ‘창조적인 도시’, ‘공유와 순환의 도시’, ‘연대와 포용의 도시’ 로 대전의 미래지향을 설정하였다.

[표 4-3] 대전의 시정방향 및 미래지향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2030 대전그랜드플랜
주변도시와 상생발전하는 중부권 중심도시 경쟁력있는 과학도시	창조적인 도시
즐길거리가 풍부한 매력적인 문화도시 활력이 넘치는 도시	공유와 순환의 도시
대중교통 중심도시 건강한 환경도시	연대와 포용의 도시

자료: 박노동 외(2016). 『대전형 행복지수 구축방안』

인권이 인간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이자, 인간의 생활, 행복, 자기 발전 등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대전의 미래상 및 가치의 실현을 위해 인권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전형 인권지표는 단순히 도시의 인권수준을 보여주는 통계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전의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전의 미래상과 가치를 반영하여 대전형 인권지표의 영역과 지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2. 대전형 인권지표의 영역 설정

대전형 인권지표의 영역은 크게 ① 시민적·정치적 권리, ②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③ 환경권, ④ 평등권, ⑤ 공동체 ⑥ 도시의 인권 정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우선 시민적·정치적 권리 영역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생활의 보장과 관련된 영역으로 시민의 신체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 등을 포함한다. 두 번째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시민들의 행복한 생활 추구하고 관련된 영역으로 노동, 주거, 교육, 문화, 복지 등 시민 생활의 전반적 영역을 포함한다. 세 번째로 환경권은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영역으로 생활권, 이동권, 안전권 등을 포함한다. 네 번째로 평등권은 시민들이 자신의 성, 연령, 신체적 장애 등에 관계없이 차별 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와 관련된 영역으로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포함된다. 다섯 번째로 공동체는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공동체 정신의 발전과 관련 영역으로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시민들의 사회참여, 지역사회 인식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인권정책은 도시의 인권 발전을 위한 인권정책과 인권제도 등과 관련된 영역으로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인권교육, 인권법령, 인권행정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전형 인권지표의 6대 영역을 보다 세분화된 권리 분야 및 실천항목으로 나눠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4] 대전형 인권지표의 6대 영역과 세부 권리 분야

6대 영역	17대 권리분야	42대 세부 실천항목
시민적·정치적 권리 (시민의 자유로운 생활)	신체적 자유권	- 법에 의한 규제(적법절차) - 신체적 강압 및 폭력 근절 - 인격권,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정치적 자유권	- 시민들의 자유로운 참여 - 표현의 자유 - 집회, 결사의 자유

6대 영역	17대 권리분야	42대 세부 실천항목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시민의 행복한 삶 추구)	노동권	- 노동조건(고용차별) - 노동시장 - 근로자의 권리 보장 - 직업능력 개발 지원
	교육권	- 교육환경 - 학습보장 - 개인적 성취의 가능성
	건강권	- 의료환경 및 의료서비스 수준 - 시민들의 건강수준 - 지역의 건강 관리체계
	사회복지권	- 경제적 빈곤층에 대한 지원환경 - 사회 보장 및 사회복지 서비스
	주거권	- 주거 빈곤층에 대한 지원환경 - 주거환경 및 주거권의 실현
	문화권	- 도시의 문화 환경 - 시민들의 문화 참여 및 향유 - 문화 복지수준
환경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안전권	- 도시의 치안수준 - 재해안전 및 자연재해 대책 - 식품안전
	생활권	- 생활환경(환경오염, 생활소음 등)
	이동권	- 이동성 - 접근성
평등권 (차별 없는 평등한 도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	- 여성 - 노인 - 장애인 - 아동/청소년 - 다문화(결혼이주여성, 새터민 등)
공동체 (연대와 포용의 도시)	사회참여	- 자원봉사
	지역사회 인식	- 사회적 소통 - 사회적 신뢰 및 관계망
	사회적 경제	-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수
인권 정책 (도시의 인권환경)	인권제도	- 인권법령 - 인권교육
	인권정책	- 인권 네트워크(도시 간, 도시 내) - 인권 행정

3. 대전형 인권지표의 영역별 세부지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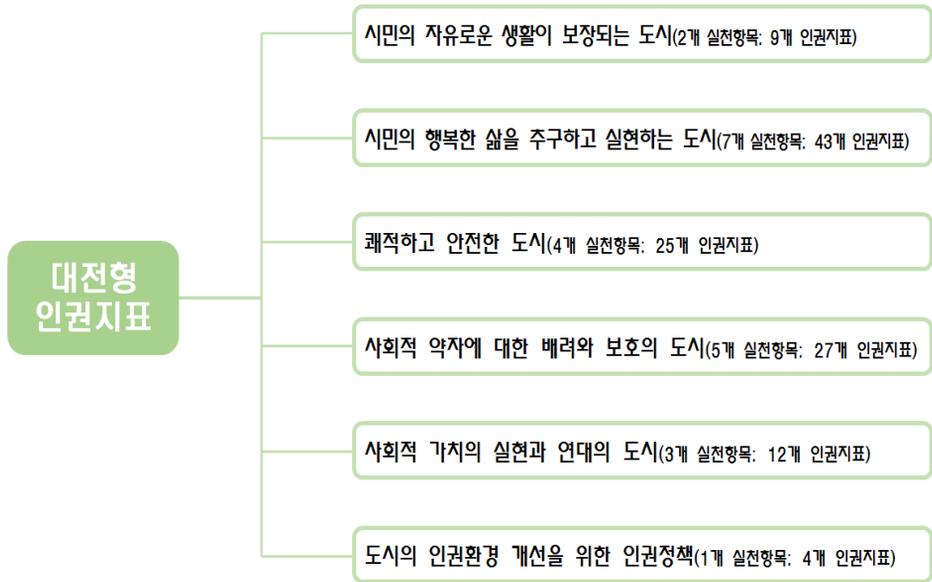
대전형 인권지표의 세부인권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전의 상황과 미래 비전을 반영한 실천적인 지표영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전의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더욱 현실성 있고, 실천적인 지표영역을 설정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5] 대전형 인권지표 세부지표 선정을 위한 실천적인 지표영역

6대 영역	22개 실천 조항
시민의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되는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 집회 및 결사, 표현의 자유 보장 • 시민자치 실현을 위한 정보의 공유와 시민참여
시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로운 노동의 참여와 노동자의 보장 • 행복한 삶을 위한 시민의 경제적 권리 보장 •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적절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보장 • 폭력, 학대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사회 실현 • 자유롭게 문화예술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 • 자유롭게 평등하게 학습 받을 권리 보장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과 공해로부터 자유로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자유로운 여가시설의 이용과 여가생활을 누릴 권리 • 장벽 없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 유해환경, 범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의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인간다운 삶’ 을 위한 최저 생활의 보장 • 여성의 권리 보장과 성 평등 실현 • 사회적 약자들이 적절한 돌봄을 받을 권리 보장 •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권리 보장 •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연대의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시민으로서의 사회참여 •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 신뢰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
도시의 인권환경 개선을 위한 인권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문화 실현과 인권환경 개선을 위한 인권행정

22개 실천조항의 세부 인권지표 선정에 있어, 지표의 이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전통계연보』, 『대전사회지표』, 통계청 및 기타 기관에서 생성한 자료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연계성의 고려로 6대 영역, 22개 실천조항의 120대 세부 인권지표 중 대부분의 지표가 기존의 자료를 통해 편리하게 구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다만, 인권행정 만족도나 인권의식 등과 같은 정성평가 성격의 지표는 활용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새로운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사가 필요한 문항의 경우 ‘(설문)’으로 표시하였다. 즉 ‘(설문)’으로 표시한 지표는 기존의 자료를 활용할 수 없고, 대전시민의 인권의식 조사와 같은 설문조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수집이 필요한 지표를 의미하므로 ‘(설문)’ 표시에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4-4] 대전형 인권지표의 체계

1) 시민의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되는 도시: 인권지표 9개

(1) 사상, 집회 및 결사, 표현의 자유 보장: 인권지표 4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상, 집회 및 결사,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릴 권리이자 중요한 권리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전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사상, 종교, 집회 및 결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시민들은 자신의 성별, 연령, 학력과 무관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 내에서의 사상, 종교,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시는 이러한 시민 개인의 사상과 종교, 표현을 존중하고, 이들이 보다 자유로운 권리 실현을 위해 언론, 출판, 소통에 있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인권지표의 구성은 이러한 시민의 자유권을 포함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포함된 지표를 바탕으로 대전 시민의 자유권의 보장정도와 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상, 집회 및 결사, 표현의 자유 보장의 인권지표는 ① 이념, 종교, 사상의 자유, ② 집회 및 결사의 자유, ③ 표현의 자유, ④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으로 구성될 수 있다.

[표 4-6] 사상, 집회 및 결사, 표현의 자유보장 영역의 인권지표

인권지표	측정 방법
① 이념, 종교, 사상의 자유	· 이념, 종교, 사상 활동에 있어 자유롭다고 느끼는 주관적 의식(설문)
②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한 해 동안 신고 된 집회 중 허가건수 · 시민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정도(설문)
③ 표현의 자유	· 인터넷, 언론, 출판 등에 있어 시민들이 느끼는 자유의 정도(설문)
④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 시민들이 느끼는 사적인 생활의 보호 정도(설문) · 사적인 생활 영위에 있어 시민들이 자유롭다고 느끼는 정도(설문)

(2) 시민자치 실현을 위한 정보의 공유와 시민참여: 인권지표 5개

오늘날 시민자치는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시 행정의 정보를 공유 및 습득할 수 있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 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시민들이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즉, 시는 시민들이 시민 중심적인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자치의 실현을 통해 민주적 가치를 함양함과 동시에, 나아가서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시민 자치 실현을 위한 정보의 공유와 시민참여 영역의 인권지표는 ①행정 정보 공개율, ② 시민의 행정참여정도, ③ 시민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 도입, ④ 시민사회단체의 조직률, ⑤ 단체장의 리더십으로 구성할 수 있다.

[표 4-7] 시민자치 실현을 위한 정보의 공유와 시민참여 영역의 인권지표

인권지표	측정 방법
① 행정 정보 공개율	· 한해 청구된 행정정보공개 건수 대비 공개건수 · 시민의 행정정보 접근 및 공개 만족도(설문)
② 시민행정참여정도	· 시 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 중 시민 위원의 수 · 시민의 시 행정 참여에 대한 만족도(설문)
③ 시민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 도입	· 한 해 동안 관련 조례 및 제도의 도입 건수
④ 시민사회단체의 조직률	· 시민사회단체의 수(인구 만명당)
⑤ 단체장의 리더십	· 단체장의 시민과의 대화 및 소통 빈도수 · 단체장의 대화 및 소통에 관한 시민 만족도(설문)

2) 시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도시: 인권지표 43개

(1) 자유로운 노동의 참여와 노동자의 권리 보장: 인권지표 8개

오늘날 사회에서 노동행위는 단순히 ‘소득’을 위한 행위가 아닌 자기 실현에 있어 중요한 역행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시민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과정에 있어 성,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 권리의 실현을 위해 자유롭게 노동 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게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기업에서 나타나는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감시, 노동과정 속 나타나는 차별적 행위 철폐,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 직업교육과 훈련의 기회 제공 등의 노력을 행해야 한다.

자유로운 노동의 참여와 노동자의 권리 보장 영역의 인권지표로는 ① 고용률, ② 실업률, ③ 고용안정성, ④ 부당노동행위 발생 수, ⑤ 노동조합 조직률, ⑥ 산업재해 발생 수, ⑦ 체불임금 발생 및 구제, ⑧ 직업훈련 교육으로 구성할 수 있다.

[표 4-8] 자유로운 노동의 참여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의 인권지표

인권지표	측정 방법
① 고용률	· 15세~64세 인구 대비 취업자 수
②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수
③ 고용안정성	·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 · 노동유연성비율
④ 노동조합 조직률	· 대상 사업자 중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 수
⑤ 산업재해 발생 수	· 임금노동자 1,000명당 산업재해의 발생건수
⑥ 부당노동행위 발생 수	· 임금노동자 1,000명당 발생건수
⑦ 체불임금 발생 및 구제 건수	· 임금노동자 1,000명당 체불임금 피해자 수 · 전체 체불임금 피해자 수 대비 구제 건수
⑧ 직업훈련교육	· 지역의 직업훈련 교육 예산 및 프로그램 수 · 시민의 직업훈련 교육 만족도(설문)

(2) 행복한 삶을 위한 시민의 경제적 권리 보장: 인권지표 4개

대전시의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나아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 권리’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시민의 경제적 권리는 기본적인 소득의 보장에서부터 시민의 주관적인 소득 수준 및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유럽도시 선언에서 나타나듯이 도시는 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적 성장과 번영을 위한 책임이 있다. 즉,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경제적 권리의 보장은 개인적인 경제활동의 만족도부터 시의 적절한 수준의 경제성장 모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전시는 시민의 경제적인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경제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

행복한 삶을 위한 시민의 경제적 권리 보장 보장 영역의 인권지표는 ① 지역내 총생산 및 1인당 GRDP, ② 도시 성장률, ③ 소득수준, ④ 소비생활로 구성할 수 있다.

[표 4-9] 행복한 삶을 위한 시민의 경제적 권리 보장

인권지표	측정 방법
① 지역내 총생산 및 1인당GR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해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수치 · 전체 시민 수 대비 지역 내 총생산
② 도시 성장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 대비 경제활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부가가치의 증감률
③ 소득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 전체의 지난 1년간 총소득액의 한 달 평균 소득 · 소득 수준의 만족도
④ 소비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 전체의 지난 1년간 총 소비 지출액의 한 달 평균 소비 지출액 · 소비생활 만족도

(3)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인권지표 9개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시민은 질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자유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경제적 이유로 건강권이 박탈당해서는 안 되며, 경제적인 여건에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시민은 자신의 건강권을 보장받기 위해 공중위생과 보건 향상을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적절한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건강권을 보장받을 권리 또한 갖고 있다.

그러므로 대전시는 시민 누구나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에 있어 필요에 따라 언제라도 자유롭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 이유로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시는 공중위생과 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영역의 인권지표는 ① 보건 의료 인력, ② 보건 의료시설, ③ 공공의료 서비스 만족도, ④ 5대 질환 사망자 수, ⑤ 자살 발생 수, ⑥ 스트레스 인지율, ⑦ 소아 예방접종률, ⑧ 취약계층 건강검진 수검율, ⑨ 신체활동 실천율과 비만율로 구성할 수 있다.

[표 4-10]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인권지표	측정 방법
① 보건 의료인력	· 시민 1인당 의료인력 수
② 보건 의료시설	· 인구 10만명 당 의료기관 수 · 인구 천명당 병상수
③ 공공의료 서비스 만족도	· 의료서비스 만족도
④ 5대 질환 사망자 수	· 인구 10만명 당 5대 질환 사망자 수
⑤ 자살 발생 수	·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
⑥ 스트레스 인지율	·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비율
⑦ 소아 예방접종률	· 만 12세 이하 어린이 중 예방접종 받은 수
⑧ 취약계층 건강검진 수검율	· 대상자(취약계층) 수 대비 수검자 수
⑨ 신체활동 실천율과 비만율	·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회 이상 한 비율 · 전체 인구의 비만 비율

(4) 적절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보장: 인권지표 5개

도시에서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은 적절한 주거환경과 함께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권리를 갖고 있다. 여기서 적절한 수준의 주거환경이란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 면적이나 주택 구성 등에 있어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주거환경을 의미한다. 즉, 단순히 집을 갖고 사는 것에서 떠나 모든 시민들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시민들의 수요에 맞게 적절한 수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시는 주거 취약계층들이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시는 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 공공시설과 서비스를 지역에 차별없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시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아가야 한다.

적절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보장 영역의 인권지표로는 ①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② 1인당 평균 주거면적, ③ 노숙자 인구수, ④ 공공임대주택 입주율, ⑤ 주거 환경 만족도로 구성할 수 있다.

[표 4-11] 적절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보장

인권지표	측정 방법
①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전체 주택 중 최저기준에 미달한 주택의 수
② 1인당 평균 주거면적	· 가구 수 대비 주택연면적의 총합
③ 노숙자 인구 수	· 인구 만 명당 노숙자의 수
④ 공공임대주택 입주율	·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수 대비 입주자의 수
⑤ 주거환경 만족도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주거환경(방수상태, 난방상태, 환기상태 등)의 만족도

(5) 폭력, 학대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사회 실현: 인권지표 4개

모든 시민은 자신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나 폭력으로부터 보호 받고,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성,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폭력과 학대, 방임으로부터 보호받고 구제받을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학대와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는 인간 삶의 기본적 권리 시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전시는 모든 시민이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차별 없이 보호받고, 구제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시는 가정, 학교, 직장 등 시민 삶의 영역에 있어 학대와 폭력, 방임 등과 같이 개인의 자유를 불합리하게 억압하는 행위가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또한 시는 시민을 폭력과 학대로부터 구제해줘야 할 기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나타나는지도 감시해야 한다. 이러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지 폭력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폭력, 학대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사회 실현 영역의 지표로는 ① 가정폭력 발생 및 구제 건수, ② 학교 폭력 발생 및 구제 건수, ③ 장애인 학대 발생 및 구제 건수, ④ 성폭력 발생 및 구제 건수로 구성할 수 있다.

[표 4-12] 폭력, 학대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사회 실현

인권지표	측정 방법
① 가정폭력 발생 및 구제 건수	· 천 세대 당 가정폭력 피해자 신고 및 상담 수 · 피해자 수 대비 구제건수
② 학교폭력 발생 및 구제 건수	· 학생 천 명당 폭력 피해자 신고 및 상담 수 · 피해자 수 대비 구제건수
③ 장애인 학대 발생 및 구제건수	· 장애인 천 명당 폭력 피해자 신고 및 상담 수 · 피해자 수 대비 구제건수
④ 성폭력 발생 및 구제건수	· 여성인구 천 명당 성폭력 피해자 신고 및 상담 수 · 피해자 수 대비 구제건수

(6) 자유롭고 평등하게 학습 받을 권리 보장: 인권지표 8개

교육은 오늘날 개인의 능력 개발과 나아가 개인적인 성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모든 시민은 적절하고 적합한 수준의 교육을 받고, 이를 학습할 권리가 있다. 시민의 교육권은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의무적인 교육에서부터 직업교육, 나아가 평생교육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학습 받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전시는 시민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시는 시차원의 노력 이외에 교육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게 학습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시는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한다.

자유롭고 평등하게 학습 받을 권리 보장 영역의 인권지표로는 ① 학급당 학생 수, ② 교원 1인당 학생 수, ③ 유치원 취원율, ④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⑤ 중·고등학생 학업 중단율, ⑥ 학업 스트레스, ⑦ 평생학습 편리성 및 다양성, ⑧ 지자체 교육예산 보조로 구성할 수 있다.

[표 4-13] 자유롭고 평등하게 학습 받을 권리 보장

인권지표	측정 방법
① 학급당 학생 수	· 학급당 학생의 수(초·중·고)
② 교원 1인당 학생 수	· 교원 1인당 학생 수(초·중·고·대)
③ 유치원 취원율	· 3~5세 인구 대비 유치원생 수
④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 전체 학생 중 무상급식 수혜학생의 수
⑤ 중·고등학생 학업 중단율	· 전체 학생 중 학업 중단 학생의 수
⑥ 학업 스트레스	· 학업활동으로 인한 부담감 및 스트레스 (초·중·고·대)(설문)
⑦ 평생학습 참여	· 인구 천 명당 평생교육 기관의 수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수 ·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 만족도(설문)
⑧ 지자체 교육예산 보조	· 학생 1인당 교육예산 보조금액

(7) 자유롭게 문화예술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 인권지표 5개

모든 시민은 다양한 문화적 창조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시민의 문화 예술에 대한 권리는 자유롭게 문화 예술 작품을 관람하고 즐길 권리부터 자신 스스로가 문화 예술 행위에 참여하여 다양한 창작활동을 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적절한 수준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 하다.

그러므로 대전시는 모든 시민이 다양한 문화적 창조활동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 대전시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문화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대전시는 시의 고유한 문화와 문화재를 보전·보호하고, 이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시는 시민들이 자유로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유롭게 문화예술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 영역의 인권 지표로는 ①문화 공간 접근도, ② 도서관 이용환경, ③ 문화예술 활동별 참여 횟수, ④ 취약계층 문화활동 수혜율, ⑤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표 4-14] 자유롭게 문화예술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

인권지표	측정 방법
① 문화 공간 접근도	· 인구 천 명당 문화 공간(공연시설, 전시실 등) 수
② 도서관 이용환경	· 인구 5만 명당 공공도서관의 수 · 작은 도서관 운영현황
③ 문화예술 활동별 참여 횟수	· 1년 동안 문화예술 활동별 참여 횟수
④ 취약계층 문화활동 수혜율	· 취약계층 인구 중 문화바우처 수혜자의 수
⑤ 문화예술 활동 지원	· 시의 문화예술 활동 예술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액

3)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1) 오염과 공해로부터 자유로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인권지표 7개

모든 시민은 생활환경에 있어 오염과 공해로부터 자유롭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대기 오염, 식수·지하수의 오염, 소음공해 등과 같은 환경오염과 공해로부터 보호된 자연과 자원에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므로 대전시는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기 오염, 수질오염 등과 같은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시는 도시의 발전에 있어 자연환경을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시는 개인이나 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엄격하게 관리 및 감시해야 한다.

오염과 공해로부터 자유로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영역의 인권지표로는 ① 대기오염도, ② 수질오염도, ③ 소음공해도, ④ 환경 피해민원 발생 및 구제, ⑤ 환경오염물질 배출, ⑥ 1인당 공원 면적 ⑦ 전반적 도시환경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될 수 있다.

[표 4-15] 오염과 공해로부터 자유로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인권지표	측정 방법
① 대기오염도	· 통합 대기환경지수
② 수질오염도	· 대전 주요하천의 수질 오염정도
③ 소음공해도	· 환경기준치 대비 소음공해 정도
④ 환경 피해민원 발생 및 구제	· 인구 천 명 당 피해민원이 발생한 수 · 전체 피해민원 중 구제건 수
⑤ 환경오염물질 배출	· 1인당 폐수발생량 ·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⑥ 1인당 공원 면적	· 1인당 공원면적
⑦ 전반적 도시환경에 대한 만족도	· 오염, 공해로부터 자유로운 정도(설문) · 시민들의 도시거주 환경에 대한 만족도(설문)

(2) 자유로운 여가시설의 이용과 여가생활을 누릴 권리: 인권지표 5개

모든 시민은 물질적·신체적 제약 없이 자유롭게 여가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여가생활을 누릴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시민의 여가생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여가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시민이 다양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가 교육 프로그램이나 동호회 등의 활성화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전시는 시민들 모두가 보다 편안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체육시설 및 여가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시는 시민들이 적절한 수준의 여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동호회 같은 여가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유로운 여가시설의 이용과 여가생활을 누릴 권리 영역의 인권지표는 ① 공공체육시설 이용 환경, ② 여가활동 시간, ③ 여가프로그램, ④ 동호회 활동, ⑤ 여가생활 만족도로 구성할 수 있다.

[표 4-16] 자유로운 여가시설의 이용과 여가생활을 누릴 권리

인권지표	측정 방법
① 공공체육시설 이용환경	· 시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의 수 · 시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의 면적
② 여가활동 시간	· 시민 1인당 주당 여가활동 시간
③ 여가 프로그램	· 공공기관의 여가관련 프로그램 운영 수
④ 동호회 활동	· 전체 시민 중 동호회 활동을 하는 시민 비율
⑤ 여가생활 만족도	· 시민의 여가생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설문)

(3) 장벽 없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인권지표 7개

모든 시민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도시를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시민의 이동의 권리는 대중교통,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 등의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과 관련 있다. 그리고 나아가 이동권은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은 교통약자들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또한 포함한다.

그러므로 대전시는 모든 시민들이 장벽없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 시는 안전한 보행환경, 편안한 자전거, 자동차 이용환경을 조성해야한다. 그리고 시는 교통약자들이 편안하게 도시를 이동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교통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시는 모든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요금을 책정해야 한다.

장벽없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영역과 관련된 인권 지표는 ① 보행자 사망자 수, ② 자전거 도로현황, ③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환경, ④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율, ⑤ 시각장애인 보행시설 설치율, 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⑦ 도시 이동환경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할 수 있다.

[표 4-17] 장벽 없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인권지표	측정 방법
① 보행자 사망자 수	· 시민 천면 당 보행 중 사망자 수
② 자전거 도로현황	· 자전거 도로 총연장 길이(km)
③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환경	· 전체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의 비율 · 전체 택시 중 전용택시의 비율
④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율	· 법적 기준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⑤ 시각장애인 보행시설 설치율	· 음향신호기 설치율 · 점자보도블럭 설치율
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 BF 인증 시설의 수
⑦ 도시 이동환경에 대한 만족도	· 시민들의 도시 이동환경에 대한 만족도(설문)

(4) 유해환경, 범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인권지표 6개

모든 시민은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시민의 안전권은 생활 전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재해, 범죄, 교통사고, 유해환경 등으로 부터의 안전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시민은 자신의 안전을 요구하는 한편,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대전시는 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상황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시는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이 범죄와 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시는 효율적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검찰, 경찰, 소방서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유해환경, 범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영역의 인권지표는 ① 범죄 발생 및 검거율, ② CCTV 설치대수, ③ 교통안전도, ④ 소방인력 충원율, ⑤ 유통식품 안정성, ⑥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표 4-18] 유해환경, 범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인권지표	측정 방법
① 범죄발생 및 검거율	· 인구 만명당 범죄발생 건수 · 범죄 검거율
② CCTV 설치대수	· 도시의 CCTV 설치 대수
③ 교통안전도	· 자동차 만대당 교통사고의 발생건수
④ 소방인력 충원율	· 소방인력 수요 대비 소방인력의 수
⑤ 유통식품 안전성	· 부적합 식품의 검사율
⑥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 전반적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4)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의 도시

(1) 시민의 ‘인간다운 삶’ 을 위한 최저 생활의 보장: 인권지표 5개

모든 시민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 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최저 생활의 보장은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의 영역에서부터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인 영역 모두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전시는 시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사회복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 누구나 평등하게 도시의 사회보장 제도를 이용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시는 경제적 취약 계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의 도시 영역의 인권지표는 ① 절대적/상대적 빈곤율, ② 기초생활보장, ③ 결식아동의 비율, ④ 사회복지예산, ⑤ 국민연금으로 구성할 수 있다.

[표 4-19] 시민의 ‘인간다운 삶’ 을 위한 최저 생활의 보장

인권지표	측정 방법
① 절대적/상대적 빈곤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가구 중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비율 · 전체 가구 중 중위소득의 50%미만인 가구 비율
② 기초생활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생계비 이하 인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 ·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1인당 급여액
③ 결식아동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0~18세 인구 중 결식 인구의 비율
④ 사회복지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예산 중 복지예산의 비율
⑤ 국민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대상자 중 가입자의 수 ·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

(2) 여성의 권리 보장과 성 평등 실현: 인권지표 6개

모든 시민은 자신의 성별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있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성별에 관계없이 다양한 영역에 있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권리가 있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여성의 권리 보장과 성 평등의 실현은 도시 인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전시는 여성의 권리보장과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들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성 인지적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시는 공공기관, 기업에서 성별을 근거로 한 차별이 나타나는 지 감시·관리해야 한다. 또한 시는 이러한 성 평등 정책 이외에 여성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성의 권리보장과 평등 실현 영역의 인권지표는 ①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 ② 시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③ 여성의 노동조건, ④ 경력단절여성의 비율, ⑤ 아동보육시설 설치율, ⑥ 산전 휴가 및 육아 휴직 이용 가능성로 구성할 수 있다.

[표 4-20] 여성의 권리 보장과 성 평등 실현

인권지표	측정 방법
①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	· 5급이상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의 비율
② 시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 전체 위원 중 여성 위원의 비율
③ 여성의 노동조건	· 여성 대졸자의 취업률(남성과 비교) ·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남성과 비교) · 여성의 평균임금(남성과 비교)
④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	· 비 취업 여성 중 결혼, 육아,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여성의 비율
⑤ 아동보육시설 설치율	· 만 0~5세 인구 100명 당 보육시설의 수 · 직장 내 아동 보육시설의 설치 수
⑥ 산전 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	· 휴가, 휴직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설문) · 휴가, 휴직 이용 용이도 에 대한 만족도(설문)

(3) 아동, 청소년, 노인이 적절한 수준의 돌봄을 받을 권리 보장: 인권지표 6개

모든 시민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원하는 사회적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이러한 시민에 대한 사회적인 돌봄은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돌봄이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전시는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시는 사회적 보장이 필요한 사람들을 단순히 복지혜자의 수혜자로만 인식하면 안 되며, 이들을 권리의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아동, 청소년, 노인이 적절한 수준의 돌봄을 받을 권리 보장 영역의 인권지표는 ① 아동생활시설 종사자 1인당 아동수, ②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률, ③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 ④ 노인 취업률, ⑤ 노인 요양의료 수혜율, ⑥ 무의탁 독거노인 비율로 구성할 수 있다.

[표 4-21] 아동, 청소년, 노인이 적절한 수준의 돌봄을 받을 권리 보장

인권지표	측정 방법
① 아동생활시설 종사자 1인당 아동수	· 시설 종사자 1인이 담당하는 아동의 수
②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률	· 만 0~18세세 인구 중 센터 이용자의 수
③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	· 위기청소년 중 지원서비스 수혜자의 수
④ 노인 취업률	· 65세 인구 중 취업자의 수
⑤ 노인 요양의료 수혜율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중 재가시설 급여를 수혜받고 있는 사람의 수
⑥ 무의탁 독거노인 비율	· 65세 인구 중 무의탁 독거노인의 수

(4)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권리 보장: 인권지표 5개

모든 시민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단순한 차별 철폐를 넘어 모든 장애인들은 자신 스스로가 자립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누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 차별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장애인들이 적절한 수준의 교육과 노동 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권리 보장 영역의 인권지표는 ① 장애인 복지시설의 수, ② 장애인 특수/통합학교의 설치율, ③ 장애인 채용률, ④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시간, 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설치율로 구성할 수 있다.

[표 4-22]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권리 보장

인권지표	측정 방법
① 장애인 복지시설의 수	· 전체 등록 장애인 천 명당 복지시설의 수
② 장애인 특수/통합학교의 설치율	· 전체 학교(대학제외) 수 대비 설치 학교 수
③ 장애인 채용률	· 공공부문의 장애인 채용률 ·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률
④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시간	· 중증 장애인 1인당 활동보조시간
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설치율	· 3급 이하의 장애인 수 대비 직업재활시설의 정원 수

(5)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인권지표 5개

모든 시민은 종교, 언어, 문화,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자신의 취향에 맞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오늘날처럼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은 도시 인권 실현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가 존중받는 사회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전시는 인종, 종교 등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공동체 속에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시는 외국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도시의 다양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 표기나 언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영역의 인권지표로는 ① 소수자에 대한 관용도, ② 외국인의 차별 경험, ③ 외국인의 생활만족도, ④ 다문화 가족 지원프로그램 참여율, ⑤ 외국인 언어 소통권으로 구성할 수 있다.

[표 4-23]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인권지표	측정 방법
① 소수자에 대한 관용도	· 시민의 외국인 및 소수자에 대한 포용 및 관용도(설문)
② 외국인의 차별경험	· 대전시 거주 외국인 중 차별정도 및 경험의 인식정도(설문)
③ 외국인의 생활만족도	· 대전시 거주 외국인들의 생활 만족도(설문)
④ 다문화 가족 지원프로그램 참여율	· 전체 다문화 가족 중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의 수
⑤ 외국인 언어 소통권	· 공공시설 중 다국어 표기된 시설의 수 · 공공시설 중 언어통역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시설의 수

5)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연대의 도시: 인권지표 12개

(1) 민주시민으로서의 사회참여: 인권지표 4개

헌금, 자원봉사, 헌혈 등과 같은 시민의 사회적 참여는 민주적 원리의 실천과 보다 나은 지역사회 건설에 있어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즉, 진정한 의미의 인권도시 건설은 단순히 시 차원의 인권환경 조성 이외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한 관심 등을 통해 이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전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회참여에 관한 현황을 정리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는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사회참여 영역의 인권지표는 ① 투표율, ② 자원봉사 등록률 및 활동률, ③ 평균 자원봉사 횟수 및 시간, ④ 헌혈봉사 참여율로 구성할 수 있다.

[표 4-24] 민주시민으로서의 사회참여

인권지표	측정 방법
① 투표율	· 선거별 투표율(부정기)
② 자원봉사 등록률 및 활동률	· 전체 인구 수 중 자원봉사자 등록률 · 자원봉사 등록 인구 중 실제 활동인구 비율
③ 평균 자원봉사 횟수 및 시간	· 1인당 평균 자원봉사 횟수 · 1인당 평균 자원봉사 시간
④ 헌혈봉사 참여율	· 전체 인구수 대비 헌혈실적

(2)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 신뢰: 인권지표 5개

지역 사회 내 구성원 들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형성된 지역 공동체는 지역의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공동체를 바탕으로 형성된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신뢰감은 사람들 간 유대를 강화시켜줌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다. 이처럼 지역 속 시민들 간 관계망의 형성과 시민들 간 사회적 신뢰,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역사회 공동체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다양한 지역공동체들이 붕괴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전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동체 사업 지원, 시민 간 관계 형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 신뢰 영역의 인권지표는 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정도, ② 공동체 사업실적, ③ 사회적 소통에 대한 인식, ④ 사회적 관계망, ⑤ 사회적 신뢰로 구성할 수 있다.

[표 4-25]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 신뢰

인권지표	측정 방법
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정도	· 시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의 정도(설문)
② 공동체 사업 실적	· 대전사회적자본센터 공동체 사업 실적
③ 사회적 소통에 대한 인식	· 사회적 소통의 정도
④ 사회적 관계망	· 위기 상황 시 사회적으로 도움 받을 사람의 수
⑤ 사회적 신뢰	· 일반인에 대한 신뢰감

(3)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 인권지표 3개

자본주의가 고도화됨에 따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목적을 둔 사회적 경제가 발전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는 ‘사람과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경제’ 이자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도시의 건설에 있어 이와 같은 사회적 경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대전시는 이와 같은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현황을 정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사회적 경제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 영역의 인권지표는 ① 사회적 경제조직의 수, ② 사회적 일자리의 수, ③ 사회적 경제의 성장률로 구성할 수 있다.

[표 4-26]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

인권지표	측정 방법
①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수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수
② 사회적 일자리의 수	· 사회적 경제 조직 종사자의 수
③ 사회적 경제의 성장률	· 사회적 경제 조직별 성장률 · 사회적 경제 조직별 매출액

6) 도시의 인권환경 개선을 위한 인권정책: 인권지표 4개

□ 인권문화 실현과 인권환경 개선을 위한 인권행정: 인권지표 4개

대전시는 시민의 다양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시의 인권문화 실현과 인권환경 개선을 위한 인권행정을 실시해야 한다. 시의 인권행정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부터, 시민의 인권관련 활동 지원, 국내외 단체와의 인권협약 체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시의 인권행정은 시민의 인권 의식을 제고하고, 도시의 인권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의 인권환경 개선 이외에 국내외 다양한 단체와의 인권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국내외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인권문화 실현과 인권환경 개선을 위한 인권행정 영역의 인권지표는 ① 인권교육 참여율, ② 민간분야 인권관련 활동지원, ③ 국내 민관 인권협약체결건수, ④ 인권행정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될 수 있다.

[표 4-27] 인권문화 실현과 인권환경 개선을 위한 인권행정

인권지표	측정 방법
① 인권교육 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인구 중 인권교육 참여자의 수 · 전체 공무원 중 인권교육 이수자의 수 · 인권교육 실시 초·중·고의 비율
② 민간분야 인권관련 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분야 인권관련 활동 지원 건수 · 민간분야 인권관련 활동 지원 액수
③ 국내 민관 인권협약체결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민관 기관과의 인권협약 체결 건수
④ 인권행정에 대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 인권행정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설문)

지금까지 6대 영역 22개 실천조항의 120개 인권지표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120개 인권지표 전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28] 대전형 인권지표(120개)

1	이념, 종교, 사상의 자유	2	집회 및 결사의 자유
3	표현의 자유	4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5	행정 정보공개율	6	시민의 행정참여정도
7	시민자치실현을 위한 제도 도입	8	시민사회단체의 조직률
9	단체장의 리더십	10	고용률
11	실업률	12	고용안정성
13	노동조합 조직률	14	산업재해 발생 수
15	부당노동행위 발생 수	16	체불 임금 발생 및 구제 건수
17	직업훈련 교육	18	지역내 총생산 및 1인당 GRDP
19	도시 성장률	20	소득수준
21	소비생활	22	보건 의료 인력
23	보건의료시설	24	공공의료 서비스 만족도
25	5대질환 사망자 수	26	자살 발생 수
27	스트레스 인지율	28	소아예방접종률
29	취약계층 건강검진 수검율	30	신체활동 실천율과 비만율
31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32	1인당 평균 주거면적
33	노숙자 인구 수	34	공공임대주택 입주율
35	주거환경 만족도	36	가정폭력 발생 및 구제 건수
37	학교폭력 발생 및 구제 건수	38	장애인 학대 발생 및 구제건수
39	성폭력 발생 및 구제건수	40	학급당 학생 수
41	교원 1인당 학생 수	42	유치원 취원율
43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44	중·고등학생 학업 중단율
45	학업 스트레스	46	평생학습 참여
47	지자체 교육예산 보조	48	문화 공간 접근도
49	도서관 이용환경	50	문화예술 활동별 참여 횟수
51	취약계층 문화활동 수혜율	52	문화예술 활동 지원
53	대기오염도	54	수질오염도
55	소음공해도	56	환경 피해민원 발생 및 구제
57	환경오염물질 배출	58	1인당 공원 면적
59	전반적 도시환경에 대한 만족도	60	공공체육시설 이용환경

61	여가활동 시간	62	여가 프로그램
63	동호회 활동	64	여가생활 만족도
65	보행자 사망자 수	66	자전거 도로현황
67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환경	68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율
69	시각장애인 보행시설 설치율	7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71	도시 이동환경에 대한 만족도	72	범죄발생 및 검거율
73	CCTV 설치대수	74	교통안전도
75	소방인력 충원율	76	유통식품 안전성
77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78	절대적/상대적 빈곤율
79	기초생활보장	80	결식아동 비율
81	사회복지예산	82	국민연금
83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	84	시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85	여성의 노동조건	86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
87	아동보육시설 설치율	88	산전 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
89	아동생활시설 종사자 1인당 아동수	90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률
91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	92	노인 취업률
93	노인 요양의료 수혜율	94	무의탁 독거노인 비율
95	장애인 복지시설의 수	96	장애인 특수/통합학교의 설치율
97	장애인 채용률	98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시간
99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설치율	100	소수자에 대한 관용도
101	외국인의 차별경험	102	외국인의 생활만족도
103	다문화 가족 지원프로그램 참여율	104	외국인 언어 소통권
105	투표율	106	자원봉사 등록률 및 활동률
107	평균 자원봉사 횟수 및 시간	108	헌혈봉사 참여율
109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정도	110	공동체 사업 실적
111	사회적 소통에 대한 인식	112	사회적 관계망
113	사회적 신뢰	114	사회적 경제조직의 수
115	사회적 일자리의 수	116	사회적 경제의 성장률
117	인권교육 참여율	118	민간분야 인권관련 활동지원
119	국내 민관 인권협약체결건수	120	인권행정에 대한 만족도

5장

대전형 인권지표의 활용방안

1절 기본방향

2절 인권지표의 활용방안

5장 대전형 인권지표의 활용방안

1절 기본방향

1. 인권지표의 활용원리

측정된 인권지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대전시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1단계에서는 시민들의 주관적 인권의식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인 설문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설문 문항의 선정 및 설문지의 작성은 인권 관련 전문가 회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앞서 살펴본 대전형 인권지표의 세부항목을 바탕으로 기존 자료에서 얻을 수 없는 자료들에 대한 설문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즉, 이와 같은 설문 조사는 기존의 자료를 보완하고, 특히 시민의 주관적 인식과 같은 정성평가 영역의 다양한 자료를 습득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설문을 구성하고, 구성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대전형 인권지표의 정책활용에 있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지표개선을 통해 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연구에서 진행된 인권지표의 선정은 기초 연구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이러한 내용을 보다 개선하여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표의 개선은 단순히 한 시점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지표가 측정되는 매년마다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즉, 지표의 측정과정에 있어 보다 성공적인 측정을 위해서는 변화된 사회 환경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지표의 개선을 통해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나아가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대전시의 전반적인 인권 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등과 같은 정책의 전 과정에 지표를 활용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인권지표의 정책 활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인권지표 개발과 적용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광주시의 경우 인권지표의 활용이 단순히 도시의 인권수준을 파악하는 단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인권도시 광주를 위한 도시 인권정책의 수립부터 시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전 과정에 있어 인권지표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광주시는 보다 시의 인권상황에 적합한 인권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미래 도시 인권정책의 비전도 설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전시 또한 인권지표를 대전 인권정책의 전 과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인권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2. 인권지표 설정 목적 및 핵심 이슈

대전시 인권지표는 대전시 현실에 맞는 행정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 정책 수립과 시행, 평가 등에 활용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여 최종적으로는 미래 대전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에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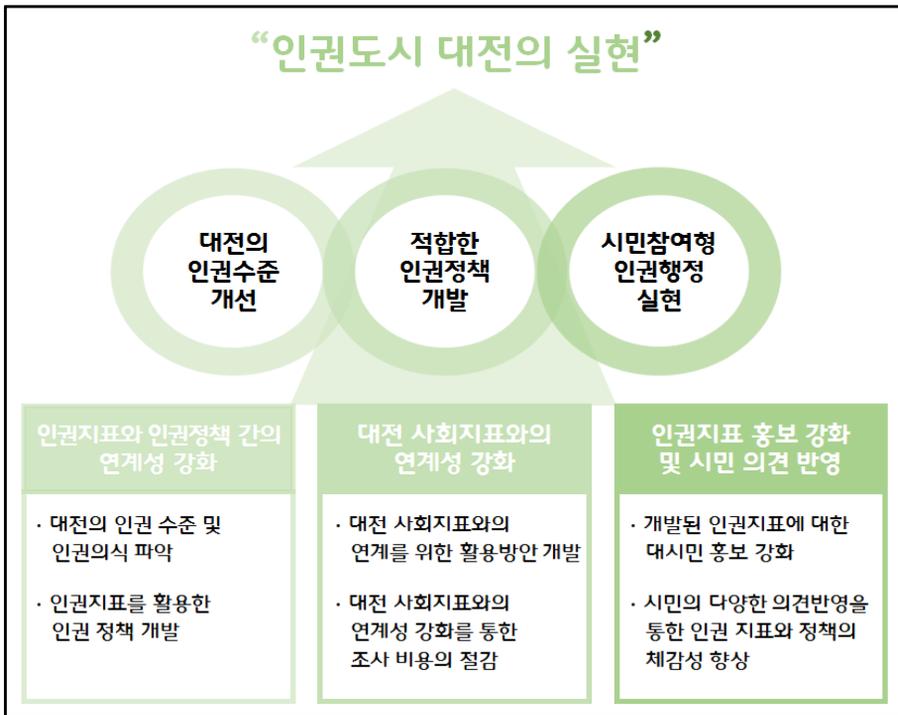
이러한 목적의 실현을 위해 앞서 살펴 본 단계에 맞게 대전시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인권지표를 개발 하고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대전시 인권지표의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인권지표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인권지표는 대전시의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결국 이와 같은 인권지표의 개발과 활용을 통해 대전시 인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인권정책에 대한 시민의 체감도를 제고함으로써 대전 시민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인권지표 운용의 기본방향

대전 인권지표가 단순히 대전의 인권 수준 및 대전 시민의 인권 의식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전 시정에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향후 대전 인권지표 운용의 기본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대전 인권지표를 보다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권 정책과의 연계성, 자료 수집에 있어 기존 대전 사회 지표의 활용가능성, 홍보, 시민의 의견 반영 등 다양한 영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전 인권 지표 운용의 기본 방향을 ① 대전 인권 정책과의 연계성, ② 대전 사회지표의 활용가능성 및 대전 사회조사를 활용한 자료수집, ③ 인권지표의 홍보, ④ 시민 의견을 반영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림 5-1] 대전 인권지표 활용의 목적 및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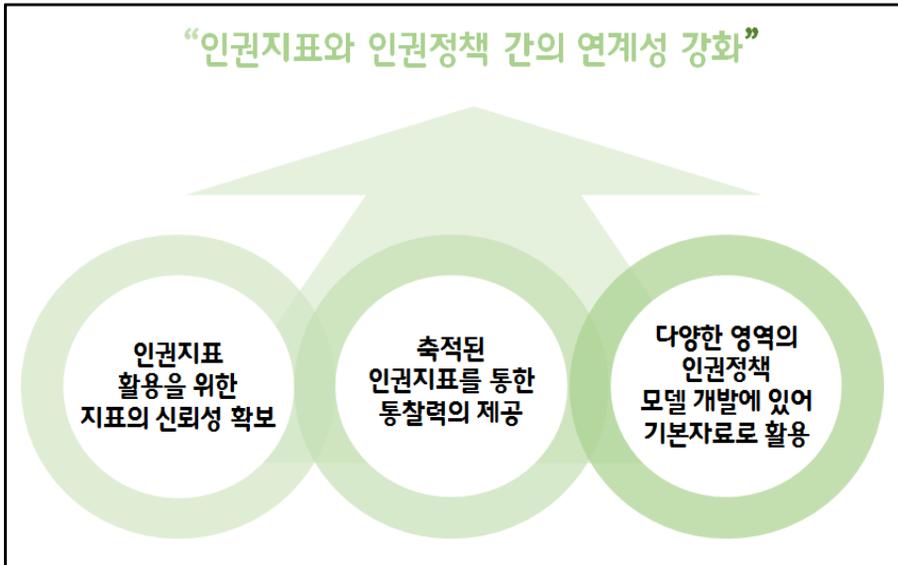
1) 대전 인권지표와 인권 정책 간의 연계성 강화

대전 인권지표는 단순히 대전시의 인권 수준을 파악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인권정책에 활용하여, 대전시에 보다 적합한 인권정책을 개발하고 나아가 대전의 인권 수준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권지표와 인권정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대전 인권지표가 인권 정책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표의 대시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인권지표가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정책에 활용하게 된다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책의 시행에 있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권지표의 신뢰성 확보가 정책과의 연계에 있어 중요한 과제라 볼 수 있다. 인권지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과 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표가 선정되고, 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대전 인권지표는 대전시의 과거, 현재, 미래의 전반적인 인권 수준을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을 줄 수 있는 자료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 만약 인권지표에 대한 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날 경우, 대전시 인권에 대한 시계열적인 분석이 불가능하며, 무엇보다 변화한 사회 환경에 맞춘 효과적인 인권 정책의 개발이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인권지표는 매년 적절한 조사방법을 선택하여 조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대전 상황에 맞는 인권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나아가 변화하는 대전 인권환경에 맞춘 미래 대전 인권 비전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전 인권지표를 정책 평가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여,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다. 인권은 앞서도 이야기 했듯이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그 영역의 폭이 매우 넓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지표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대전 시정의 경제, 사회·문화, 주거,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 영역, 시책의 중요도, 기간, 환경,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책 모델을 개발하는데, 대전 인권지표가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2] 대전 인권지표와 인권 정책 간의 연계성 강화

2) 대전 사회지표를 활용한 인권지표 자료의 수집

「대전의 사회지표」는 대전시민의 삶의 질과 사회 변화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나아가 시민 참여 기반의 정책을 설정하기 위한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발간되었다. 2016년을 기준으로 대전 사회지표의 영역은 인구, 가족, 소득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교통, 과학기술, 환경, 사회복지, 문화·여가, 안전, 공동체 총 1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수 영역으로 청년 및 1인 가구가 있다.

그리고 대전 사회지표는 정량 지표이외에 정성 지표들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대전시의 객관적 사회환경 및 시민들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는 데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대전 사회 지표의 영역 중 가족, 소득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교통, 환경, 사회복지, 문화·여가, 안전, 공동체 영역은 인권지표에 포함되는 영역인 만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 지표에 있어 대전 사회지표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안을 제안할 수 있다.

(1) 1안: 대전 사회지표의 기본적인 자료만 활용, 별도의 설문조사 실시

1안은 인권지표의 지표 수집에 있어 대전 사회지표에 포함된 자료를 활용하되, 나머지 부족한 자료는 ‘대전 인권 조사(가칭)’ 라는 별도의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자료를 수집할 경우 설문지 구성에 있어 인권 관련 내용을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렇게 별도의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할 경우, 매년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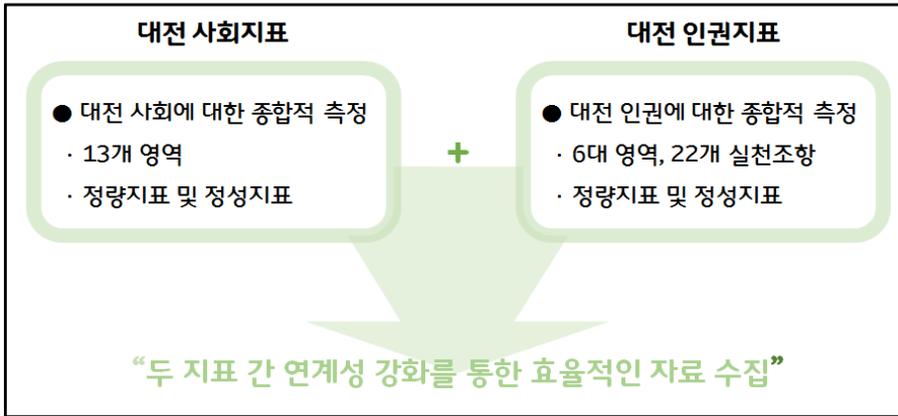
그러므로 1안의 경우 시에 별도의 가용예산이 존재하여, 별도의 인권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2) 2안: 대전 사회지표 자료 활용, 대전 사회조사 시 인권조사 병행 실시

2안은 1안처럼 대전 사회 지표의 기본적인 자료를 활용하되, 나머지 부족한 자료를 별도의 조사를 통해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 사회 조사 시 인권항목을 넣어 자료를 수집하는 방안이다.

앞서 120대 세부 인권 지표 항목 중 대부분의 정량지표는 기존에 있는 자료들이며, 인권관련 정성지표들만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의 습득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설문조사가 필요한 정성지표들을 정리하여 별도의 인권조사를 실시하기 보다는 대전 사회조사의 영역에 인권영역을 추가 하여, 함께 조사를 할 경우 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대전 사회조사의 경우 표본 수가 많은 지역 조사 중 하나인 만큼 대전 사회조사를 활용할 경우 보다 정확한 시민의 인권 의식을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대전 사회조사의 한 영역으로 인권영역을 추가하여 조사할 경우, 대전 사회지표의 구성에 있어 인권영역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대전 사회지표는 종합적인 대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표인 만큼 인권 지표의 세부적인 내용 모두를 추가할 수는 없고, 인권에 대한 시민들의 주관적 의식 수준이나 인권행정에 대한 만족도 정도만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3] 대전 사회지표를 활용한 인권지표 자료의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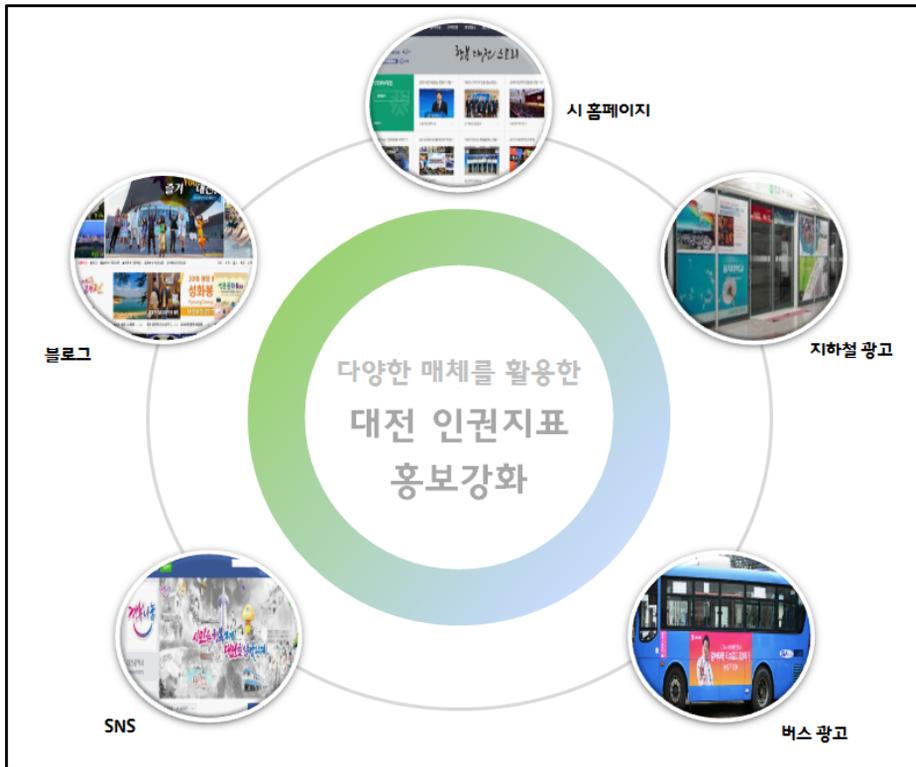
3)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전 인권지표에 대한 홍보

시민 참여형 인권 지표의 개발과 인권 지표에 대한 대시민 체감성 향상을 위해서는 인권지표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 인권지표에 대한 홍보는 향후 인권지표의 개발 과정부터 조사 결과까지 전 과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인권지표 개발 과정에서의 홍보는 인권지표 개발에 있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조사에 있어 인권지표에 대한 홍보는 보다 원활한 조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권지표 조사 결과에 대한 홍보와 공유를 통해 대전시의 인권 수준 및 시민 인권 의식을 알리고, 정책적 활용이외에 교육, 연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지표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지표를 대전시민 모두가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인권지표를 홍보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인권 지표의 홍보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시 홈페이지에 인권지표와 관련 전반적 내용을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시 홈페이지는 대전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 홈페이지 인권관련 글을 게시하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인권관련 정보와 조사의 결과물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버스 음성광고, 지하철 광고 등을 활용하여, 인권지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을 활용하여, 인권지표를 홍보한다면 인권 지표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보다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SNS, 대전시 공식 블로그 등과 같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홍보를 통해 인권 지표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인권지표의 홍보를 통해 인권 지표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대전 시민 모두가 인권지표의 결과를 공유하여, 보다 정확한 대전시의 인권 수준과 인권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 결국 인권지표의 활용 범위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표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4]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전 인권지표에 대한 홍보

4) 인권지표의 시민 체감성 향상을 위한 시민참여형 지표개발

인권이란 시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생활에 있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인 만큼 인권지표에 있어 시민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즉 시민의 체감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권지표의 구성에서 향후 관리와 평가까지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지향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권지표의 개발과정에서부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표의 영역과 세부 지표 설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지표 개발에 있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나 워크숍, 설명회 등을 개최해야 하며, 시민들의 욕구와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인권 지표는 변화하는 지역사회의 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만큼, 인권지표의 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이러한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인권 지표의 구성에 있어 정량적 지표 이외에 정성적 지표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시는 이러한 시민의 인권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인권의 다양한 영역에 있어 어떠한 영역에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지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인권지표의 개발, 관리, 평가 등 전 과정에 있어 시민들의 참여는 지표의 신뢰성을 제고시켜줌과 동시에 지표의 시민 체감성을 향상시켜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전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시민 참여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와 시민이 함께하는 인권지표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 갈 것이다.

2절 인권지표의 활용방안

대전 인권지표는 종합적인 대전의 인권수준 및 시민의 인권의식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우선, 조사된 인권지표를 정리하여 대전의 인권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을 발간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정책 수립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권 지표 또한 지역의 통계 중 하나로 인권 지표와 다양한 지표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역 통계 생산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권 지표의 보다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 담당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인권 지표의 조사, 정리, 활용 등 인권 지표의 전 영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개발될 지표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활용을 위해 몇 가지 활용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1. (가칭) 대전 인권지표집 발간

개발된 대전 인권지표를 모든 시민이 공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사된 인권지표의 정보를 담은 지표집을 발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표집의 발간은 조사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모든 시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대전의 인권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러한 인권 지표에 대한 조사 이후 지표집을 발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광주시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광주시는 100대 인권 지표를 매년 측정하여, 이를 한 곳에 묶어 지표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표집의 발간을 통해 광주시는 광주의 인권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매년 지표집을 발간함으로써 도시 인권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여 미래 광주의 인권 수준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전 또한 개발된 인권지표를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하고, 시민과 그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지표집의 발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발간되는 대전 인권지표집에는 직접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지표들의 세부적인 사항을 게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외에 지표집의 발간에 있어 몇가지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필요하다.

우선 지표집 발간에 있어 지표의 분석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각 개별 지표마다 지표수치가 나타나는 배경이나 원인, 그리고 향후 예측에 대한 설명 범위와 분석수준에 따라서 지표집의 성격이 크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개별 지표의 분석 수준을 고려하여 지표집을 발간해야 한다.

2. 지표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해 지역통계생산 기반 구축

대전 인권지표의 120대 세부 항목 중 정량 지표의 대부분은 『대전 통계연보』나 『대전 사회지표』 등에서 생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지표들이다. 그러므로 대전 인권지표의 개발 이후 자료의 활용에 있어 기존 지표 간의 연계성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 볼 수 있다.

지역 지표 간의 연계성 강화는 단순히 지표 수집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통계 생산의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 지역의 통계는 지방 자치단체 및 관련기관들(교육청, 문화원 등)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통계들이 정책에 있어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대전 인권지표와 다른 지표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 통계 생산 기반 구축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전 인권 지표의 영역은 경제, 사회·문화, 주거, 환경, 공동체, 교육 등 지역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즉, 대전 인권지표의 자료 수집 과정은 단순히 ‘인권지표’의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지표를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인권지표를 통한 지표 간 연계성의 강화와 지역 통계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향후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통계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책에 활용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지역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²³⁾들 모색되고 있는데, 인권지표 또한 이러한 다양한 논의들을 참고 하여 생산되어야 할 것이다.

3. 인권 지표를 활용한 인권 지수 개발

지수는 개별 변수의 측정된 값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한 값으로 개별 변수의 상대적 위치를 측정하는 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지표의 상위 개념으로 이해되곤 한다.

대전 인권지표의 경우 120개의 각 세부 인권지표 항목들이 지역 사회 내 인권과 관련된 각종 현황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 인권지표를 통해 지역 사회의 인권발전 수준의 한 국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전반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다만, 대전 인권지표는 한 국면만 보여줄 뿐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얼마나 대전 지역의 인권수준이 변화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인권지표가 보여주는 지역사회의 인권상황이 지표의 자료가 수집된 시점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결국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역사회 인권수준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는 인권지수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인권지표의 지수화는 복잡한 사회현상을 단순화하고, 관련 지표를 종합하여 인권에 관한 보다 정리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23) 예를 들어 각 지자체들이 통계청의 교육이나 기술 자문 등을 받고, 이를 통해 지역의 사회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기관의 자문외에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사회에 맞는 통계를 생산해 낼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 통계 생산 방안에 대한 모색은 보다 지역 사회에 적합한 통계를 생산해 내고, 효율적으로 지역의 정책 개발에 있어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지방 자치단체 중 인권 지표의 개발에 있어 가장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광주시의 경우에도 인권지표의 개발과 함께 지표의 지수화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는 측정단위가 다른 지표들을 표준화하여, 표준점수로 환산한 후 통합된 단위의 지수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표의 지수화에 관한 3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논의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1] 광주 인권지표의 지수화 방안

구분	내용
1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최적수준(100)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비교 - 최적수준에 대한 기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 - 최적수준에 도달하는 과정과 도시 간 비교 평가 활용에 유용 - 지수 100에 대한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2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년도 대비 인권상황 개선도 - 산출방법: 특정시기를 기준(100)으로 삼아 지표별 개선률을 합산하여 지표수로 나눈 평균 개선도를 산출 - 현재 광주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수화 방안
3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설문조사에 의한 정성적 인권체감지수 - 시민이 느끼는 체감도로서 현실의 인권상황을 반영기준 값에 대한 개별 지표

자료: 김재철 외(2011).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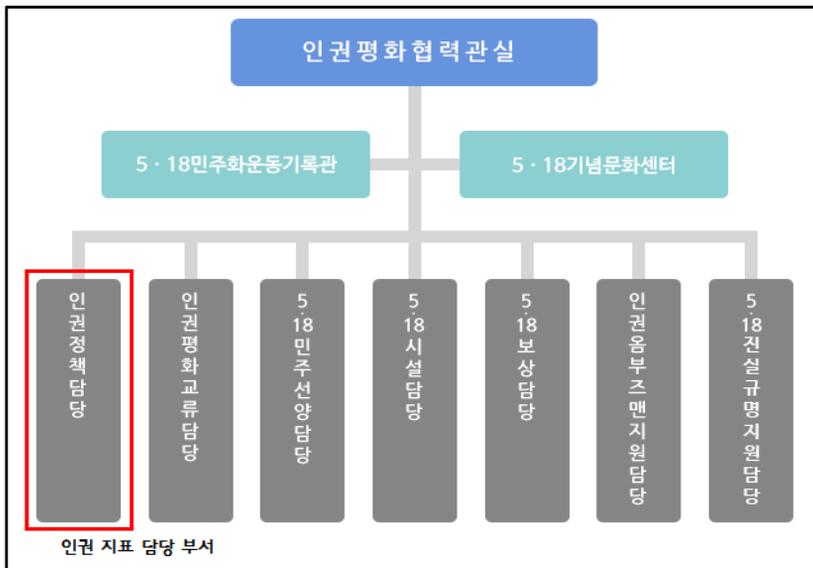
광주시는 이와 같은 인권 지표의 지수화를 통해 인권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산출된 인권지수는 종합적인 인권 수준의 변화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권정책의 수립 및 집행, 평가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지수화를 통해 100개의 인권지표를 단순화하여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명확하게 지역의 인권수준 변화를 인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전시도 120개의 인권지표의 지수화에 관한 논의가 나타나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상 인권 지표의 지수화에 관한 논의는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광주시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복잡한 지표를 지수화 함으로써 정책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지역 사회의 인권수준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4. 인권지표 조사 분석 전담 부서 운영

대전 인권지표가 보다 성공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인권지표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전담부서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인권지표의 영역이 매우 다양하고, 세부 지표 항목이 120개나 되므로 이를 정리하고 수집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조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 지표 전담 부서는 단순히 인권지표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에 그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인권 수준 개선을 위한 인권 정책을 제안하고, 개발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광주시의 경우 ‘인권평화협력관’ 이라는 인권전담부서를 전국 최초로 2014년에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권평화협력관은 기록관 1개, 1개 센터, 7개 팀, 31개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광주시청홈페이지, 2017년 11월 기준). 7개의 팀 중 현재 인권지표 및 인권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로 ‘인권정책팀’ 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정책팀에서는 인권지표 실천 계획부터 인권 정책의 개발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5-5] 광주 인권평화협력관실의 조직도

자료: 민주인권포털 홈페이지. “<http://www.gjhr.go.kr>” . 검색일: 2017. 11.22

대전시도 보다 성공적인 인권지표의 조사 및 분석과 평가, 인권정책의 개발을 위해서는 광주시처럼 인권 지표 및 인권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전시의 상황을 고려할 경우 광주시처럼 인권 평화협력관실이라는 지역의 전반적인 인권 업무를 포괄하는 규모의 조직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대전시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의 인권교육, 국제교류 등을 담당하는 종합 부서를 신설하기 보다는 인권지표 실천계획 수립, 인권 지표 조사 및 분석, 지표 평가,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단일한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인권지표의 활용방안 이외에 인권지표는 향후 국내외 다양한 도시 간 인권수준 비교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의 미래 비전 수립, 균형발전계획 등 다양한 영역의 정책 개발에 있어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전시는 이와 같이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가진 인권지표를 보다 성공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실시해야 하며, 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참고 문헌

■ 국내 연구

- 강수택, 김중섭, 백재홍(2009). 『대학 인권지표 개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광역시(2012). 『광주 인권지표』.
구정우, 공석기, 박병진(2011). 『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국가인권위원회.
김승원 외(2008). 『한국인의 행복 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재철 외(2011). 『광주인권도시 기본 계획』. 광주광역시.
남주하 외(2013). 『한국의 국민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국가미래연구원.
대한민국정부(2014). 『2012~2016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
류은숙(2009). 『인권을 외치다』. 푸른숲
문승원(2008). 『사회권 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박노동(2014). 『대전인권증진의 비전과 발전방안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박노동(2016). 『대전형 행복지수 구축방안』. 대전세종연구원.
정근식, 서승, 정용화, 이정은(2004). 『한국형 인권지표의 모색』. 경인문화사.
통계청(2013). 『지역사회지표 작성매뉴얼』.

■ 국외 연구

- Hass, Michael. 1994. 『Improving Human Rights』. London. Praeger.
Humana. Chales. 1992. 『World Human Rights Guide』. Oxford University Press
Landman, Todd. 2004. “Measuring Human Rights: Principle, Practice, and Policy” . *Human Rights Quarterly* 26: 906-31.
Landman, Todd. 2006. 『Studying Human Right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OECD. 2016. 『2015 How' s Life?』.
UNDP. 2017. 『Human Development Report 2016』.

■ 선언문

세계인권선언(1948. 12. 10)

유럽도시선언(1992. 3. 18)

■ 인터넷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 검색일 2017. 07.04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 .

네이버 지식백과, “인권” , 검색일(2017. 06. 1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36851&cid=46634&categoryId=46634>” .

민주인권포털 홈페이지. “유럽도시현장” , “유럽도시선언” , “도시에서 인
권보호를 위한 유럽현장” . 검색일: 2017.08.17.

“<http://www.gjhr.go.kr/sub/sub.php?subKey=0510110000>” .

민주인권포털 홈페이지. “조직 및 직원현황” . 검색일: 2017. 11. 22

“<http://www.gjhr.go.kr/sub/sub.php?subKey=0703000000>” .

주오이시티대표부 홈페이지. “2015 How’ s Life?” . 검색일: 2017. 09. 11.

“<http://oecd.mofa.go.kr/korean/eu/oecd/main/index.jsp>” .

HDI홈페이지. “Human Development Report 2016” . 검색일: 2017. 09. 11

“<https://www.hdi.global/de/en>”